연구보고 2017-3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Ⅲ)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배윤진 조숙인 장문영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30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Ⅲ):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배윤진 조숙인 장문영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3년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은 부 혹은 모가 생계를 위한 일과 자녀양육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며, 자녀 돌봄 공백과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육아와 관련된 실제적 지원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입각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 돌봄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부모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기인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에 집중하였다. 또한 자녀연령 외에도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등과 같은 한부모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육아지원 요구를 살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한부모가족의 조사 참여와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의 협조로 진행될 수 있었다. 설문 및 면담에 참여해주신 한부모가족들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해주신 학계 교수님들,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이혼 혹은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후속 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의 행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차 례

요약 ····· 1

Ⅰ.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내용 ····· 11
3. 연구방법 ····· 12
4. 연구범위 ····· 17

Ⅱ.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제도 ····· 20
1.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 20
2.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 34
3. 국외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 49
4. 소결 ····· 64

Ⅲ.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재분석 ····· 68
1. 자녀 돌봄 ····· 68
2.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 82
3.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 87
4. 전배우자와의 관계 ····· 90
5. 지원 요구 ····· 93
6. 소결 ····· 96

Ⅳ.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및 지원 요구 ····· 99
1. 응답자 특성 ····· 99
2. 자녀양육 ····· 103
3. 개인 및 생활 특성 ····· 126
4. 한부모가족 지원 ····· 138
5. 소결 ····· 162

Ⅴ. 정책 제언 ····· 167

1.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167
2.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 172
3. 경제적 지원책의 개선 ····· 175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 175
5.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 177

참고문헌 ····· 179

abstract ····· 186

부록 ····· 189
부록 1. 부표 ····· 191
부록 2.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 215
부록 3. 한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 229

표 차례

〈표 Ⅰ-3- 1〉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 ····· 13
〈표 Ⅰ-3- 2〉 설문조사 내용 ····· 13
〈표 Ⅰ-3- 3〉 설문조사 내용: 출처 ····· 14
〈표 Ⅰ-3- 4〉 심층면담 참여자 사례 수 ····· 15
〈표 Ⅰ-3- 5〉 심층면담 내용 ····· 15
〈표 Ⅰ-3- 6〉 실무자 그룹 인터뷰 개최 ····· 15
〈표 Ⅰ-3- 7〉 자문회의 개최 ····· 16
〈표 Ⅰ-3- 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17
〈표 Ⅱ-1- 1〉 한부모가구 현황 ····· 20
〈표 Ⅱ-1- 2〉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 21
〈표 Ⅱ-1- 3〉 이혼 및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구 ····· 22
〈표 Ⅱ-1- 4〉 한부모 혼인상태 ····· 23
〈표 Ⅱ-1- 5〉 가구구성 ····· 23
〈표 Ⅱ-1- 6〉 가장 어린 자녀연령 ····· 24
〈표 Ⅱ-1- 7〉 한부모 장애 여부 ····· 25
〈표 Ⅱ-1- 8〉 자녀 장애 여부 ····· 26
〈표 Ⅱ-1- 9〉 현재 종사상 지위 ····· 27
〈표 Ⅱ-1-10〉 연도별 생활시설 개소수 ····· 28
〈표 Ⅱ-2- 1〉 부처별 요금감면 혜택 ····· 36
〈표 Ⅱ-2-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대상과 기간 ····· 40
〈표 Ⅱ-2- 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운영기관(2017) ····· 42
〈표 Ⅱ-2- 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중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2016) 43
〈표 Ⅱ-2- 5〉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 45
〈표 Ⅱ-2- 6〉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자녀교육 지원 ····· 46
〈표 Ⅱ-2- 7〉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48
〈표 Ⅱ-2- 8〉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부모 교육·자립·취업 지원 ····· 48
〈표 Ⅱ-3- 1〉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 50
〈표 Ⅱ-3- 2〉 미국 주별 TANF 현금 지원 수혜 기준 내 최대 월평균 소득과

TANF 최대 수혜 가능 금액(2012 기준) ····· 52
〈표 Ⅱ-3- 3〉 SNAP 가구 인원 대비 월 최대 할당량 ····· 54
〈표 Ⅱ-3- 4〉 Medicaid 혜택 목록 ····· 60
〈표 Ⅱ-4-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생활영역별 요약 ····· 65
〈표 Ⅱ-4-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사업별 요약 ····· 66
〈표 Ⅲ-1- 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 69
〈표 Ⅲ-1- 2〉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2순위) ····· 69
〈표 Ⅲ-1- 3〉 돌봄 유형: 초등학생(1순위) ····· 70
〈표 Ⅲ-1- 4〉 돌봄 유형: 초등학생(2순위) ····· 70
〈표 Ⅲ-1- 5〉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미취학 자녀 ····· 71
〈표 Ⅲ-1- 6〉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초등학생 ····· 72
〈표 Ⅲ-1- 7〉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 73
〈표 Ⅲ-1- 8〉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돌봄시간 부족 ····· 76
〈표 Ⅲ-1- 9〉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 76
〈표 Ⅲ-1-10〉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 ····· 77
〈표 Ⅲ-1-11〉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와 대화 어려움 ····· 78
〈표 Ⅲ-1-12〉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 79
〈표 Ⅲ-1-13〉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 80
〈표 Ⅲ-1-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생활지도 어려움 ····· 80
〈표 Ⅲ-1-15〉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 81
〈표 Ⅲ-2- 1〉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정도 ····· 83
〈표 Ⅲ-2- 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84
〈표 Ⅲ-3- 1〉 활동 시간 ····· 88
〈표 Ⅲ-4- 1〉 자녀의 이혼과정 인지 여부 ····· 91
〈표 Ⅲ-4- 2〉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 수 ····· 92
〈표 Ⅲ-4- 3〉 양육비를 받기로 한 형태 ····· 93
〈표 Ⅳ-1- 1〉 응답자 특성 ····· 99
〈표 Ⅳ-1- 2〉 가구 특성 ····· 100
〈표 Ⅳ-1- 3〉 근로시간 및 미취업 이유 ····· 101
〈표 Ⅳ-1- 4〉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 101
〈표 Ⅳ-1- 5〉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부모 ····· 102

〈표 Ⅳ-1- 6〉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자녀 ····· 102
〈표 Ⅳ-2- 1〉 기관 이용 이유 ····· 104
〈표 Ⅳ-2- 2〉 자녀 기관 이용 시간 ····· 105
〈표 Ⅳ-2- 3〉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 106
〈표 Ⅳ-2- 4〉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날 ····· 107
〈표 Ⅳ-2- 5〉 자녀양육 부담 ····· 114
〈표 Ⅳ-2- 6〉 전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여부: 본인 ····· 117
〈표 Ⅳ-2- 7〉 전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여부: 자녀 ····· 118
〈표 Ⅳ-2- 8〉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연락 ····· 118
〈표 Ⅳ-2- 9〉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만남 ····· 119
〈표 Ⅳ-2-10〉 자녀와 전배우자의 관계 ····· 120
〈표 Ⅳ-2-11〉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1) ····· 122
〈표 Ⅳ-2-12〉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2) ····· 122
〈표 Ⅳ-3- 1〉 자녀 건강상태: 약물 복용 혹은 치료 여부 ····· 126
〈표 Ⅳ-3- 2〉 자녀 건강상태: 병결 일수 ····· 127
〈표 Ⅳ-3- 3〉 자녀 생활습관 ····· 127
〈표 Ⅳ-3- 4〉 자녀와의 여가활동: 도서관 가기 ····· 129
〈표 Ⅳ-3- 5〉 자녀와의 여가활동: 서점 가기 ····· 130
〈표 Ⅳ-3- 6〉 자녀와의 여가활동: 극장, 콘서트, 공연장 가기 ····· 130
〈표 Ⅳ-3- 7〉 자녀와의 여가활동: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 가기 ····· 130
〈표 Ⅳ-3- 8〉 자녀와의 여가활동: 동물원, 수족관, 놀이 공원 가기 ····· 131
〈표 Ⅳ-3- 9〉 자녀와의 여가활동: 지역사회 등에서 지원하는 행사 참여 ····· 131
〈표 Ⅳ-3-10〉 자녀와의 여가활동: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 참여(관람) ····· 132
〈표 Ⅳ-3-11〉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 ····· 133
〈표 Ⅳ-3-12〉 부모의 심리적 특성 ····· 135
〈표 Ⅳ-3-13〉 사회적 지지 ····· 136
〈표 Ⅳ-4- 1〉 육아휴직 사용 여부 ····· 141
〈표 Ⅳ-4- 2〉 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 만족도, 필요성 ····· 143
〈표 Ⅳ-4- 3〉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아동양육비 지원 ····· 144
〈표 Ⅳ-4- 4〉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학용품비 지원 ····· 144
〈표 Ⅳ-4- 5〉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생활보조금 지원 ····· 145

〈표 Ⅳ-4- 6〉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146
〈표 Ⅳ-4- 7〉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양육비 이행 관리원 ····· 147
〈표 Ⅳ-4- 8〉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148
〈표 Ⅳ-4- 9〉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48
〈표 Ⅳ-4-10〉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149
〈표 Ⅳ-4-11〉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방과후 보육료 ····· 150
〈표 Ⅳ-4-12〉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드림스타트 ····· 151
〈표 Ⅳ-4-13〉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임대주택 우선순위 ····· 152
〈표 Ⅳ-4-14〉 한부모 지원제도 필요성(1) ····· 155
〈표 Ⅳ-4-15〉 한부모 지원제도 필요성(2) ····· 156
〈표 Ⅳ-4-16〉 한부모 지원제도 지원 미신청 이유 ····· 156
〈표 Ⅳ-4-17〉 한부모가족 모임·행사 참여 여부 ····· 160

부록 표 차례

〈부표 Ⅱ-2-1〉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 ····· 191
〈부표 Ⅲ-3-1〉 주거환경 ····· 202
〈부표 Ⅲ-4-1〉 전배우자와 자녀의 연락 방식 ····· 204
〈부표 Ⅲ-4-2〉 전배우자와 한부모 본인의 연락 방식 ····· 205
〈부표 Ⅳ-2-1〉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 ····· 205
〈부표 Ⅳ-2-2〉 영유아 자녀 양육태도 ····· 206
〈부표 Ⅳ-2-3〉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태도 ····· 206
〈부표 Ⅳ-2-4〉 양육 효능감 ····· 206
〈부표 Ⅳ-2-5〉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 ····· 207
〈부표 Ⅳ-2-6〉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 207
〈부표 Ⅳ-2-7〉 자녀양육비 수령 금액 ····· 208
〈부표 Ⅳ-3-1〉 자녀 생활습관: 하루 세 끼 식사 ····· 208
〈부표 Ⅳ-3-2〉 자녀 생활습관: 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 ····· 209
〈부표 Ⅳ-3-3〉 자녀 생활습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섭취 ····· 209
〈부표 Ⅳ-3-4〉 자녀 생활습관: 인스턴트식품 섭취 ····· 210
〈부표 Ⅳ-3-5〉 자녀 생활습관: 방과(하원) 후 30분 이상의 신체활동 ····· 210
〈부표 Ⅳ-3-6〉 자녀 생활습관: 방과(하원) 후 친구들과 놀기 ····· 211
〈부표 Ⅳ-3-7〉 자녀 생활습관: 재미를 위한 책 읽기 ····· 211
〈부표 Ⅳ-4-1〉 부모교육 참여 경험 ····· 212
〈부표 Ⅳ-4-2〉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학용품비 지원 ····· 212
〈부표 Ⅳ-4-3〉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 ····· 213
〈부표 Ⅳ-4-4〉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213
〈부표 Ⅳ-4-5〉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인터넷사이트에서의 활동 ····· 214
〈부표 Ⅳ-4-6〉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부모 대상 상담·심리치료 ····· 214
〈부표 Ⅳ-4-7〉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자녀 대상 상담·심리치료 ····· 214

그림 차례

〔그림 Ⅰ-4-2〕 연구범위 ····· 19
〔그림 Ⅱ-1-1〕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 현황 ····· 21
〔그림 Ⅱ-1-2〕 OECD 국가 전체 0~17세 아동 대비 한부모가족 아동 비율(2014) ····· 29
〔그림 Ⅱ-1-3〕 OECD 국가 0-17세 아동의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비율 추이 (2005-2014) ····· 30
〔그림 Ⅱ-1-4〕 OECD 국가 0-14세 부모-아동 거주 구성 현황(2014) ····· 32
〔그림 Ⅱ-1-5〕 OECD 국가 0~14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의 근로 상태(2014) ····· 34
〔그림 Ⅱ-2-1〕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생활 영역 분류 ····· 35
〔그림 Ⅲ-1-1〕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연간 평균 횟수 ····· 74
〔그림 Ⅲ-1-2〕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 74
〔그림 Ⅲ-1-3〕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75
〔그림 Ⅲ-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78
〔그림 Ⅲ-2-1〕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 ····· 82
〔그림 Ⅲ-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84
〔그림 Ⅲ-2-3〕 한부모가 된 후 자녀 변화 ····· 86
〔그림 Ⅲ-3-1〕 사회적 지지망 ····· 89
〔그림 Ⅲ-3-2〕 주거환경 ····· 90
〔그림 Ⅲ-4-1〕 전배우자와의 연락 방식 ····· 92
〔그림 Ⅲ-5-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획득 경로 ····· 94
〔그림 Ⅲ-5-2〕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 95
〔그림 Ⅲ-5-3〕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 95
〔그림 Ⅲ-5-4〕 현재 필요한 지원 ····· 96
〔그림 Ⅳ-2-1〕 기본교육·보육과정 외 이용기관 ····· 103
〔그림 Ⅳ-2-2〕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 105
〔그림 Ⅳ-2-3〕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 108
〔그림 Ⅳ-2-4〕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 ····· 109
〔그림 Ⅳ-2-5〕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하는 일 ····· 109
〔그림 Ⅳ-2-6〕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태도 ····· 111
〔그림 Ⅳ-2-7〕 양육 효능감 ····· 111

〔그림 Ⅳ-2- 8〕 자녀양육 시 도와주는 사람 ····· 116
〔그림 Ⅳ-2- 9〕 자녀양육 시 필요한 정보 ····· 116
〔그림 Ⅳ-2-10〕 자녀와 전배우자 만남 시 하는 일 ····· 119
〔그림 Ⅳ-2-11〕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 ····· 123
〔그림 Ⅳ-2-12〕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및 금액 ····· 125
〔그림 Ⅳ-2-13〕 자녀의 친권자 ····· 125
〔그림 Ⅳ-3- 1〕 자녀와의 여가활동: 활동별 이용 비율 ····· 129
〔그림 Ⅳ-3- 2〕 자녀 자아탄력성 ····· 133
〔그림 Ⅳ-3- 3〕 자녀 발달 정도 ····· 134
〔그림 Ⅳ-3- 4〕 부모 자아탄력성 ····· 136
〔그림 Ⅳ-4- 1〕 부모교육 참여 경험 ····· 138
〔그림 Ⅳ-4- 2〕 부모교육 참여 유형 ····· 139
〔그림 Ⅳ-4- 3〕 부모교육 도움 정도 ····· 139
〔그림 Ⅳ-4- 4〕 부모교육 시 필요한 내용 ····· 140
〔그림 Ⅳ-4- 5〕 육아휴직 사용 기간 ····· 142
〔그림 Ⅳ-4- 6〕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 142
〔그림 Ⅳ-4- 7〕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1) ····· 153
〔그림 Ⅳ-4- 8〕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2) ····· 153
〔그림 Ⅳ-4- 9〕 지원제도 필요성(1) ····· 154
〔그림 Ⅳ-4-10〕 지원제도 필요성(2) ····· 154
〔그림 Ⅳ-4-11〕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참여 유형 ····· 161
〔그림 Ⅳ-4-12〕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 정도 ····· 161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은 일상의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생계를 위한 일과 육아 그리고 부와 모의 역할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짐.

- 한부모가족은 미취학자녀의 기관 이용률이 일반 가정에 비해 높으며, 어린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인 돌봄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김은지 외, 2013: 75; 김은지 외, 2015: 74).
- 또한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가구소득이 낮아서(절반 미만 수준)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률은 높으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04.16.).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들의 육아와 관련된 실제적 지원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입각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좀 더 요구되는 상황임.

- 어린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환경은 부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로서 한부모가 갖는 어려움과 강화되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함.
- 한부모가족의 특성(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등)에 따라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는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 중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을 파악함.

□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관련 국외 사례를 수합하여 비교함.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한부모가족에서의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인과 특징을 알아봄.

□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함.

–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원 현황, 한부모가족의 요구 및 육아지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함.

–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등 한부모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요구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 분석

□ 한부모가족 부모 400명 대상 설문조사

□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한부모가족 부모 17사례를 모집하여 심층면담 실시

– 한부모가족 관련 실무자 24명을 대상으로 FGI 실시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정책제언 논의를 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라.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는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기 혹은 초등학령기이며 한부모 사유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특성’으로 자녀연령, 가구구성원(가구구성 유형), 부나 모의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자녀 수, 한부모가 된

기간 등을 포함함.

2.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제도

가.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 국내 한부모가족 현황

- 2016년 전체 가구 중 9.6%의 가구가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며(통계청, 2010),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2015년 13만 1천명으로 추계됨.
- 이혼 및 사별에 의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 한부모가구 중 64.3%에 해당하며, 그 중 부자 가구는 23.2%, 모자 가구는 76.9%임(통계청 보도자료, 2017.04.13.).
- 2015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5)에 따르면, 최연소 자녀의 연령은 중학생 이상이 53.3%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 32.9%, 미취학 13.8%이었음.
-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은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22개소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이 가장 많음.

□ 국외 한부모가족 현황

- 2014년 기준 전체 0~17세 아동 중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16.6%임(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
- 한부모가족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최저 15.6%(2008년)에서 최고 16.7%(2014년)의 범위 내에 머묾(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3).
- OECD 26개국 0-14세 전체 아동 중 한부모 어머니와 거주하는 아동은 15.23%,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은 2.18%임(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 OECD 24개국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35.6%가 무직 상태이며,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전체 가구에서 부모가 무직인 경우가 9.6%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임(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4).

나.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 중앙정부 지원

- 생계 지원: 생계비 지원 및 각종 요금감면 혜택 제공
- 자녀양육·교육 지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보육료 지원, 긴급 돌봄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드림스타트 아동발달 프로그램 제공
-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다양한 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 교육·자립·취업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 법률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지원

- 생계 지원: 생활비, 건강검진 비용, 난방비, 교통비 지원 등
- 자녀양육·자녀 교육 지원: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교재비, 학습비 지급 등
-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 부모 교육·자립·취업 지원: 자립지원급 지급, 자립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다. 국외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 생계 지원: 세금혜택, 식비, 에너지비용 지원
- 양육 지원: Head Start, Early Head Start,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 주거 지원: Section 8 Housing Program, Public Housing Program
- 의료 지원: Me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교육 지원: Federal Pell Grant,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 생계 및 자립·취업 지원의 연결
- 자녀양육 지원과 부모 취업을 함께 고려

□ 북유럽 국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 공동 육아(co-parenting), 공동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강조
–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수당 차등 지급

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재분석

가. 자녀 돌봄

□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모자가구 혹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

□ 돌봐주는 어른 없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미취학 자녀는 14.2%, 초등학생 자녀는 54.3%임.

– 부모가 평소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음.

□ 한부모는 자녀양육 시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나.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한 정도가 높음.

□ 한부모가 된 후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어려움, 집안일의 부담 증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함.

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 다수의 한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함.

라. 전배우자와의 관계

□ 자녀가 전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4.9%, 한부모 본인의 경우는 3.4%에 불과함.

□ 응답자의 47.9%는 전배우자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았고, 25.2%는 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자가구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높음.

마. 지원 요구

□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 야간보육(미취학 자녀)이나 초등돌봄·방과후 교실(초등학생 자녀)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현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계비나 양육비 등의 현금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순으로 응답함.

4.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및 지원 요구

가. 자녀양육

□ 응답자의 약 77.5%는 자녀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본교육·보육과정 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혹은 아이의 학습·특기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평일 4.1시간, 주말 10.5시간임.

–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은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자녀 혼자서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TV를 시청하거나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한부모는 자녀양육 시 자녀 교육비나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함.

□ 응답자의 과반수는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 본인 혹은 자녀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은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자녀들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임.

–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이며, 본인과 전배우자의 양육 참여 비중을 1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인 9.1, 전배우자 0.9로 본인이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한다고 응답함.

나. 개인 및 생활 특성

□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신체활동이나 건강한 식단을 먹는 횟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며, 자녀와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극장·콘서트·공연장 가기임.

□ 부모들은 다른 영역 발달에 비해 자녀의 신체발달 및 성장이 느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가 적응하는데 평균 20.0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함.

□ 여성 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을 보이며, 한부모와 자녀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조절능력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다.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 된 후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부모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부모교육 시 연령별 자녀양육방법,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자녀 적응 지원 등의 내용을 필요로 함.

□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중 아동양육비, 드림스타트, 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학용품비 지원 등에 대한 수혜정도가 비교적 높음.

- 전반적으로 각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방과후보육료, 임대주택 우선순위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한부모가족 대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5.0%이며, 인터넷 사이트 활동이 가장 많음.

- 부모 혹은 자녀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자녀 발달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를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

5. 정책제언

가.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의 직접 돌봄 혹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모자가구, 부자가구 혹은 기타구성원이 있느냐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의 생활 특성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의 목적이나 형태가 결정되어야 함.

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 부모와 자녀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과 부모-자녀 간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생활 여건, 자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로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다. 경제적 지원의 개선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및 연령 기준 확대 필요함.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 한부모가족의 주요 이슈인 돌봄 공백의 감소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시 맞벌이 부모라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한부모도 자녀 돌봄과 직업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함.

마.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 한부모 스스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변화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음.

□ 한부모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 잘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이혼율 증가와 가족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변동으로 한부모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 등의 사회현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0 인구총조사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미혼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는 2010년 1,594천명, 2012년 1,677천명, 2016년 1,816천명이며, 전체 가구에 대한 비율은 각각 9.2%, 9.3%, 9.6%으로 증가하고 있다.[1] 한부모가족은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 일상의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이혼이나 배우자(가족) 사망(Holmes & Rahe, 1967)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생계를 위한 일과 육아 그리고 부와 모의 역할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자녀 돌봄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3: 75; 김은지 외, 2015: 57)에 따르면, 미취학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도 82.2%, 2015년도 87.6%로 전체 영유아의 경우 67.0%(김은설 외, 2016: 44)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취학자녀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 평균 3.0시간, 초등학생 자녀는 54.4%, 평균 3.3시간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김은지 외, 2015: 74). 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만19세 이상 일반인의 경험률인 10.3%보다 높은 수준인 20.2%로 보고되어(김은지 외, 2015: 248), 자녀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가구소득이 낮아서(절반 미만 수준)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부모가 되면서 취업 상태로 변화하는

---

1) 한부모가구 비율(2010~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경우가 많아 취업률은 매우 높으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하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04.16.). 전체 한부모가구 중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최저생계비 100% 이하)은 5.5%,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최저생계비 100% 초과 130% 이하)은 7.4%이며, 그 비율은 2005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2] 또한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시행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이후 취학 중인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등 보호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을 위해 개정되어 왔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선행연구로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연령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정책에 있어 양육비, 주거, 네트워크 운영 등 일부 지원제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의 육아와 관련된 실제적 지원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입각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좀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환경이 부모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양육자로서 한부모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과 강화되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육아지원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일 접근보다는 한부모가족의 특성 즉, 자녀연령(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 등), 가구구성원(부자, 모자 혹은 기타 구성원 포함), 가구소득 등 관련 변인에 따라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는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 중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2005~2015).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920&stts_cd=292002&freq=Y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2.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 현황을 알아본다.

둘째,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분석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 외에도 보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국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를 선정한 후 정책 자료를 수합하여 비교한다.

셋째,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한부모가족에서의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인과 특징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특성별로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다.

넷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한다.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에서의 어려움, 부모역량, 자녀발달특성, 현 육아지원 수혜 및 만족 정도, 육아지원 요구 등을 조사한다. 특히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취업형태, 가구소득, 자녀 수, 한부모가 된 기간 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조사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 한부모가족의 요구 및 육아지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등 한부모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요구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시하면서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부모역량강화를 통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육아지원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로써 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아동 중심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첫째, 국내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국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부처에서 제시하는 지원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외는 한부모가구 비율이 높거나(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1-2),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한부모가족에서의 자녀양육 관련 변인과 주요 연구결과를 알아보았다.

나. 통계자료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 분석

첫째, 한부모가족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관련 지표나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2015년에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데이터 중 이혼·사별 가구이며 최연소 자녀연령이 영유아기 혹은 초등학령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재분석하였다. 실태조사 내용 중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 설문조사

한부모가족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이혼과 사별에 의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이다. 조사결과의 가구 특성별 분석을 위해 표본 할당은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연구 대상자 중 한부모 사유에 따라서는 이혼 80% 이상, 가구구성에서는 모자가구가 7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웹 설문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한부모 사유에 따라 이혼 88.3%, 사별11.8%가 포함되었으며, 가구구성은 모자가구 78.8% 부자가구 21.3%가 포함되었다. 자녀연령에 따라 동일한 목표 표본 수를 계획한 바 있으나 한부모가족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이 낮고 초등학령기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이 높아 계획 표본 수대로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표 Ⅰ-3-1>과 같이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Ⅰ-3-1〉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

자녀연령	영아기 (0-2세)	유아기 (3-5세)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표본 수 (계획)	100	100	100	100
조사완료	47	98	122	133

조사 내용은 기 수행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예: 자녀생활 및 발달, 부모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볼만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예: 자녀양육 특성,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연령, 부모연령, 근로시간,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한부모 사유 등의 가구특성,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 특성(양육효능감, 양육부담, 사회적지지, 자녀양육 관련 정보원, 전배우자와의 관계 등), 자녀생활 및 발달특성, 부모의 개인 특성, 지원받고 있는 사항,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 등을 포함한다(표 Ⅰ-3-2참조). 이러한 설문조사 설계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KICCEIRB-2017-제04호).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부모: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가구구성원 자녀: 형제순위, 연령, 성별, 동거여부, 장애유무, 이용 기관(학교)
자녀양육 특성	돌봄시간, 돌봄공백 여부 및 시간,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 사회적지지, 자녀양육 정보 획득 방법, 필요한 육아정보, 이용 기관·서비스 및 만족도 등 (이혼의 경우) 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전배우자의 양육특성, 친권행사 등
자녀생활 및 발달 특성	건강상태, 가족과의 여가활동, 자녀발달정도, 적응기간 등
부모 특성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등
육아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참여 여부, 형태, 도움정도, 원하는 내용, 육아휴직 사용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시설, 어린이집 입소 순위, 방과후 보육, 임대주택) 인지 및 수혜 여부, 만족정도, 필요정도, 자조모임 참여 여부, 유형, 도움정도 등

또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거나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질문은 <표 Ⅰ-3-3>과 같다.

〈표 Ⅰ-3-3〉 설문조사 내용: 출처

구분	출처
양육행동	(영유아) 이정림 외(2015),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초등) 김미숙 외(2013)
양육효능감	이정림 외(2015), 신숙재(1997)
양육부담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자녀양육 정보 획득 방법 필요한 육아정보	김은설 외(2016),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전배우자와의 관계 (양육 관련)	Van Egeren & Hawkins(2004)
자녀건강상태 및 활동	도남희·배윤진·김지예(201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가족과의 여가활동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부모-자녀애착	김미숙 외(2013)
자녀발달정도	이정림 외(2015)
생활만족도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
주관적 행복감	Lyubomirsky & Lepper(1999)
자아탄력성	Alessandri, Vecchio, Steca, Caprara, & Caprara(2008)
사회적 지지	이재림(2001)

라.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1) 한부모가족 대상 심층면담

한부모가족 부모 17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참여자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6명,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11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드림스타트센터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조사 개요 등을 안내한 후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면담대상의 의사에 따라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Ⅰ-3-4〉 심층면담 참여자 사례 수

자녀연령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가구구성원	부+자녀 부+자녀+기타구성원	모+자녀 모+자녀+기타구성원	부+자녀 부+자녀+기타구성원	모+자녀 모+자녀+기타구성원
사례 수(계획)	5	5	5	5
사례 수(완료)	-	6	5	6

주: 이혼 소송중인 경우(1사례) 이혼으로 포함하여 집계함.

면담 내용은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이나 지원 요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로는 다루지 못했던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표 Ⅰ-3-5 참조). 이러한 심층면담 설계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KICCEIRB-2017-제04호).

〈표 Ⅰ-3-5〉 심층면담 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부모: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가구구성원 자녀: 출생순위, 연령, 성별, 동거여부, 장애유무, 이용 기관(학교)
한부모가 된 후의 경험(변화)	한부모가 된 후 가정의 변화: 부모의 변화, 자녀의 변화 양육에서의 어려움, 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한부모가 된 후 경험한 차별
사회적지지 및 지원 요구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 양육지원 요구

2) 한부모가족 관련 실무자 대상 인터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단체 등 전달체계의 실무자 24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표 Ⅰ-3-6〉 실무자 그룹 인터뷰 개최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2017. 7	현장 전문가 3인 (시소와 그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각 기관의 사업 소개 및 한부모가족 지원방향
2017. 8	현장 전문가 3인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표 Ⅰ-3-6 계속)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2017. 8	현장전문가 2인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2017. 8	유치원 교사 2인, 초등교사 2인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에서의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험 및 지원
2017. 8	현장전문가 3인 (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2017. 8	현장전문가 2인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2017. 9	현장전문가 2인 (한부모 사업 운영 복지관)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 운영 현황 및 지원방향 (서면 의견수렴)
2017. 9	현장전문가 3인 (대구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2017. 9	24시어린이집 원장 1인, 시간연장어린이집 교사 1인	보육시설에서의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험 및 지원
2017. 9	시간연장어린이집 원장 2인	보육시설에서의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험 및 지원

마.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첫째, 한부모가족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한 자문을 듣고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Ⅰ-3-7〉 자문회의 개최

일시	참석자	자문 및 논의내용
2017. 4	학계 전문가 2인	연구 방향 및 범위
2017. 5	학계 전문가 3인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서면검토)
2017. 5	현장 전문가 1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2017. 5	현장 전문가 2인(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및 방향
2017. 8	학계 전문가 1인	한부모 면담 내용 분석 및 제시방법

둘째, 정책실무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표 Ⅰ-3-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일시	참석자	자문 및 논의내용
2017. 3	여성가족부 사무관 1인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현안
2017. 4	보건복지부 사무관 1인	보육정책(시간연장보육, 방과후보육)에서의 한부모가족 지원 방향

바. 결과보고 및 정책제언 논의를 위한 간담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한부모가족 육아지원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총 6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졌다.

4. 연구범위

가. 한부모가족

본 연구는 5개년으로 계획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3차년 과제에 해당한다(그림 Ⅰ-4-1 참조). 1차년에는 장애 영유아, 2차년에는 입양아동의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향후 4차년과 5차년에는 각각 미혼부·모의 자녀와 아동보호시설의 영유아의 육아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 등에 따른 한부모를 모두 포함하지만, 2018년도 4차년 연구에서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중 미혼가구는 제외한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시에는 양육중인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기 혹은 초등학령기인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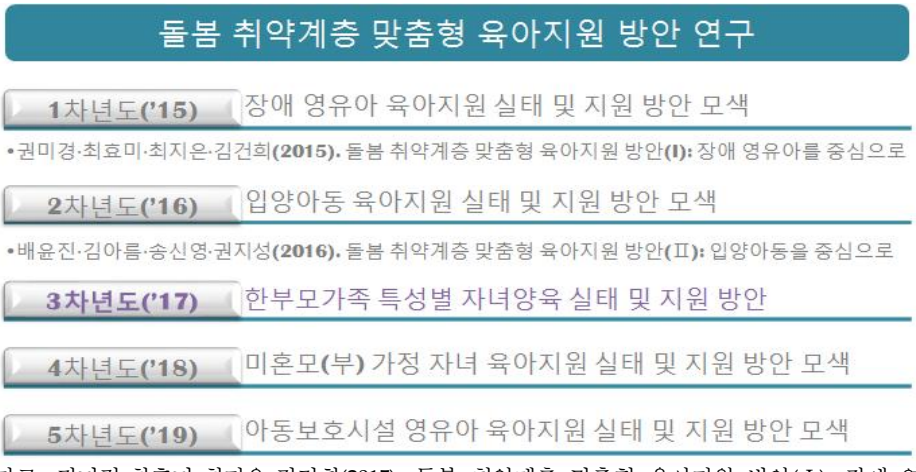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p.11 [그림 Ⅰ-1-1];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p.19 [그림 Ⅰ-1-1] 수정.

〔그림 Ⅰ-4-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를 제시하거나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부모가구란,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기타구성원이 포함된 가구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3]),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나. 한부모가족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특성'을 자녀연령, 가구구성원(가구구성 유형), 부나 모의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에도 자녀 수, 한부모가 된 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자녀연령은 영아기, 유아기,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으로 나누었으며, 가구구성원은 모+자, 부+자, 모+자+기타구성원, 부+자+기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구성원으로 구분하였다. 기타구성원은 조부모, 친인척 등 부모와 자녀 이외의 다른 가구구성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Ⅳ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한부모가족 특성별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혹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범위를 정리하면 [그림 Ⅰ-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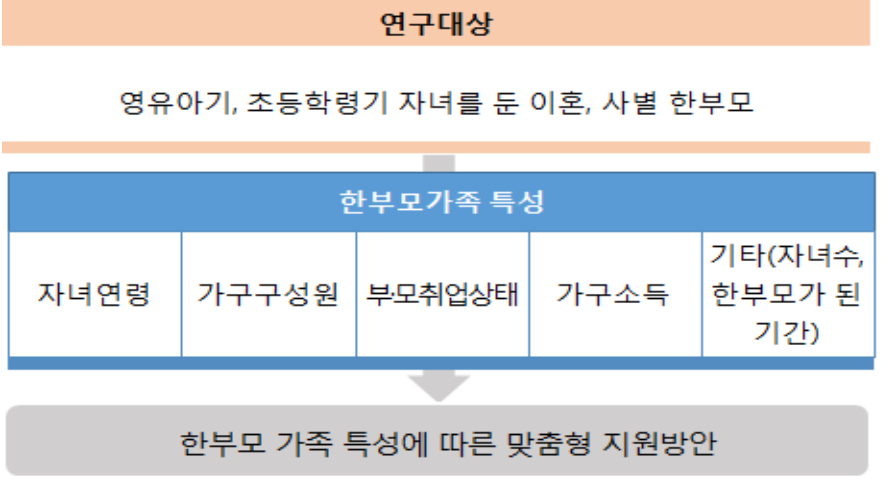

〔그림 Ⅰ-4-2〕 연구범위

Ⅱ.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제도

이 장에서는 국내외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한부모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셋째,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의 한부모 지원사업 특징을 살펴보았다.

1. 국내외 한부모가족 현황

가. 국내 한부모가족 현황

1) 전체 한부모가구 현황

먼저 전국 한부모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15,887천가구 중 8.6%인 1,370천가구가 한부모가구에 해당하였으며, 2010년에는 총 17,339천가구 중 9.2%에 해당하는 1,594천가구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자가구보다는 모자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2011년 이후로도 매해 조금씩 한부모가구 비율은 증가하여 2016년에는 전체 가구 중 9.6%의 가구가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1〉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2005	15,887	1,370(8.6)	1,083	287
2010	17,339	1,594(9.2)	1,247	347
2011	17,687	1,639(9.3)	1,278	361
2012	17,951	1,677(9.3)	1,304	373
2013	18,206	1,714(9.4)	1,329	385
2014	18,457	1,749(9.4)	1,352	397
2015	18,705	1,783(9.5)	1,374	409
2016	18,948	1,816(9.6)	1,395	421

주: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6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2010년 10만 8천가구, 2015년 13만 1천가구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10년 18만 5천가구, 2015년 23만가구로 추계되었다.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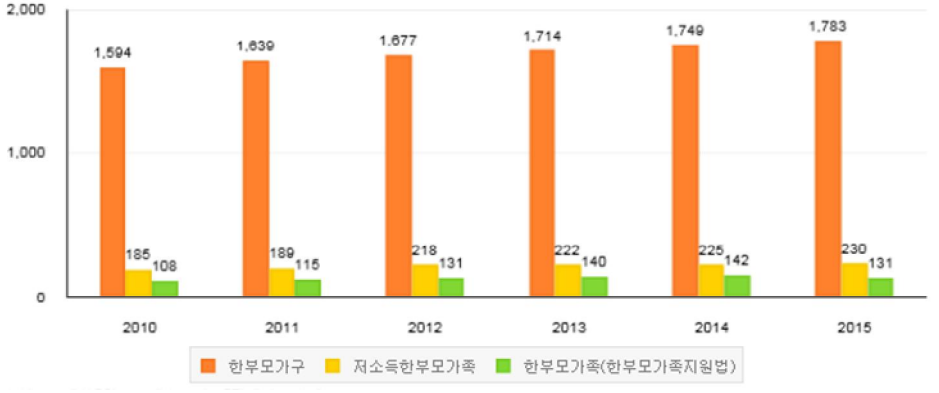

자료: 한부모가구 비율(2010~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그림 Ⅱ-1-1〕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 현황

2)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을 보면, 2000년과 2005년에는 사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이혼 32.8%, 사별 29.7%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가 좀 더 많아졌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는 2010년 당시 11.6%로 이전에 비해 증가한 편이었다.

〈표 Ⅱ-1-2〉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단위: 천가구(%), %

연도	총 가구수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율	계	
2000	14,312	502(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0)	8.6

(표 Ⅱ-1-2 계속)

연도	총 가구수	한부모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율	계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0)	9.2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6

또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청 보도자료, 2017.04.13.)에 따르면, 이혼 및 사별에 의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 한부모가구 중 64.3%에 해당하며, 그 중 부자 가구는 23.2%, 모자 가구는 76.9%이다.

한편 이러한 한부모가구 현황은 미성년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표 Ⅱ-1-3〉 이혼 및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구

단위: 만가구, %

	가 구						구 성 비				
	2015	2017	2025	2035	2045	연평균 변화	2015	2017	2025	2035	2045
부(모)+자녀	205.2	212.7	230.3	234.3	225.7	0.7	100.0	100.0	100.0	100.0	100.0
이혼·사별에 의한 부(모)+자녀[1]	131.9	134.7	142.0	145.3	143.1	0.4	64.3	63.3	61.7	62.0	63.4
부+자녀	30.6	31.0	32.0	31.8	30.4	0.0	23.2	23.0	22.5	21.9	21.2
모+자녀	101.4	103.7	110.0	113.5	112.7	0.4	76.9	77.0	77.5	78.1	78.8

주: 2세대 중 부(모)가 분거가족 등 유배우인 경우를 제외한 한부모가구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04.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p.22 [표 16]

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2년 및 2015년에 실시되었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김은지 외, 2013; 김은지 외, 2015) 중 가구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부모가족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이혼 가구 77.1%, 사별 가구 15.8%, 기타 7.1%로 이혼 가구의 비율이 아주 높으며, 이는 2012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하다. 이러한 혼인상태는 가구구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모자 가구 및 부자+기타 가구에서 사별의 비율이 좀 더 높고,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 혼인상태인 가구가 좀 더 많다(표 Ⅱ-1-4 참조).

〈표 II-1-4〉 한부모 혼인상태

단위: %(가구)

구분	이혼	사별	기타	계(수)	$x^2(df)$
2015	77.1	15.8	7.1	100.0(2,552)	
가구구성					
모자	74.5	17.7	7.8	100.0(1,208)	26.69(6)***
모자+기타	78.6	11.8	9.5	100.0(454)	
부자	80.8	13.1	6.1	100.0(505)	
부자+기타	78.9	18.0	3.2	100.0(38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5.0	10.4	14.6	100.0(264)	32.01(4)***
100~200만원 미만	78.3	15.6	6.1	100.0(1,315)	
200만원 이상	76.2	17.5	6.4	100.0(973)	
2012	76.4	18.2	5.3	100.0(2,522)	
가구구성					
모자	71.3	23.3	5.4	100.0(1,183)	70.18(6)***
모자+기타	72.5	21.6	5.9	100.0(410)	
부자	84.7	11.6	3.7	100.0(482)	
부자+기타	84.8	8.8	6.4	100.0(44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0.2	12.1	7.7	100.0(422)	20.15(4)***
100~200만원 미만	76.8	18.1	5.1	100.0(1,308)	
200만원 이상	73.9	21.6	4.5	100.0(792)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51 <표Ⅱ-1-4>,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34 <표Ⅱ-1-4>를 재구성함.

*** $p < .001$

가구구성 비율 또한 2012년도와 2015년도는 유사하다.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 모자가구 47.3%로 가장 많고, 부자가구 19.8%, 모자+기타 및 부자+기타가구는 각각 17.8%, 15.1%이었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자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많이 속하여 있으며, 부자가구나 부자+기타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표 II-1-5〉 가구구성

단위: %(가구)

구분	모자	모자+기타	부자	부자+기타	계(수)	$x^2(df)$
2015	47.3	17.8	19.8	15.1	100.0(2,552)	

(표 Ⅱ-1-5 계속)

구분	모자	모자+기타	부자	부자+기타	계(수)	$x^2(df)$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6.8	16.8	12.2	4.2	100.0(264)	
100~200만원 미만	55.1	17.8	17.5	9.6	100.0(1,315)	230.97(6)***
200만원 이상	31.5	18.0	24.9	25.6	100.0(973)	
2012	46.9	16.2	19.1	17.7	100.0(2,52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0.8	12.7	15.4	11.1	100.0(422)	
100~200만원 미만	55.8	15.7	16.4	12.1	100.0(1,308)	260.78(6)***
200만원 이상	24.9	19.1	25.5	30.5	100.0(792)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54 <표Ⅱ-1-5>,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36 <표Ⅱ-1-5>를 재구성함.

*** $p < .001$

2015년도 조사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중학생 이상이 53.3%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 연령은 32.9%, 미취학 연령은 13.8%이었으며, 2012년도와 유사하나 미취학 연령 자녀가 10.8%에서 약 3%p정도 증가하였다. 혼인상태에서 사별인 경우 미취학 연령 자녀의 비율은 훨씬 낮고, 기타 상태인 경우 훨씬 높다. 부자가구에서는 미취학 연령 자녀가 있는 경우가 9.1%에 불과하고 중학생 이상 연령 자녀가 가장 어린 경우가 많은 반면, 미취학 부자+기타가구에서는 미취학 연령 자녀가 16.0%로 차이를 보인다.

〈표 Ⅱ-1-6〉 가장 어린 자녀연령

단위: %(가구)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이상	계(수)	평균(세)	$t/F(df)$
2015	13.8	32.9	53.3	100.0(2,550)	12.2	
혼인상태						
이혼	13.0	34.6	52.5	100.0(1,968)	12.2	
사별	6.6	28.3	65.2	100.0(403)	13.5	49.83(2)***
기타	38.7	25.0	36.3	100.0(179)	9.5	
가구구성						
모자	12.9	30.6	56.5	100.0(1,207)	12.5	
모자+기타	19.4	43.9	36.6	100.0(453)	10.8	25.62(3)***
부자	9.1	28.5	62.4	100.0(504)	13.2	
부자+기타	16.0	32.8	51.2	100.0(386)	12.0	

(표 Ⅱ-1-6 계속)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계(수)	평균(세)	$t/F(df)$
2012	10.8	31.1	58.1	100.0(2,522)	12.8	
혼인상태						
이혼	10.5	32.5	57.1	100.0(1,928)	12.8	
사별	9.2	26.4	64.4	100.0(459)	13.5	15.42(2)***
기타	20.7	28.4	51.0	100.0(135)	11.4	
가구구성						
모자	7.4	28.8	63.8	100.0(1,183)	13.4	
모자+기타	23.4	31.5	45.1	100.0(410)	11.2	47.12(3)***
부자	3.1	29.6	67.3	100.0(482)	13.8	
부자+기타	16.4	38.5	45.1	100.0(447)	11.8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59 <표Ⅱ-1-8>,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42 <표Ⅱ-1-8>을 재구성함.

*** $p < .001$

다음으로 한부모와 자녀의 장애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2012년도에는 4.7%, 2015년도에는 3.5%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12년도 2.6%, 2015년도 2.9%이었다. 부자가구 및 부자+기타가구에서 부모가 장애를 가진 비율이 2015년도 기준 각각 6.0%, 5.7%로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경우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장애를 가진 가구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표 Ⅱ-1-7, Ⅱ-1-8 참조).

〈표 Ⅱ-1-7〉 한부모 장애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장애	비장애	계(수)	$x^2(df)$
2015	3.5	96.5	100.0(2,552)	
가구구성				
모자	2.1	97.9	100.0(1,208)	
모자+기타	2.9	97.1	100.0(454)	22.17(3)***
부자	6.0	94.0	100.0(505)	
부자+기타	5.7	94.3	100.0(38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2	90.8	100.0(264)	
100~200만원 미만	3.2	96.8	100.0(1,315)	27.29(2)***
200만원 이상	2.5	97.5	100.0(973)	
2012	4.7	95.3	100.0(2,522)	

(표 Ⅱ-1-7 계속)

구분	장애	비장애	계(수)	$x^2(df)$
가구구성				
모자	2.9	97.1	100.0(1,183)	27.86(3)***
모자+기타	3.6	96.4	100.0(410)	
부자	8.1	91.9	100.0(482)	
부자+기타	7.1	92.9	100.0(44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2.9	87.1	100.0(422)	77.43(2)***
100~200만원 미만	3.6	96.4	100.0(1,308)	
200만원 이상	2.2	97.8	100.0(792)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64 <표Ⅱ-1-11>,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47 <표Ⅱ-1-11>을 재구성함.

*** $p < .001$

〈표 Ⅱ-1-8〉 자녀 장애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장애	비장애	계(수)	$x^2(df)$
2015	2.9	97.1	100.0(2,55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8	96.2	100.0(264)	16.93(2)***
100~200만원 미만	4.0	96.0	100.0(1,315)	
200만원 이상	1.2	98.8	100.0(973)	
2012	2.6	97.4	100.0(2,52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5	95.5	100.0(422)	9.01(2)***
100~200만원 미만	2.5	97.5	100.0(1,308)	
200만원 이상	1.6	98.4	100.0(792)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65 <표Ⅱ-1-12>,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48 <표Ⅱ-1-12>를 재구성함.

*** $p < .001$

부모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조사 결과, 2012년도에 비해 2015년도 조사 시 상용근로자 비율이 약 5.5%p 증가하여 42.0%이며, 임시/일용 등 근로자는 32.1%, 자영업이나 무급가족 종사자는 13.4%, 비취업인 경우는 12.6%이었다. 이혼이나 사별보다는 기타 혼인상태인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 편이며, 모 한부모인 경우 비취업 상태가 16.0%로 부 한부모가족보다 높다. 또한 상용근로자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하여 종사상 지위가 소득수준의 차이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Ⅱ-1-9 참조).

〈표 II-1-9〉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가구)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특수/자활	자영업/무급가족	비취업	계(수)	$x^2(df)$
2015	42.0	32.1	13.4	12.6	100.0(2,552)	
혼인상태						
이혼	42.1	32.3	13.8	11.8	100.0(1,969)	
사별	45.4	31.8	13.6	9.1	100.0(403)	49.07(6)***
기타	33.3	30.3	8.0	28.4	100.0(180)	
가구구성						
모자	38.9	33.8	11.4	16.0	100.0(1,208)	
모자+기타	41.3	31.6	11.0	16.0	100.0(454)	81.49(9)***
부자	41.5	32.2	19.5	6.9	100.0(505)	
부자+기타	53.2	27.1	14.2	5.5	100.0(38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6	35.0	6.8	51.6	100.0(264)	
100~200만원 미만	35.6	44.7	8.4	11.3	100.0(1,315)	798.55(6)***
200만원 이상	60.3	14.2	21.8	3.7	100.0(973)	
2012	36.4	36.1	14.1	13.4	100.0(2,522)	
혼인상태						
이혼	36.2	34.6	15.1	14.1	100.0(1,928)	
사별	40.4	37.7	12.5	9.3	100.0(459)	32.82(6)***
기타	26.8	51.5	5.2	16.5	100.0(135)	
가구구성						
모자	33.2	42.5	10.6	13.7	100.0(1,183)	
모자+기타	38.6	28.9	14.0	18.4	100.0(410)	75.11(9)***
부자	36.7	31.9	20.8	10.6	100.0(482)	
부자+기타	42.6	30.0	16.3	11.0	100.0(44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9	44.4	5.9	41.7	100.0(422)	
100~200만원 미만	35.9	45.2	9.1	9.8	100.0(1,308)	720.59(6)***
200만원 이상	52.5	16.6	26.7	4.1	100.0(792)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67 <표Ⅱ-1-14>,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51 <표Ⅱ-1-14>를 재구성함.

*** $p < .001$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시설 현황을 보면(표 Ⅱ-1-10 참조),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22개소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그 중 기본생활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이 42개소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한다.

부자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 2개소, 공동생활지원 2개소로 전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Ⅱ-1-10〉 연도별 생활시설 개소수

단위: 개소

시설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21	121	123	122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41	41	41	42
	공동생활지원	2	3	4	3
	자립생활지원	3	3	3	3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1	2	2	2
	공동생활지원	2	2	2	2
	자립생활지원	-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33	31	20	20
	공동생활지원	25	26	38	38
		1	1	1	1
일시지원복지시설		13	12	12	11

자료: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7

나. 국외 한부모가족 현황

1)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현황: 전체적 비율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체 0~17세 아동 중 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16.6%로 나타났다(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 국가별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상이하였는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고한 국가는 터키(5.9%)이고, 그 뒤로 그리스(7.9%), 루마니아(9.3%), 크로아티아(9.9%), 폴란드(9.9%) 등이 10% 미만의 비율을 보고하였다(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1-2). 가장 높은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보고한 국가는 라트비아(30.6%)이고, 미국(27.5%), 벨기에(23.6%), 영국(23.1%), 덴마크(22.3%), 프랑스(21.7%) 등이 OECD 국가 중 한부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1-2). 정리해보면, 최소 5.9%에서 최대 30.6%까지 OECD 국가 간 한부모가족의 비율 차이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림 Ⅱ-1-2]에 2014년 OECD 각 국가의 0~17세 총 아동 대비 한부모가족 거주 아동 비율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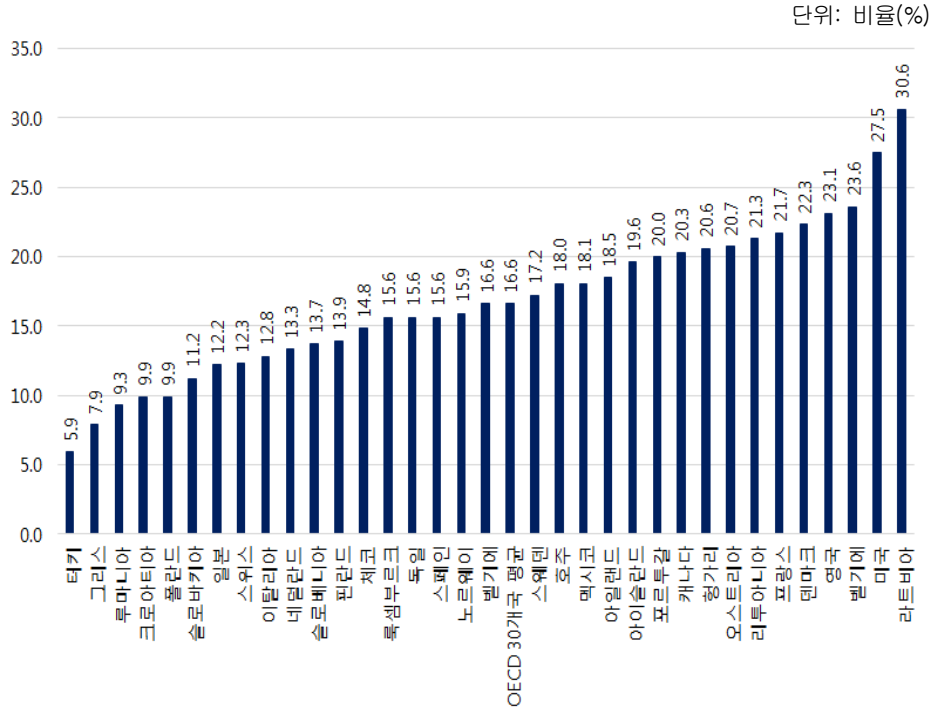

주: 사이프러스, 몰타, 에스토니아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자료임.
출처: OECD Family Database(2016). SF1.2.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4. http://www.oecd.org/els/soc/SF_1_2_Children_in_families.xlsx을 재구성함. (인출일: 2017년 5월 10일)

〔그림 II-1-2〕 OECD 국가 전체 0~17세 아동 대비 한부모가족 아동 비율(2014)

2) 한부모가족 비율 추이(2005-2014년)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혼한 부모 사이의 아동, 동거하는 부모 사이의 아동,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추이를 살펴본 OECD 보고에 따르면, 결혼한 부모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동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3). 즉, 2005년도에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하는 상

태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최저 15.6%(2008년)에서 최고 16.7%(2014년)의 범위 내에 머물렀다(OECD Family Database SF1.2, 2016: 2-3).

단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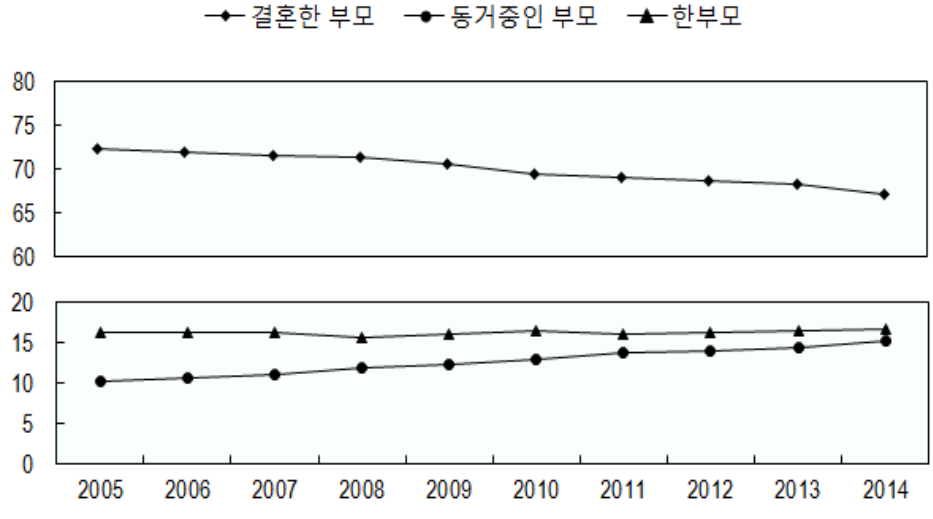

주: 세로축은 아동의 비율임. 즉, 범주에 따라 각각 결혼한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비율, 동거중인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비율, 한부모와 거주하는 아동 비율을 나타냄. 본 그래프는 23개의 OECD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 평균을 바탕으로 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 SF1.2.B. Trend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05 to 2014. http://www.oecd.org/els/soc/SF_1_2_Children_in_families.xlsx (인출일: 2017년 5월 10일)

〔그림 II-1-3〕 OECD 국가 0-17세 아동의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비율 추이 (2005-2014)

3) 어머니와 거주 vs. 아버지와 거주 비율

OECD 국가의 전체 0-14세 아동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 어떤 부모와도 거주하지 않는 아동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아동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1-2). 구체적으로 OECD 26개국 0-14세 전체 아동 중 한부모 어머니와 거주하는 아동은 15.23%,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은 2.18%으로 나타났다(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한부모가족 중 어머니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25.90%에 이르렀으며, 어머니와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5.59%)로 나타났다(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또한, 한부모가족 중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6.66%에 이르렀으며,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4.51%)이 그 뒤를 이었다(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한부모가족 중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가장 낮은 터키(0.65%)이다(OECD Family Database SF1.3, 2016: 2). 터키는 한부모가족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거주하는 비율이 모두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아버지들이 홀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북유럽 국가의 특성 상 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의 자료는 [그림 Ⅱ-1-4]에 정리하였다.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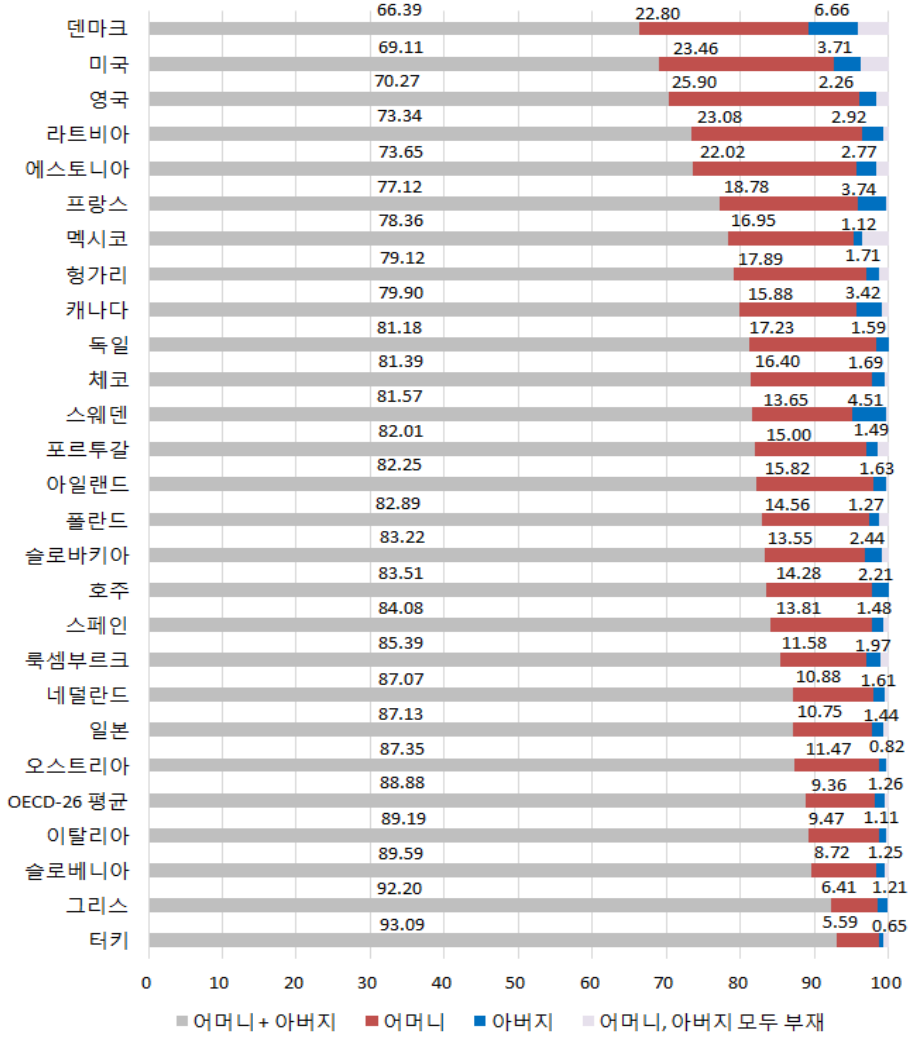

주: 0-14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함. 각 국가마다 최신 자료의 수집 년이 다를 수 있음.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14년 자료임. 일본은 2010년, 캐나다는 2011년, 덴마크와 스웨덴은 2012년, 호주는 2012/2013, 독일과 터키는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 SF1.3.A: Children by the presence of parents in the household, 2014 or latest available.
http://www.oecd.org/els/soc/SF_1_3_Living-arrangements-children.xls을 재구성함.
(인출일: 2017년 5월 10일)

〔그림 Ⅱ-1-4〕 OECD 국가 0-14세 부모-아동 거주 구성 현황(2014)

4) 고용 상태 별 비율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살고 있는 자녀들에 비해 부모의 근로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고, 빈곤 등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OECD 국가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24개국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35.6%가 무직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4). 이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전체 가구 조사에서 부모가 무직인 경우가 9.6%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2-3). OECD 국가 중 한부모가족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터키(63.2%)이며, 뒤 이어 아일랜드(57.7%)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4).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홀로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OECD 자료가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고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33.0%), 오스트리아(29.7%), 영국(28.4%), 독일(27.7%), 호주(27.3%) 등에서 한부모의 시간제 근무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5).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한부모가족의 2/3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5). 전일제 한부모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국가는 슬로베니아(71.4%), 스웨덴(69.3%), 덴마크(67.7%) 등이 있다(OECD Family Database LMF1.1.D, 2016: 5). 북유럽 국가 중 2개국에서 전일제 한부모 비율이 높은 것은 북유럽 복지 국가에서 한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분위기가 바탕이 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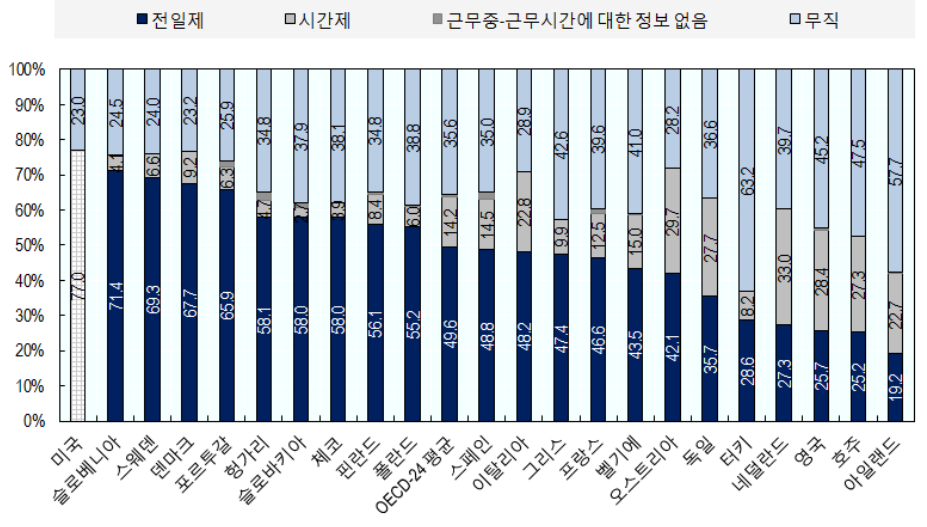

주: 몰타,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자료임. 미국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가 구분되지 않은 자료이며, 0-17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함. OECD 평균은 미국을 제외한 값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6). LMF1.1.D. Children in single-parent households by household employment status, 2014. http://www.oecd.org/els/soc/LMF_1_1_Children_in_households_employment_status.xlsx을 재구성함. (인출일: 2017년 5월 10일)

〔그림 II-1-5〕 OECD 국가 0~14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의 근로 상태(2014)

2.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이 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생활 영역별로 생계, 자녀 양육·교육, 주거, 부모 교육·자립·취업, 법률 지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제공되는 보편적 지원과 가족유형(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저소득 가구 지원 사업은 생략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 한부모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드림스타트는 본 절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본 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첫 번째 부분과 동일하게 생활 영역별(생계, 자녀양육·교육, 주거, 부모 교육·자립·취업,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Ⅱ-2-1〕 국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생활 영역 분류

가. 중앙정부 지원

1) 생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들 중 생계유지와 관계된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생계비 지원과 각 부처의 각종 생활 요금 감면 등이 있다.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만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b, 2017: 36-37). 그리고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내 구성원 수에 따라 특정 소득인정액 기준 즉, 소득인정액(월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본중위소득 52%이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b: 48). 2017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2인인 경우 1,463,513원, 3인인 경우 1,893,276원, 4인의 경우 2,323,038원, 5인의 경우 2,752,799원 6인의 경우 3,182,562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소득이 이를 넘지 않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b: 4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생계비(생활보조금) 부분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한부모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60%사이에 속하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가구는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나) 부처별 요금감면 혜택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한부모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경감, 정부 양곡할인(50%)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여성가족부, 2017a: 9).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의 경우 동절기(12-3월)에는 12,000원 감면, 4월-11월까지는 월 3,300원 할인을 지원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전기요금의 경우 월 2천원 한도로 주택용 전력 정액 감면 혜택을 주며, 심야전력 할인도 제공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부모가구에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 통신료 등 3만원 이내 사용요금에 대해 35%까지 할인해주어 최대 10,500원까지 감면해준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여성가족부, 2017a: 9).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신체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연 5만원), 체육바우처(월 7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a: 9).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수수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과태료의 50% 이내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a: 9).

〈표 Ⅱ-2-1〉 부처별 요금감면 혜택

부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경감 -정부 양곡할인지원(5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표 Ⅱ-2-1 계속)

부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환경부	-수도요금 감면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요금 35% 감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연5만원) -체육바우처지원(월7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경찰청	-과태료 50% 이내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50% 감면	지자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료: 여성가족부(2017a).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p.9

2) 자녀양육 및 교육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지원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양육비, 보육료, 교육비)을 지원해주거나, 시간제 돌봄, 긴급 돌봄 제공, 기관 입소 우선순위 제공, 아동발달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형태로 한부모가족을 지원 중이다.

가) 양육비, 교육비, 보육료 지원

앞서 소개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아동양육비 수혜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로, 아동 1인당 월 12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저소득 조손가족과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추가아동양육비)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156). 또한,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연 5.41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는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49).

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를 제공하는 또 다른 사업으로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청소년인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매월 1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계좌로 지급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보육료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은 만 0-2세반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구는 부 혹은 모의 자격사유(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없이도 종일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17: 310). 자녀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430,000원, 만 1세는 378,000원, 만 2세는 313,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7: 308).

둘째,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수혜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 321). 일일 4시간 이용의 조건을 충족할 시 월 10만원이 지급되나,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7: 321).

셋째, 주간 보육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부 혹은 모의 야간 근무 때문에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24시간 보육료를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7: 325). 야간 보육 시간은 19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만0세반은 645,000원, 만1세반은 567,000원, 만2세반은 469,500원, 만3~5세반은 330,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7: 308).

넷째, 6~36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시간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중 한부모가구는 맞벌이형 지원을 받게 되는데, 월 80시간의 시간제 보육이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 277). 이용 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며, 3천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천원은 부모가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17: 277).

나) 돌봄 제공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취약·위기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긴급 돌봄과 학습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인 저소득 취약가족 중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64).

자녀 학습과 정서지원은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만 15세 이하 자녀(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에게 제공되는데,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을 도와주거나 자녀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64).

생활도움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취약·위기가족 중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0시간 이내로 키움보듬이가 파견되어 자녀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외에 생활 및 가사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64).

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돕는 방법으로 기관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한부모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1순위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한부모지원법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외에 기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어린이집 입소 2순위 혜택을 받는다(보건복지부, 2017: 64, 66).

라) 아동발달 프로그램 제공

초등학생 이하인 만 12세 자녀를 둔 취약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는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0).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발달과 양육환경, 필요한 지원 등을 조사하여, 각 사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120).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아동의 건강한 신체와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제공, 예방, 치료기회를 주고, 아동발달 상 적절한 신체활동과 신체 건강과 관련된 활동 기회와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과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한다. 셋째, 아동의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자아존중감, 사회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인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4)]

3) 주거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민관협력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4)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 지원서비스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4_01.asp (인출일: 2017년 8월 22일)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저소득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은 가족유형(예: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에 따라 조건에 맞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시설 내에 주거할 수 있으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소 연장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로 입소대상 조건과 입소기간을 <표 Ⅱ-2-2>에 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가족은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녀가 취업 시 만 22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입소 이후에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를 초과하게 되어도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보장받는다(여성가족부, 2017b: 204).

모(부)가족 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은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방과후 아동지도와 급식비 지급, 심리정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모(부)에게는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연계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7). 모(부)자 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과 마찬가지로 주거지를 제공하며, 그 외에 모 혹은 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직업교육 등)을 지원한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자립준비금 공제제도가 있다. 시설에 입소한 뒤, 성실히 근로하여 근로소득을 저축한 한부모가족이 근로 소득 향상으로 인해 퇴소해야하는 상황을 막고자, 근로소득 40% 이상 저축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준비금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b: 224). 즉, 한부모가족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40%이상 저축한 경우 이를 자립준비금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책정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입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립과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여성가족부, 2017b: 224).

〈표 Ⅱ-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대상과 기간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연장)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표 Ⅱ-2-2 계속)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연장)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일시지원 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자료: 1)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8
2)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6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57

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월세로 한부모가족이 주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6년까지는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가족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7년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모자가족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7b: 287-288).

입주하는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1회에 한해 최대 2년 내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b: 288). 또한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 특성(가족 구성원 수, 자녀 연령)과 주택특성(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1호당 1가구 입주가 가능하기도 하다(여성가족부, 2017b: 289).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기관을 최근 5년간 운영한 법인들이 선정된다(여성가족부, 2017b: 292). 현재 지역별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은 <표 Ⅱ-2-3>과 같다.

〈표 Ⅱ-2-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운영기관(2017)

권역	운영기관	권역	운영기관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17a).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p.18

다) 민관협력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주거 지원

자립의지가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또 다른 주거지원으로 민관협력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주거지원이 있다.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자조모임이나 취업연계와 같은 자립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주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7a: 18).

라)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공급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법과 같은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주택 유형별로 한부모가족 순위가 달라지는데,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에서 1순위 우대를 받는다(여성가족부, 2017a: 19). 5년·10년 공공임대의 경우 특별공급(기관추천) 순위를 받으며, 30년 국민 임대는 우선공급과 가점을 부여받은 일반공급 순위 혜택을 받는다(여성가족부, 2017a: 19).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 시 입주대상자가 된다(여성가족부, 2017a: 19).

4) 부모 교육·자립·취업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주거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부모의 교육, 자립, 취업을 돕는 지원으로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앞서 양육비 지원 부분에서 소개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의 교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중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 촉진수당 수여가 가능한데, 각 지원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하다.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는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 대상이며,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이내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다.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는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3~60%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기별로 학비를 학교에 직접 지불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촉진수당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수당이 매달 10만원씩 계좌로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가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도움을 준다(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7: 50).

〈표 Ⅱ-2-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중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지원(2016)

구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수당
지급 시기	수시 지급(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53~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계획	해당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혹은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자료: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6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51

나) 취업성공패키지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세에서 만 64세 사이의 기초생활 수급자, 미혼모,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a: 23). 한부모의 개인의 취업 지원 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기간

은 최대 1년이고,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여성가족부, 2017a: 23).

프로그램 1단계는 취업상담 지원이다. 한부모가 취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면, 월 최대 25만원까지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a: 23). 두 번째 단계로 취업의욕과 능력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한부모에게는 훈련비가 지원되는데, 최대 200-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마지막 단계로 집중 취업 알선을 도와준다(여성가족부, 2017a: 23).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한부모들은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a: 23).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받는 수당 중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25만원)과 3단계 취업성공수당(100만원)과 같은 실비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17b: 77).

5) 법률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과 관련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년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혹은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상담, 관련 법률지원, 합의 지원, 소송 지원, 양육비 소송 후 확정 판결의 이행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을 해주거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다.[5)]

---

5)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개.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56C58/contents.do. (인출일: 2017년 8월 2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인출일: 2017년 8월 23일)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중 '먼저 알고가기'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참조.

나)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b: 317). 한부모가족이 민·가사 혹은 형사사건, 행정 소송 등에 휘말려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법률상담, 소송대리를 포함하여 기타 법률 사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급한다(여성가족부, 2017b: 318).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인지 사건은 다른 민·가사 사건과 분리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17b: 316-319).

나. 지자체 지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자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7개 시(서울, 부산, 대구, 세종, 광주, 대전, 울산)와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생계, 자녀양육·교육, 주거 지원, 부모 교육·자립·취업의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정리하였다.[6]

1) 생계

13개의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의 생계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난방비 지원, 교통비 지원과 같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지자체들이 가장 많았다. 일부 지자체(예: 부산 수영구, 부산 금정구)에서는 위생용품과 같은 생필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밑반찬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표 II-2-5〉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부산		질병치료비 지원
	해운대구	저소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금정구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수영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자가족 위생용품 지원

6)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역별추가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인출일: 2017년 6월 23일)

(표 Ⅱ-2-5 계속)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건강검진비
세종		교통비 지급 명절지원비
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중 가계지원비
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중 생필품비 지원
강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중 난방연료비
	평창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 중 난방연료비
	인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충북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중 월동비
전북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
전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지원
경북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족 건강검진
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창녕	한부모가정 생활안정비
	거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김장비 지원
제주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2) 자녀양육 및 교육

13개의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중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나 교재비, 학습비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대학 입학 준비금·입학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부산, 대구, 세종, 충남, 경북, 제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급식비나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Ⅱ-2-6〉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자녀교육 지원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부산		자녀양육지원-학용품비 자녀양육지원-교통비 지녀양육지원-입학준비금
	수영구	한부모가족 자녀 문화체험 행사
	기장군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

(표 Ⅱ-2-6 계속)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대구		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세종		학습지원비 지원 교복비 지원 대학입학금
대전		자녀생활 교육비 초중고 입학생 교재교구비 지원
	동구	한부모가정 자녀 입학축하금
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 초중고 교육교재비 한부모가족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중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강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춘천	한부모가족 하계수련회 및 견학
	삼척	삼척시 한부모가족 시책지원사업
	평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고등학생 자녀 교과서비
충북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전북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경북		자녀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초등학생 급식비 자녀기능 교육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밀양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활동 지원
	함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
	창녕	한부모가정 생활안정비 중 고등학생 교과서대, 중학생 부교재비
	산청	한부모가족 자녀 합동
제주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3) 주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자체의 주거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임대주택혜택 방식 보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울산, 충남, 경남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세대 당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세주택을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표 II-2-7〉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지역	지역구	지원사업
부산		부자가족 주거지원
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 전세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충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남	김해	모자보호시설 희망모자원

4) 부모 교육·자립·취업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자립지원급 지급, 자립 프로그램 제공,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의 방식으로 한부모가족을 돕고 있다. 9개의 지자체에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를 만들어 한부모가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자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표 II-2-8〉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부모 교육·자립·취업 지원

지역	지원사업
서울	한부모가족 통합상담 한부모자립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좋은 부모를 위한 한부모 계속학습 지원
부산	재가 한부모가족 자립프로그램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프로그램 지원
대구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직업훈련비 지원
광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표 Ⅱ-2-8 계속)

지역	지원사업
울산	모자, 미혼모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충북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전북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경북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생활자립금(창업자금) 지원
제주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5) 기타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생활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의 한부모 특별지원사업과 대전시(동구)의 한부모가족 지원후원단체 관리 발굴 사업이 있다.

먼저 서울시의 한부모 특별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돕고자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꽃 배달 서비스, 미혼 한부모가족의 자녀 백일 돌 사진촬영 지원, 가족 여행 지원 등이 그 예이다.

대전시 동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후원단체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것을 사업화 하여 진행하고 있다. 후원기관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후원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외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로는 한부모가족 비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었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제도는 제외하였으나 그 대상이 주로 한부모가족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2016년 U. S. Census Bureau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총 11,814,000의 한부모가족 중 모자 가정은 9,781,000가구이고, 2,033,000가구는 부자 가정으로 나타

났다. 모자 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83%에 육박하여, 여성 한부모가 미국 한부모가족의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한다.[7] 정리해 보면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저소득 여성한부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주(state)마다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상이하다.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중 절반이 넘는 복지 지원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족에게 수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한부모가족이다.[8]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크게 생계지원, 양육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목록은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구분	지원사업 예	
생계지원	비용지원, 세금혜택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Unemployment Insuranc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식비지원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Child Nutrition Programs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
	에너지 비용 지원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자녀 양육지원	Head Start, Early Head Start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CCAP)	
주거지원	Section 8 Housing Program Public Housing Program	
부모 자립·교육	Federal Pell Grant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의료지원	Me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자료: 1) 임성은(2010).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p.92.
2) Single Mother Guide. Grants for Single Mothers. https://singlemotherguide.com/grants-for-single-mother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3) Singlemothersgrants.org. Most helpfu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for Single moms. http://singlemothersgrants.org/most-helpful-government-assistance-programs-for-single-mom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7) U.S. Census Bureau-Table FG10. Family Groups (2016).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mo/tables/families/2016/cps-2016/tabfg10-all.xl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8) Single Mother Guide. Grants for Single Mothers. https://singlemotherguide.com/grants-for-single-mother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1) 생계

가) 비용지원, 세금 혜택

생계 지원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지원으로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이 있으며, 직업이 없는 한부모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Unemployment Insurance,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등이 있다.

(1)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생계지원의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등을 독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9] TANF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대 60개월 지원 가능하다. 본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 내 자녀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준에 대한 기준은 주마다 달리한다(Falk, 2014: 1).

TANF는 개인이 지원 후 주 담당 기관 내 평가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수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가족 수, 소득, 자산, 생활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 TANF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집단으로 보고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서 TANF 현금지원을 받기 위한 최대 월 평균 소득이 가장 적은 주는 알라바마주($268)이며, 가장 높은 주는 위스콘신주($1,829)로 나타났다(Falk, 2014: 14-15). TANF로 가장 높은 금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는 알라스카주($923)이고, 가장 적은 현금 수혜를 받는 주는 미시시피주($170)으로 나타났다(Falk, 2014: 7, 17-18). 수혜 금액의 지역별 경향을 살펴보면, 미국 남부 지역보다는 북동 지역에서의 수혜가 높은 편이다(Falk, 2014: 8).

---

9) Office of Family Assistance. About TANF.
https://www.acf.hhs.gov/ofa/programs/tanf/about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표 Ⅱ-3-2〉 미국 주별 TANF 현금 지원 수혜 기준 내 최대 월평균 소득과 TANF 최대 수혜 가능 금액(2012 기준)

주	TANF 현금 지원 수혜 기준 내 최대 월평균 소득($)	TANF 최대 수혜 가능 금액($)
Alabama	268	215
Alaska	1,605	923
Arizona	567	277
Arkansas	278	204
California	1,258	638
Colorado	420	462
Connecticut	879	674
Delaware	427	338
District of Colombia	587	428
Florida	392	303
Georgia	513	280
Hawaii	1,740	610
Idaho	631	309
Illinois	794	432
Indiana	377	288
Iowa	1,061	426
Kansas	518	429
Kentucky	905	262
Louisiana	359	240
Maine	1,022	485
Maryland	717	574
Massachusetts	707	618
Michigan	814	492
Minnesota	1,019	532
Mississippi	457	170
Missouri	540	292
Montana	753	504
Nebraska	912	364
Nevada	1,447	383
New Hampshire	843	675
New Jersey	635	424
New Mexico	865	380
New York	859	770
North Carolina	681	272
North Dakota	1,142	427
Ohio	794	450

(표 Ⅱ-3-2 계속)

주	TANF 현금 지원 수혜 기준 내 최대 월평균 소득($)	TANF 최대 수혜 가능 금액($)
Oklahoma	804	292
Oregon	615	506
Pennsylvania	703	421
Rhode Island	1,258	554
South Carolina	1,428	216
South Dakota	771	555
Tennessee	1,306	185
Texas	401	263
Utah	667	498
Vermont	1,040	640
Virginia	628	389
Washington	936	478
West Virginia	565	340
Wisconsin	1,829	653
Wyoming	792	602

주: 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자료: Falk(2014).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Eligibility and benefit amounts in state TANF Cahs Assistance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15, 17-18 자료(2012년 기준)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2) Unemployment Insurance

미국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미취업 상태의 한부모에게 최대 26주까지의 주급을 제공하는 Unemployment Insurance가 있다. 수혜자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자가 아니어야 한다. 직장에 근무하던 최근 1년간(52주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최대 수혜금액에 결정된다. 지원을 받는 동안 구직 상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직장을 구하거나, 제안을 거절한 경우 등) 각 주의 Unemployed Insurance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10]

(3)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지원이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이다. EITC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

1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https://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uifactsheet.asp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식이다. 부양하는 아동이 있으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대상 아동의 연령, 관계, 거주 여부, 부부 소득세 합산 신고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9세 미만, 24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 장애아 등이 연령 조건이 되며, 납세자의 자녀이거나, 형제자매이면 된다. 반드시 납세자와 같은 거주지에 살아야 하며, 자녀가 부부 소득세 합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11)]

나) 식비 지원

미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식비 지원으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Child Nutrition Programs,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이 있다.

(1)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Food Stamp로 알려진 제도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이다. SNAP은 앞서 소개한 TANF와 함께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본 지원은 세후 가구 월 소득과 가구 내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최대 할당량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다. 즉, 세후 가구 월 소득에 0.3을 곱하고, 이 값을 아래 표에 제시한 최대 월 할당량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소득의 30%를 제외하고 수여하는 이유는 각 가정에서 적어도 소득의 30%는 식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이다.[12)] 비용은 직불카드(EBT)로 지급되며, 수혜 받은 가족 구성원은 EBT를 취급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표 II-3-3〉 SNAP 가구 인원 대비 월 최대 할당량

가구당 인원(명)	월 최대 할당량($)
1	192
2	352
3	504
4	640
5	760

11) IRS.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earned-income-tax-credit-questions-and-answers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ility. https://www.fns.usda.gov/snap/eligibility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표 Ⅱ-3-3 계속)

가구당 인원(명)	월 최대 할당량($)
6	913
7	1,009
8	1,153
1명 추가 시	144

주: 본 표에서 제시한 금액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ility. https://www.fns.usda.gov/snap/eligibility 를 번역 정리함.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2)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

Women, Infant and Children Program(WIC)은 연방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서, 저소득 여성 중 임산부, 모유수유를 하거나 하지 않는 산모와 0-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혜택으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 영양 교육과 상담을 진행,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서비스로 안내한다.[13)]

(3) Child Nutrition Programs

미국 농림부에서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Child Nutrition programs의 예로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School Breakfast Program, Team Nutrition, Special Milk Program 등이 운영 중이다.[14)]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아동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

(4)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TEFAP)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주 단위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역 단체 등에 음식을 제공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한다. 2016년 기준으로 약 90종류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016: 1). TEFAP 대상자는 앞

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About WIC- WIC at a Glance.
https://www.fns.usda.gov/wic/about-wic-wic-glance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14) Singlemothersgrants.org. Most helpfu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for Single moms.
http://singlemothersgrants.org/most-helpful-government-assistance-programs-for-single-moms /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서 소개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tants, and Children(WIC), Child Nutrition programs 중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의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016: 2).

다) 에너지 비용 지원

전기세 등 관리비에 대한 지원으로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와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등이 있다.

(1)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에너지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가정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의 전기세 혜택을 준다. LIHEAP 지원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의 수혜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다. LIHEAP 역시 가구 소득과 가구 구성원, 거주하는 주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5)]

(2)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은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16)] 노인, 장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에너지 요금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한다. 검사관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바람이 새어나가는 곳은 없는지, 에너지 장치의 효율과 안전이 괜찮은지 등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17)]

---

15)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LIHE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nsumers. https://www.acf.hhs.gov/ocs/resource/consumer-frquently-asked-questions#Q11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16) Office of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https://energy.gov/eere/wipo/weatherization-assistance-program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17) Office of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Where to Apply for Weatherization Assistance. https://energy.gov/eere/wipo/where-apply-weatherization-assistance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2) 자녀양육

미국의 대표적인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Head Start, Early Head Start와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이 있다.

가)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0-5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학습 준비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가 있다. Early Head Start는 0-2세 아동을 지원하며, Head Start는 3-5세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수의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기관과 학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부에서는 주별로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관을 통한 경우가 더 많다. Early Head Start는 엄마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영아 혹은 걸음마기일 때 시작하는데, 3세까지 지원한 후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Pre-K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교육지원, 건강지원, 가족 복지 지원이 있다. 아동의 언어 발달, 문해력, 개념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과 같이 다양한 발달 측면 간 균형이 맞도록 개별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가 늦은 아이들에게는 언어 치료사를 붙여준다거나, 정서가 불안정한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건강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데,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고 필요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 관계자들은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의 주변 가정 상황이 안정적인지 점검한다. 주거는 안정적인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알아보고, 아동의 건강과 교육에 최선의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한다.[18)]

나)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 차원에서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이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며, 가구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여야

---

18) Office of Head Start.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Head Start Programs.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한다. 본 프로그램 역시 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시 유의해야한다.[19]

3) 주거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Section 8 Housing Program과 Public Housing Program이 있다.

가) Section 8 Housing Program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전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는 The Section 8 Housing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족 주택 임대료의 일정 부분 지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수혜 대상자 선정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소득, 가구 크기, 가구 구성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연방 기금을 바탕으로 한 본 프로그램은 House Choice Voucher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다. 바우처는 Public housing agencies(PHAs)에 등록하고 거주 지역, 선택한 집 조건에 따라 수혜 받는 금액이 결정된다.[20]

나) Public Housing Program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Public Housing Program이 있다.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가 주관하고, 지역의 housing agencies(HAs)가 직접 저소득 거주자를 돕도록 관리한다. 수혜 대상자 선정 역시 연간 세전 소득, 가족이 있는지, 이들 가족이 좋은 세입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저소득의 기준은 각 주와 Housing agencies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집을 받게 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조정한다. HAs는 임대를 관리하고, 비용관리를 하며, 집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21]

---

19) Department of Education. Louisiana Believes.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http://www.louisianabelieves.com/early-childhood/child-care-assistance-program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20) Section 8 Housing. What is Section 8? https://section-8-housing.org/What-is-Section-8-Housing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21) HUD.GOV. HUD's Public Housing Program. https://www.hud.gov/topics/rental_assistance/phprog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4) 부모 자립·교육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으로 Federal Pell Grant와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가 있다.

가) Federal Pell Grant

저소득 한부모 중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방 차원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으로 Pell Grant가 있다. 본 지원금은 학자금 대출 형식이 아니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경제적인 상황, 교육비, 수업을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듣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세후 소득 비율, 세후 자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Federal Pell Grant의 수여가 결정된다.[22)]

나)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이전에 대학학위를 받지 않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최저 $100에서 최대 $4,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Pell Grant가 개인에게 직접 수여되는 지원금이었다면, FSEOG는 학교 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기금이 전달되는 형식을 띈다. Pell Grant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위해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작성해야하며, 각 학교에서 대상 선정을 결정한다.[23)]

5) 의료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원은 Medicaid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이 있다.

---

22) U. 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Pell Grant Program. https://www2.ed.gov/programs/fpg/index.html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23) FederalStudentAid, A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FSEOG) is a grant for undergraduate students with exceptional financial need.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fseog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가) Medicaid

Medicaid는 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뒤이어 소개할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과 함께 운영된다. 아이, 임산부,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7,250만 미국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Medicaid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과세 임금과 세금 신고서 간의 관계를 기초하여 결정한다.[24]

혜택의 범위는 공통 혜택과 선택적 혜택으로 나뉘며 구체적 내용은 <표 Ⅱ-3-4>와 같다. 공통 혜택은 미국 전역에서 Medicaid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하며, 선택적 혜택은 주에 따라 선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이른다.[25]

〈표 Ⅱ-3-4〉 Medicaid 혜택 목록

공통 혜택	선택적 혜택
입원 서비스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
외래 서비스	클리닉 서비스
EPSDT: 조기 및 주기적 스크리닝, 진단과 치료 서비스	물리치료
간호 시설 서비스	직업치료
가정 건강 서비스	언어 장애 서비스
의사 서비스	호흡기 관리 서비스
농촌 건강 클리닉 서비스	기타 진단, 스크리닝, 예방 및 재활 서비스
연방 인증 보건소 서비스	발병치료 서비스
검사와 X-ray 서비스	시력검사 서비스
가족 계획 서비스	치과 서비스
간호 산파 서비스	틀니
자격 있는 소아과 및 가족 임상 간호사 서비스	인공기관(예: 의족 등)
독립된 출산 센터 서비스	안경
의료시설로의 교통 제공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임산부를 위한 흡연 중단 상담	기타 의사 서비스
	개인 간호 서비스
	개인 돌봄
	호스피스
	케이스 관리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치료시설 서비스
	(이하 생략)

자료: Medicaid.gov, List of Medicaid Benefits. https://www.medicaid.gov/medicaid/benefits/list-of-benefits/index.html을 번역 및 재구성함.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24) Medicaid.gov, Eligibility. https://www.medicaid.gov/medicaid/eligibility/index.html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25) Medicaid.gov, List of Medicaid Benefits. https://www.medicaid.gov/medicaid/benefits/list-of-benefits/index.html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나)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Medicaid 혜택을 받기에는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 아동을 대상으로 저가의 건강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edicaid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CHIP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정기 검진, 면역, 의사 방문, 처방, 치과 및 안과 관리, 입원과 외래 이용, 검사 및 X-ray 서비스, 긴급 서비스 등이 있다. 이용비용이나 가능한 상세 서비스는 역시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26)]

나.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지원을 하여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한부모가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임성은, 2010: 85, Tinsley, 2014: 9-10). 다시 말해,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을 원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국가가 한부모의 경제 활동을 격려하여 자립하도록 돕는 체계이다.

영국에서는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두 가지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과, 부모가 가진 자질/자격(qualifications)을 꼽는다(Tinsley, 2014: 45). 자녀 연령이 증가하고 부모의 자질/자격 수준이 높을 때 부모가 경제활동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1) 생계 및 자립·취업 지원의 연결

영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중에 핵심이 되는 생계 지원으로 Income Support(IS)가 있다. Income Support(IS)는 한부모가 주당 16시간 이하를 일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은행 잔고가 £16,000 이하인 경우에 수여되는 소득 지원이다.

하지만 2008년에 Lone Parent Obligations(LPOs)가 소개되고 난 뒤, 자녀의

26) HealthCare.gov,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https://www.healthcare.gov/medicaid-chip/childrens-health-insurance-program/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연령에 따라 Income Support(IS)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도록 즉, Income Support(IS)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본래 제도 초반에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상이 되면 Income Support(IS)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에 자녀 연령 기준을 강화하여 가장 어린 자녀가 5세가 되면 부모가 Income Support(IS)에 의존하는 대신 직업을 찾는 한부모를 지원하는 Jobseeker's Allowance(JSA)를 받도록 하였다(Tinsley, 2014: 34).

Income Support(IS)에서 Jobseeker's Allowance(JSA)로 전환되는 과정을 위해 한부모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이 Lone Parent Work Focused Interviews (WFI)이다. Lone Parent Work Focused Interviews(WFI)는 자녀의 연령이 1~3세인 때는 일 년에 2번, 아동 연령이 4세일 때는 일 년에 4번 시행되는 교육과 훈련이다. 만일 이 교육을 패스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받는 Income Support(IS)의 약 20%까지 삭감될 수 있다(Tinsley, 2014: 36). 한부모가 Lone Parent Work Focused Interviews(WFI)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insley, 2014: 37).

한부모의 경제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또 다른 지원으로 In Work Credit(IWC)이 있다. In Work Credit(IWC)은 일을 하지 않다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한부모에게 주당 £40(런던 밖 거주 한부모 대상)에서 £60(런던 내 거주 한부모 대상)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한부모가 직장에 근속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수혜 가능하다(Tinsley, 2014: 37).

2) 자녀양육 지원과 부모 취업을 함께 고려

영국의 자녀 돌봄에서 가장 큰 지원은 3세와 4세를 대상으로 하는 주당 15시간 무상보육지원이다. 1년 최대 38주 동안 부모의 근로상태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Tinsley, 2014: 37).

또 다른 자녀양육 지원으로는 Working Tax Credit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 주당 최소 16시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금의 70%를 Working Tax Credit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자녀 1명인 경우 주당 £175,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300이다(Tinsley, 2014: 37).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지원(Care to Learn)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Care to Learn은 모든 부모에게 열려있지만, 특히 한부모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08~2009년에 Care to Learn을 이용한 부모의 80%는 한부모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7%가 자녀 돌봄 지원이 학업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Tinsley, 2014: 38-39).

영국의 자녀양육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자녀 돌봄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다.[27] 특히 Working Tax Credit 지원은 주 16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은 한부모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북유럽 국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특성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모두 공동육아와 공동 양육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혼 후에도 양부모의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둘째,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는 양부모가족보다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간 아동 수당금을 모두 동등하게 지급하여 북유럽 간에도 지급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1) 공동 육아(co-parenting), 공동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의 강조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혼 후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성 평등의 의식이 잘 발달되었기에 공동 육아와 공동 양육권이 강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는 1981년, 덴마크는 2007년, 스웨덴은 1998년부터 이혼 후 부모 모두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그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였다(Rostgaard, 2014: 13). 타 국가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자녀양육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과는 다른 관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7) Support to help lone Parents into work.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pport-to-help-lone-parents-into-work (인출일: 2017년 11월 27일).

2) 덴마크, 노르웨이: 한부모가족에 아동 수당 차등 지급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은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 간 아동 수당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한부모가족에게 더 많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양부모가족에게는 한 자녀 €1,267, 두 자녀 €2,534, 세 자녀 €3,800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는 한 자녀 €2,192, 두 자녀 €3,917, 세 자녀 €5,643를 지급함으로써 수당지급액에 차등을 두었다. 노르웨이 역시 양부모가족에게 한 자녀 €987, 두 자녀 €1,975, 세 자녀 €2,962를 지급하였고, 한부모가족에는 각 €1,000 정도를 더 지급(한 자녀 €1,975, 두 자녀 €2,962, 세 자녀 €3,9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tgaard, 2014: 11).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자녀 돌봄에서 취약성을 띄고 있음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외 한부모 현황과 한부모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한부모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마다 국내 한부모가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자가구의 비율이 부자가구보다 많으며, 여성 한부모의 비취업률이 남성 한부모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모자가구가 저소득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 비율이 높은 경향은 OECD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벨기에, 영국, 덴마크 등이 있었으며, OECD국가의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보다는 모자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중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이었다. 이는 본 장의 마지막에서 다룬 북유럽 정책에서 이혼 후에도 공동 육아(co-parenting), 공동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을 강조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된다. OECD국가 전반에서 한부모의 취업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내외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한부모가족지원사업들은 지원하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취하고 있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등은 두 개 이상의 생활영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한부모복지시설 역시 거주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등 한부모가족의 전반적 생활을 돕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표 Ⅱ-4-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생활영역별 요약

생활영역	지원 내용	사업명
생계	생계비용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각 부처 요금감면 혜택	
자녀양육 자녀교육	양육비, 교육비, 보육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만 0-2세반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24시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돌봄 제공	취약·위기가족 지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아동발달 프로그램 제공	드림스타트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민간협력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주거 지원	
	LH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공급	
한부모 교육 자립 취업	자립교육, 학습비 지원, 자립 촉진 수당 지급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취업교육 및 훈련 제공, 취업 알선, 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법률분쟁 소송비 지원, 변호사 보수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사업대상과 수행기간을 사업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Ⅱ-4-2>와 같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의 경우,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종사자나 사회복무요원 등 한부모가족을 돕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치단체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Ⅱ-4-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사업별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31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17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치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각 시설 시설종사자 시설입소자 사회복무요원 등	자치단체 민간단체 한부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양육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 이혼위기가족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선정·운영)

자료: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4

마지막으로 국외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부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국가에서 한부모 지원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지원 방향을 고찰하였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주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차가 큰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양육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에 한부모의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Income Support에서 Jobseeker's Allowance로 지원이 바뀌는 것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혼 후 한부모가족의 공동 육아(co-parenting)와 공동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부자가구의 비율이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북유럽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방향과 일치하였다. 또한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양부모가족보다 한부모가족에게 더 많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각 국가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배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타 국가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국외 사례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한부모의 경제시장 진입과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시해야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Ⅲ.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재분석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5)의 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한부모 데이터만을 재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요 결과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한부모의 자녀 돌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전배우자와의 관계, 지원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 특성별로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할 때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자녀 돌봄

자녀 돌봄 영역에서는 돌봄 유형,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양육에서의 어려움 등을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령기 자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유형은 어린이집 이용이 69.4%로 가장 많으며, 유치원 20.3%, 조부모 돌봄 4.3% 등의 순이었다. 2순위의 경우 조부모 돌봄이 42.4%이고, 부모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31.2%이다.

자녀 돌봄에 있어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자 가구보다는 모자 가구에서, 그리고 기타 구성원이 있는 가구보다는 없는 가구에서 부모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수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Ⅲ-1-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단위: %(가구)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조부모	친인척	본인 직접 돌봄	계(수)
전체	69.4	20.3	0.4	4.3	0.7	5.0	100.0(262)
가구구성							
모자	68.1	21.8	0.0	0.0	1.7	8.4	100.0(137)
모자+기타	68.8	20.3	0.0	6.3	0.0	4.7	100.0(35)
부자	73.8	19.0	2.4	2.4	0.0	2.4	100.0(50)
부자+기타	69.6	19.6	0.0	10.7	0.0	0.0	100.0(40)
$x^2(df)$	n/a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4.5	16.1	0.0	0.0	0.0	19.4	100.0(32)
100~200만원 미만	65.2	27.3	0.8	1.5	0.0	5.3	100.0(132)
200만원 이상	74.8	13.4	0.8	8.4	1.7	0.8	100.0(98)
$x^2(df)$	n/a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표 Ⅲ-1-2〉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2순위)

단위: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조부모	친인척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학습지/방문과외	본인 직접 돌봄	계(수)
전체	4.4	4.4	3.6	42.4	5.2	5.2	0.8	2.8	31.2	100.0(225)
가구구성										
모자	3.3	2.2	8.7	8.7	3.3	8.7	1.1	4.3	59.8	100.0(106)
모자+기타	5.1	5.1	0.0	62.7	8.5	0.0	0.0	1.7	16.9	100.0(32)
부자	0.0	2.6	2.6	47.4	13.2	10.5	2.6	0.0	21.1	100.0(47)
부자+기타	7.1	7.1	0.0	76.8	0.0	0.0	0.0	1.8	7.1	100.0(40)
$x^2(df)$	n/a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4.8	7.4	3.7	29.6	0.0	0.0	0.0	0.0	44.4	100.0(28)
100~200만원미만	0.9	0.9	5.5	29.4	5.5	9.2	0.9	5.5	42.2	100.0(106)
200만원 이상	4.5	6.3	1.8	59.8	6.3	2.7	0.9	0.9	17.0	100.0(91)
$x^2(df)$	n/a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초등학령기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유형은

47.7%가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원 18.5%, 조부모 12.0%, 본인 직접 돌봄 10.0% 등의 순이었다. 2순위 응답에서는 학원 28.6%, 본인 직접 돌봄 24.9%, 조부모 17.6% 등이었다.

〈표 Ⅲ-1-3〉 돌봄 유형: 초등학생(1순위)

단위: %(가구)

	초등돌봄/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원	조부모	친인척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학습지/방문과외	본인직접돌봄	기타	계(수)
전체	47.7	8.7	18.5	12.0	1.2	0.1	1.3	10.0	0.4	100.0(799)
가구구성										
모자	53.2	10.0	19.3	3.3	0.5	0.3	1.5	11.6	0.3	100.0(447)
모자+기타	48.8	3.5	12.9	22.4	0.0	0.0	0.0	12.4	0.0	100.0(88)
부자	46.9	11.0	20.0	5.5	2.1	0.0	1.4	11.0	2.1	100.0(180)
부자+기타	31.1	10.6	22.7	28.8	3.8	0.0	2.3	0.8	0.0	100.0(84)
$x^2(df)$					n/a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0.7	12.3	8.2	11.0	0.0	1.4	0.0	16.4	0.0	100.0(84)
100~200만원 미만	50.1	10.8	13.8	10.0	0.8	0.0	2.0	11.6	0.8	100.0(462)
200만원 이상	43.0	4.6	28.5	15.4	2.0	0.0	0.7	5.9	0.0	100.0(253)
$x^2(df)$					n/a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가구특성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자 가구보다는 모자 가구에서 한부모 본인이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으며, 기타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조부모에 의한 돌봄 비율이 훨씬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지역아동센터를,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1-4〉 돌봄 유형: 초등학생(2순위)

단위: %(가구)

	초등돌봄/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원	조부모	친인척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학습지/방문과외	본인직접돌봄	기타	계(수)
전체	9.8	5.8	28.6	17.6	3.8	1.3	7.5	24.9	0.5	100.0(645)
가구구성										
모자	8.5	5.9	29.4	4.6	3.3	1.3	10.5	36.3	0.3	100.0(351)
모자+기타	9.6	6.4	33.1	31.2	7.0	0.0	3.2	8.3	1.3	100.0(72)

(표 Ⅲ-1-4 계속)

	초등돌봄/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원	조부모	친인척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학습지/방문과외	본인 직접 돌봄	기타	계(수)
부자	13.8	7.3	26.6	7.3	4.6	2.8	10.1	27.5	0.0	100.0(142)
부자+기타	9.8	3.3	22.8	42.3	0.8	1.6	3.3	16.3	0.0	100.0(80)
$x^2(df)$					n/a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3	14.0	17.5	8.8	5.3	0.0	14.0	31.6	3.5	100.0(65)
100~200만원 미만	12.6	5.2	24.9	13.9	3.7	1.8	4.7	32.7	0.5	100.0(360)
200만원 이상	6.5	5.0	36.5	25.0	3.8	0.8	10.0	12.3	0.0	100.0(220)
$x^2(df)$					n/a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나. 자녀와의 시간

자녀 돌봄에 있어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관련하여 미취학 및 초등학령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한부모가 초등학령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및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미취학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4.2%이었으며, 기타 구성원이 있는 가구보다 기타 구성원이 없는 가구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라는 응답이 76.9%이며, 평균 2.9시간이었다. 소수이지만 부자+기타 가구에서는 평균 6.4시간이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5〉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미취학 자녀

단위: %(가구), 시간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여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평균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계(수)	
전체	262	14.2	76.9	20.5	2.6	100.0(45)	2.9

(표 Ⅲ-1-5 계속)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여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평균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계(수)	
가구구성							
모자	137	21.8	80.8	19.2	0.0	100.0(29)	2.4
모자+기타	35	0.0	-	-	-	-	-
부자	50	26.2	81.8	18.2	0.0	100.0(13)	2.9
부자+기타	40	5.4	0.0	66.7	33.3	100.0(3)	6.4
$x^2(df)/F$	24.8(3)***		n/a				16.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2	6.3	100.0	0.0	0.0	100.0(2)	2.5
100~200만원 미만	132	11.5	80.0	13.3	6.7	100.0(18)	3.0
200만원 이상	98	19.5	77.3	22.7	0.0	100.0(25)	2.9
$x^2(df)/F$	5.2(2)		n/a				0.1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1$

초등학령기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54.3%로 응답자의 과반수이다. 그 중 기타 구성원이 없는 모자 가구와 부자 가구는 각각 62.6%, 75.0%가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1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초등학령기 자녀가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은 3.3시간이다. 모자+기타 가구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3.8시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그리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에서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Ⅲ-1-6〉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초등학생

단위: %(가구), 시간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여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01	54.3	60.5	38.0	1.5	100.0(448)	3.3
가구구성							
모자	449	62.6	70.1	28.3	1.6	100.0(273)	3.1

(표 Ⅲ-1-6 계속)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여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사례수	있다	1~3시간	4~6시간	7시간 이상	계(수)	평균
모자+기타	88	42.6	37.6	62.4	0.0	100.0(32)	3.8
부자	180	75.0	57.4	39.8	2.8	100.0(125)	3.4
부자+기타	84	25.8	58.8	41.2	0.0	100.0(18)	3.2
$x^2(df)/F$				n/a			5.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5	39.2	72.4	20.7	6.9	100.0(35)	3.3
100~200만원 미만	463	57.2	54.8	43.4	1.8	100.0(269)	3.5
200만원 이상	253	53.3	68.1	31.9	0.0	100.0(144)	3.0
$x^2(df)/F$				n/a			3.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04	55.4	68.4	31.0	0.6	100.0(169)	3.0
5~10년 미만	368	55.3	55.3	43.0	1.7	100.0(208)	3.4
10년 이상	118	47.9	57.6	40.7	1.7	100.0(66)	3.6
$x^2(df)/F$				n/a			4.2*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5$, ** $p < .01$,

2)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및 여가활동

부모가 평소 초등학령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2시간 미만 26.7%, 2시간 이상 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단위: %(가구)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전체	0.7	13.5	34.2	26.7	24.8	100.0(800)

최근 1년 동안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각 활동유형별로 재분석한 결과, 외식을 연간 10.2회 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자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었으며, 쇼핑 5.2회, 운동 및 나들이(등산, 공원 등) 5.1회 정도였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은 평균 0.8회로 응답하여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며, 함

께 한 적 없다는 응답이 66.5%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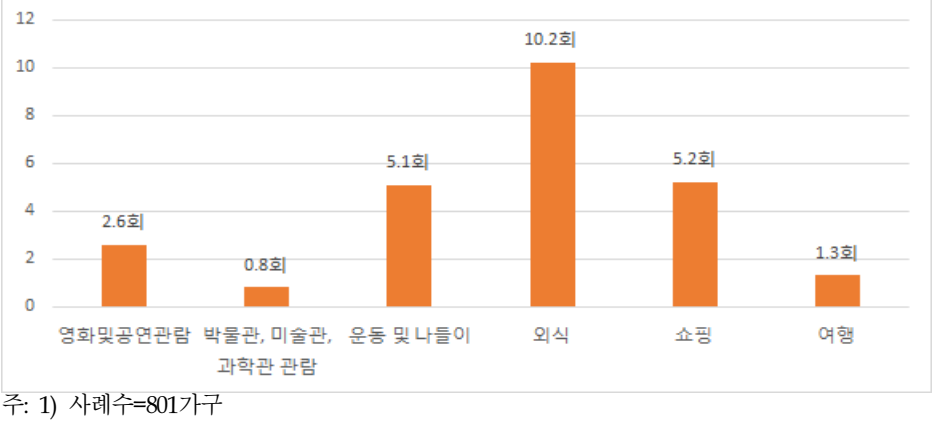

주: 1) 사례수=801가구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1-1〕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연간 평균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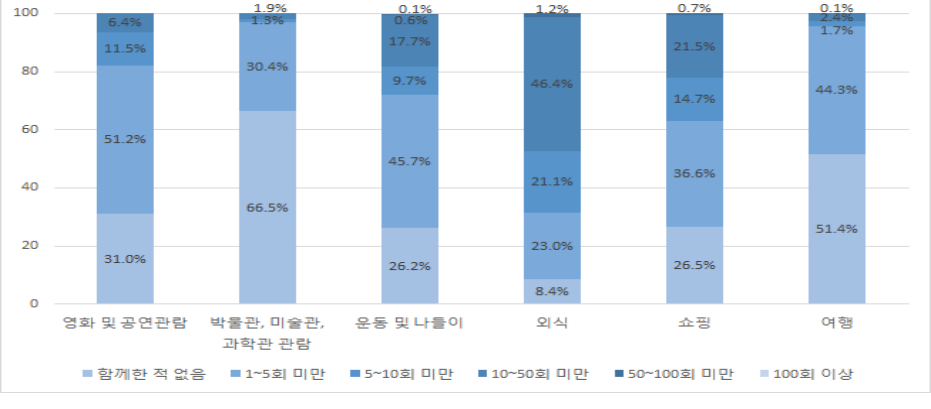

주: 1) 사례수=801가구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1-2〕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이상에서 살펴본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 시간과 관련하여 특히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즉, 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해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한부모는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있어 역할과부하를 경험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정옥분·정순화, 2016: 198). 이영호(2015: 158)는 이에 대해 한부모가 경험하는 '시간 빈곤'이라 지칭하면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한부모들이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에 시간을 보낸 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자녀양육의 어려움

먼저,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을 재분석한 결과이다. 7개 항목 모두 응답자의 과반수가 어려움이 있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양육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75.5%), 자녀양육 스트레스(67.1%),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66.8%) 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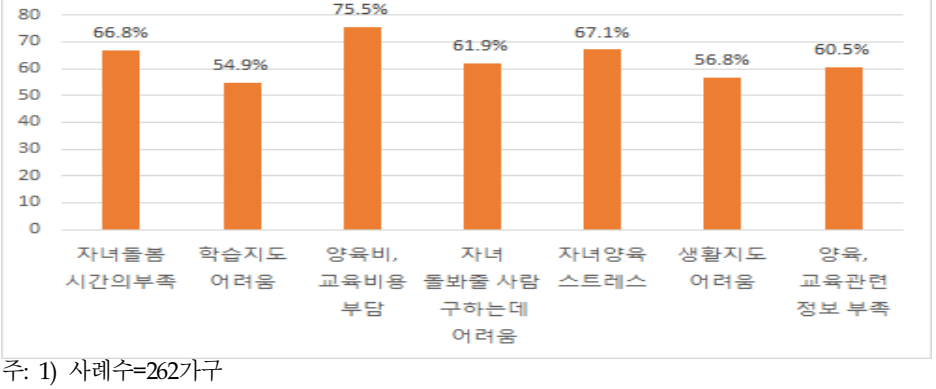

주: 1) 사례수=262가구
2) 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
3)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1-3〕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구특성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만 살펴보면, 첫째, 자녀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가구 구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모자 가구보다는 부자 가구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기타 구성원이 없는 경우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표 Ⅲ-1-8참조).

〈표 Ⅲ-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돌봄시간 부족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7.9	25.4	45.0	21.8	100.0(262)
가구구성					
모자	10.9	26.9	37.0	25.2	100.0(137)
모자+기타	9.4	29.7	42.2	18.8	100.0(35)
부자	4.8	4.8	64.3	26.2	100.0(50)
부자+기타	1.8	32.1	50.0	16.1	100.0(40)
$x^2(df)$		21.1(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5.0	25.0	40.6	9.4	100.0(32)
100~200만원 미만	9.2	30.5	40.5	19.8	100.0(132)
200만원 이상	1.7	19.5	51.7	27.1	100.0(98)
$x^2(df)$		27.0(6)***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둘째,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은 부자 가구에 비해 모자 가구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Ⅲ-1-9〉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5.0	19.6	38.8	36.7	100.0(262)
가구구성					
모자	5.9	16.0	33.6	44.5	100.0(137)
모자+기타	4.7	10.9	29.7	54.7	100.0(35)
부자	0.0	14.6	65.9	19.5	100.0(50)
부자+기타	5.4	42.9	41.1	10.7	100.0(40)
$x^2(df)$		52.5(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5	12.9	41.9	38.7	100.0 (32)
100~200만원 미만	5.4	7.7	33.8	53.1	100.0 (132)

(표 Ⅲ-1-9 계속)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200만원 이상	3.4	34.7	43.2	18.6	100.0 (98)
$x^2(df)$		45.9(6)***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01$

셋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은 가구 구성에 있어 예상할 수 있듯이 기타 구성원이 없는 가구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또한 이혼 가구보다 사별 가구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표 Ⅲ-1-10〉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12.1	26.0	37.0	24.9	100.0(262)
가구구성					
모자	7.5	18.3	39.2	35.0	100.0(137)
모자+기타	15.6	46.9	25.0	12.5	100.0(35)
부자	14.3	9.5	45.2	31.0	100.0(50)
부자+기타	16.1	32.1	39.3	12.5	100.0(40)
$x^2(df)$		38.6(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5.0	31.3	25.0	18.8	100.0(32)
100~200만원 미만	12.2	16.8	38.2	32.8	100.0(132)
200만원 이상	7.6	35.6	39.0	17.8	100.0(98)
$x^2(df)$		22.8(6)**			
혼인 상태					
이혼	13.4	26.8	37.8	22.0	100.0(237)
사별	0.0	19.2	30.8	50.0	100.0(25)
$x^2(df)$		11.8(3)**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초등학령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살펴보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79.7%).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은 66.9%,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 부족은 58.1%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육과 진로지도에 있어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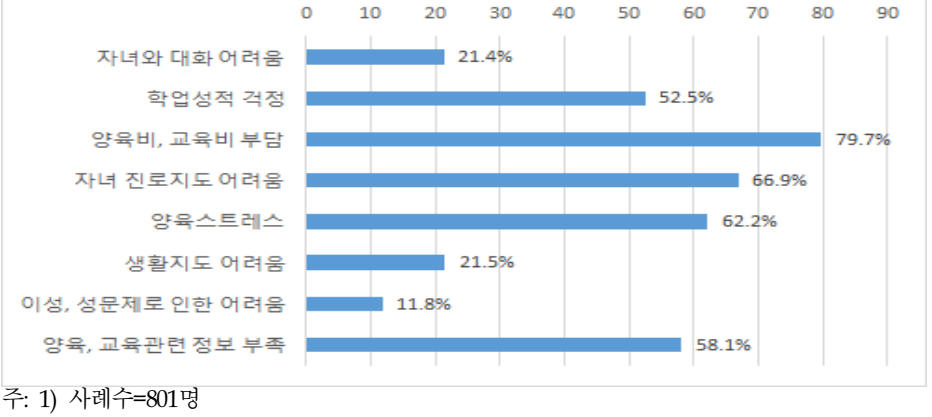

주: 1) 사례수=801명
2) 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
3)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자녀양육 어려움에서 가구특성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와의 대화에서의 어려움은 모자 가구에 비해 부자 가구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다.

〈표 Ⅲ-1-11〉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와 대화 어려움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28.6	49.9	18.3	3.1	100.0(801)
가구구성					
모자	29.7	50.3	17.9	2.1	100.0(449)
모자+기타	35.1	46.5	13.9	4.5	100.0(88)
부자	18.1	57.6	21.5	2.8	100.0(180)

(표 Ⅲ-1-11 계속)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부자+기타	27.3	45.5	23.5	3.8	100.0(84)
$x^2(df)$		19.4(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5.7	41.9	25.7	6.8	100.0(85)
100~200만원 미만	29.4	51.2	18.0	1.4	100.0(463)
200만원 이상	28.3	50.0	16.8	4.9	100.0(253)
$x^2(df)$		15.0(6)*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둘째,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자 가구보다 모자 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Ⅲ-1-12〉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6.8	13.5	34.8	44.9	100.0(801)
가구구성					
모자	6.4	10.3	34.9	48.5	100.0(449)
모자+기타	3.5	9.0	32.3	55.2	100.0(88)
부자	5.6	27.1	34.7	32.6	100.0(180)
부자+기타	14.3	15.0	38.3	32.3	100.0(84)
$x^2(df)$		56.9(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8	12.2	28.4	52.7	100.0(85)
100~200만원 미만	4.7	10.8	34.6	49.9	100.0(463)
200만원 이상	10.5	18.0	36.4	35.1	100.0(253)
$x^2(df)$		28.0(6)***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01$

셋째, 양육 스트레스는 이혼 가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사별 가구에 비해 더 많아서 이혼 가구 내에서 자녀양육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좀 더 다양함을 유추할 수 있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부자+기타 가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표 Ⅲ-1-13〉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9.1	28.7	43.5	18.7	100.0(801)
혼인 상태					
이혼	9.9	28.2	42.0	19.8	100.0(696)
사별	4.1	31.4	52.9	11.6	100.0(105)
$x^2(df)$		10.8(3)*			
가구구성					
모자	9.7	29.9	44.2	16.1	100.0(449)
모자+기타	5.5	29.9	41.3	23.4	100.0(88)
부자	6.3	25.7	49.3	18.8	100.0(180)
부자+기타	15.9	26.5	38.6	18.9	100.0(84)
$x^2(df)$		17.9(9)*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넷째, 생활지도 어려움은 모자 가구 혹은 모자+기타구성원 가구에 비해 부자 가구 및 부자+기타구성원 가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Ⅲ-1-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생활지도 어려움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56.0	22.6	17.0	4.5	100.0(801)
가구구성					
모자	57.5	22.5	15.3	4.6	100.0(449)
모자+기타	61.9	18.3	13.4	6.4	100.0(88)
부자	50.3	24.1	20.7	4.8	100.0(180)
부자+기타	48.5	27.3	23.5	0.8	100.0(84)
$x^2(df)$			19.1(9)*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다섯째, 양육이나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모자+기타 가구에서도 약 68.8%로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 가구에서 더 많았다.

〈표 III-1-15〉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14.8	27.1	46.6	11.5	100.0(801)
가구구성					
모자	18.7	34.1	39.2	7.9	100.0(449)
모자+기타	9.4	21.8	57.9	10.9	100.0(88)
부자	11.1	27.1	47.9	13.9	100.0(180)
부자+기타	15.2	14.4	50.0	20.5	100.0(84)
$x^2(df)$		51.1(9)***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01$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응집력이 크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부와 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한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이순형 외, 2015: 371). 이는 가정에 한부모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한부모가 취업도 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피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이순형 외, 2015: 371). 김연우(2012: 55)에 따르면, 한부모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 중에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자녀와 공유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또한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또한 한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 자녀가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김연우, 2012: 56-57).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가족 부양, 자녀 양육 및 학부모로서의 역할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서현석·진미정·도유록, 2014: 191-192). 한부모 중에서도 취업 중인 경우 학부모로서 학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서현석 외, 2014: 193).

한편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부모들은 비교적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부모역할이 부족한 영역으로는 경제적 지원의 부족, 정서적 지지의 부족, 그리고 배우자(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한 성역할 모델링의 부족 등을 꼽았다.

2.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이 절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한부모임을 밝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으로서 경험한 부당한 일이나 차별,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등을 살펴보았다.

가. 한부모 공개 여부 및 차별경험

먼저, 본인이나 자녀가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응답은 [그림 Ⅲ-2-1]과 같이 나타났다. 동네나 이웃주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응답이 본인 14.5%, 자녀 12.5%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본인은 직장에서 9.2%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약 5%, 가족이나 친척에게는 약 3% 이상이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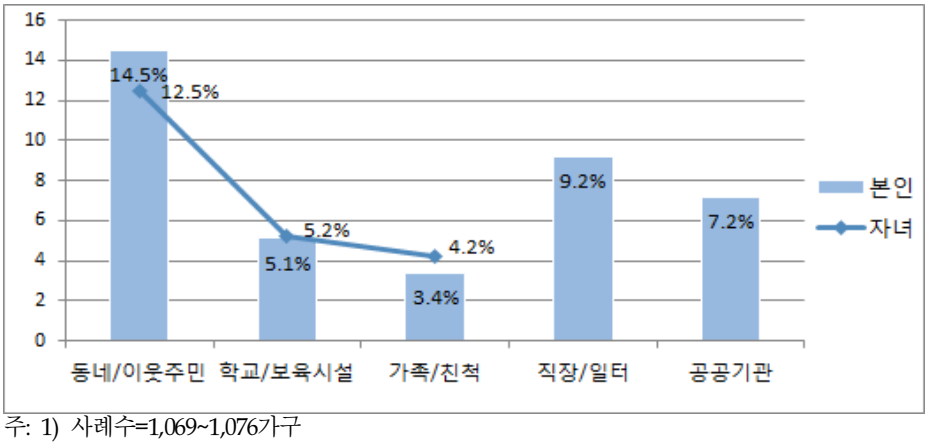

주: 1) 사례수=1,069~1,076가구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2-1〕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

부모 본인이나 자녀가 평소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4점 척도에서 약 1.6~1.7점의 범위로 응답하여 차별을 받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특성 변인 중 자녀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 정도가 다소 높았다.

〈표 III-2-1〉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정도

단위: 점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일터	공공기관
	본인	자녀	본인	자녀	본인	자녀	본인	본인
전체	1.7	1.7	1.7	1.7	1.6	1.6	1.6	1.6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6	1.5	1,6	1.5	1.6	1.5	1.6	1.5
초등학생	1.7	1.8	1.7	1.8	1.6	1.6	1.6	1.6
$x^2(df)/F$	5.6*	15.4***	2.2	23.9***	2.5	5.4*	1.0	8.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8	1.7	1.8	1.7	1.8	1.6	1.6	1.7
100~200만원 미만	1.6	1.7	1.7	1.8	1.6	1.5	1.6	1.6
200만원 이상	1.7	1.7	1.7	1.6	1.7	1.6	1.6	1.6
$x^2(df)/F$	1.9	0.2	1.3	4.9**	2.7	1.3	0.5	1.6

주: 1) 4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경험 정도가 높음.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3) 평균은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한부모가 된 후 변화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으로는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어려움(83.9%)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집안일의 부담 증가(75.7%),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75.0%), 경제적 어려움(69.3%)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였다. 한편 자녀와 긴밀해졌다는 응답은 50.7%이었다(그림 III-2-2참조).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 가구특성 변인별로 살펴보면(표 III-2-2 참조), 혼인 상태, 자녀 연령, 한부모가 된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구 구성에 있어 부자 가구보다는 모자 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 부모역할이나 집안일, 미래에 대한 부담도 더 크게 경험하는 반면 자녀와 긴밀해지거나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응답도 좀 더 많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경험을 많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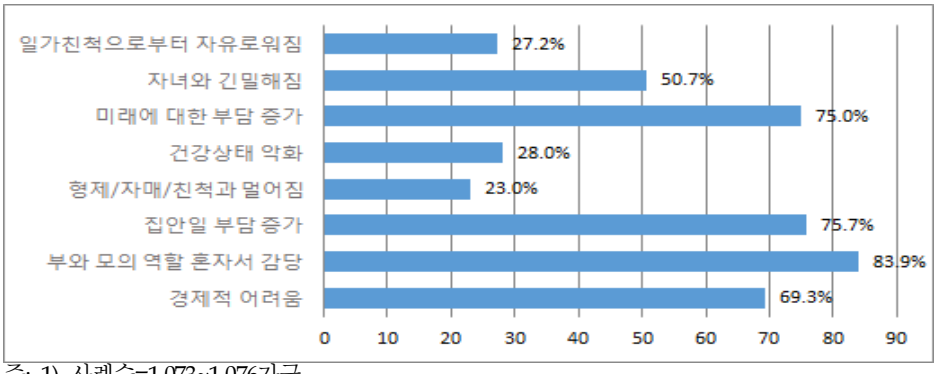

주: 1) 사례수=1,073~1,076가구
2) 다소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
3)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표 Ⅲ-2-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단위: 점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집안일 부담 증가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 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증가	자녀와 긴밀 해짐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
전체	3.8	4.2	4.0	2.6	2.8	4.0	3.5	3.0
혼인 상태								
이혼	3.8	4.1	4.0	2.6	2.8	3.9	3.5	3.5
사별	4.0	4.3	4.1	2.6	2.8	4.2	3.5	3.5
$x^2(df)/t$	2.5	2.8	3.6	0.1	0.0	8.0**	0.3	0.3
가구구성								
모자	4.1	4.1	4.0	2.6	2.8	4.0	3.6	3.6
모자+기타	4.1	4.2	4.0	2.5	3.0	4.1	3.5	3.5
부자	3.5	4.2	4.2	2.6	2.9	3.9	3.4	3.4
부자+기타	3.1	4.1	3.7	2.7	2.6	3.7	3.3	3.3
$x^2(df)/F$	49.7***	1.3	7.6***	0.5	4.5**	8.2***	5.5**	5.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7	4.1	3.8	2.6	2.7	3.9	3.6	3.6
초등학생	3.9	4.2	4.1	2.6	2.9	4.1	3.4	3.5
$x^2(df)/F$	4.2*	4.9*	11.8**	0.2	6.0*	4.9*	5.7*	5.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0	4.3	4.1	2.8	3.2	4.2	3.4	3.4
100~200만원 미만	4.1	4.2	4.2	2.6	3.0	4.1	3.5	3.5
200만원 이상	3.4	4.0	3.7	2.6	2.5	3.7	3.5	3.5
$x^2(df)/F$	54.4***	8.5***	29.7***	1.2	24.7***	25.5***	0.3	0.3

(표 Ⅲ-2-2 계속)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집안일 부담 증가	형제/자매 /친척과 멀어짐	건강 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증가	자녀와 긴밀 해짐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짐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8	4.1	3.9	2.6	2.8	3.9	3.6	3.6
5~10년 미만	3.8	4.2	4.1	2.6	2.8	4.0	3.4	3.4
10년 이상	4.0	4.3	4.1	2.6	3.1	4.3	3.4	3.4
$x^2(df)/F$	3.3*	1.9	3.7*	0.3	3.5*	7.6**	3.4*	3.4*

주: 1) 5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음.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같은 한부모 가족으로의 변화로 인한 한부모의 경험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한부모의 역할과부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경제적 어려움 증대, 신체적·정서적 문제 경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부모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의 재정, 주택, 가사일 관리 등을 모두 도맡아야 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도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역할과부하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전에 부부간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남성 한부모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Hamner & Turner, 2001, 정옥분·정순화, 2016: 193에서 재인용).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는 양육자, 부양자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기도 한다(서현석 외, 2014: 191).

둘째,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한부모는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오던 친족 혹은 친구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전배우자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도 한다(박성연 외, 2009: 240; 정옥분·정순화, 2016: 193-194).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3절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셋째,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한부모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부모는 취업을 하면서도 자녀 돌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직 혹은 일용직에 종사하여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장명선, 2016: 4). 특히 저소득층이나 모자가구의 경우 그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혼한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손서희(2013: 72)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해야 하는 시도를 하면서 일-가

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한된 직업군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한편 모자가족에서 부의 부재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는 그 영향이 경감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정옥분·정순화, 2016: 193)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은 부모-자녀 관계 향상이나 자녀의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부모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사로 인한 역할 과중과 스트레스는 건강문제로 이어지며(장명선·이영호, 2016: 142), 위에서 언급한 한부모로서의 역할 부담,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 무력감,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정옥분·정순화, 2016: 194). 또한 문성희·이대균(2011: 323)의 연구에서 한부모는 한부모가 되었음(배우자와 헤어진 사실)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면서 상실감이 더 커져가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성연(2004: 160)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다. 자녀의 변화

한부모가족이 된 후 한부모가 느낀 초등학생 자녀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부모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24.6%, 학교성적이 나빠졌다 17.1%, 일상생활 태도가 나빠졌다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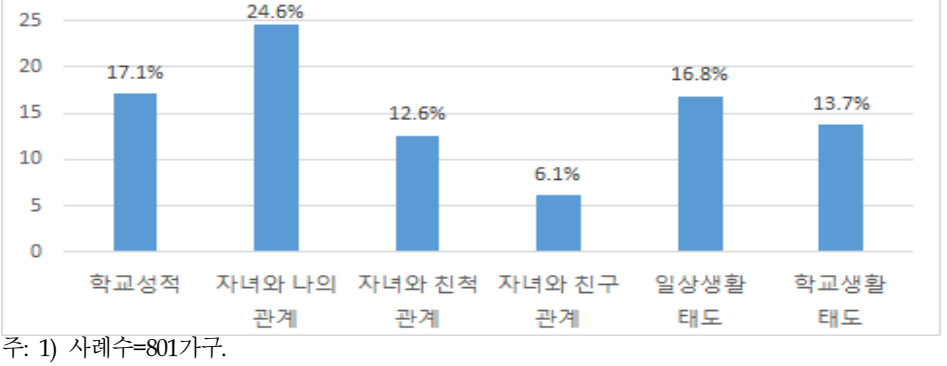

주: 1) 사례수=801가구.
2) 매우 나빠졌다 및 나빠진 편이다 응답 비율의 합.
3)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2-3〕 한부모가 된 후 자녀 변화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 중 한 명의 사망은 자녀의 가족체계를 위협하는 사건이므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박성연 외, 2009: 241). 한부모가족이 된 사건은 부모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 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모가 한부모가 되면서 경험한 갈등이나 불안 등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박성연 외, 2009: 245; 이순형 외, 2015: 372).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애정에 대한 그리움, 돌봄의 손길 부족,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문성희·이대균, 2011: 323-325). 한부모가족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연구한 박진아(2010: 28)는 이혼 한부모가 양육 중인 유아기 자녀가 전배우자와 만나지 않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한부모가 자녀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만 하면 자녀가 더 큰 분노를 경험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박진아, 2010: 29). 하지만 부모의 계속되는 갈등과 혼란이나 억압을 야기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보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더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etherington, Stanley-Hogan, & Anderson, 1989, 박성연 외, 2009, 237에서 재인용).

한편 한부모가족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자아존중감 등의 부모 자신의 삶의 태도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또한 자녀양육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변인이다(정옥분·정순화, 2016: 195-200).

3.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이 절에서는 한부모의 활동 시간, 사회적 지지망, 그리고 그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 제시하였다.

가. 한부모의 활동 시간

한부모의 활동 시간 중 일하는 시간과 가족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에는

평균 8.5시간 동안 일을 하고 2.5시간 동안 가족을 돌본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하는 시간은 각각 5.3시간, 1.6시간으로 줄어들고, 돌봄 시간은 3.4시간, 4.3시간으로 증가한다. 부자 가구보다는 모자 가구에서 돌봄 시간이 최대 1시간 정도 길게 나타나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혹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돌봄 시간은 비교적 길다(표 Ⅲ-3-1 참조).

〈표 Ⅲ-3-1〉 활동 시간

단위: 시간, 가구

	평일		토요일		일요일		수
	일하는 시간	돌봄 시간	일하는 시간	돌봄 시간	일하는 시간	돌봄 시간	
전체	8.5	2.5	5.3	3.4	1.6	4.3	1,076
가구구성							
모자	7.9	2.9	4.2	3.9	1.1	4.7	468
모자+기타	8.4	2.6	5.4	3.4	2.0	4.4	250
부자	9.5	1.9	6.9	2.7	2.2	4.0	177
부자+기타	9.3	1.9	6.3	2.5	1.7	3.5	181
F	14.3***	21.5***	17.3***	18.0***	6.8***	10.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9	3.1	4.3	4.3	1.2	5.3	282
초등학생	8.7	2.2	5.7	3.0	1.7	4.0	794
F	10.6**	47.9***	15.9***	41.3***	5.2*	50.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0	3.5	2.1	4.5	0.8	4.7	99
100~200만원 미만	8.4	2.6	5.6	3.4	2.0	4.4	573
200만원 이상	9.5	2.0	5.6	3.0	1.3	4.2	405
F	79.7***	29.3***	24.1***	15.2***	7.3**	1.6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한부모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선행연구(조영희, 2004: 144)에 따르면, 취업 중인 여성 한부모와 양부모가족 모의 생활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하는 시간은 한부모가 더 긴 반면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은 더 짧게 나타났다.

나. 사회적 지지망

한부모의 사회적 지지망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Ⅲ-3-1]에 제시된 다섯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응답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에는 다수가 부모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집안일 22.0%, 돈이 필요할 때 22.2%, 본인이 아플 때 12.0%, 아이가 아플 때 11.6%, 생활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을 때 10.2%가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성희·이대균(2011: 322)은 한부모들은 자신의 변화된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대인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고립감이 심화된다면 무력감과 낮은 자신감,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등을 느끼게 되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또 다른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 2009).

사회적 지지망은 한부모에게 완충제 역할을 하는 주요 요인이며(Tsushima & Gecas, 2001, 이정빈, 2013: 529에서 재인용), 한부모가 건강하게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이정빈, 2013: 529).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예측 가능하고 지지적인 사회적지지 환경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박성연 외, 2009: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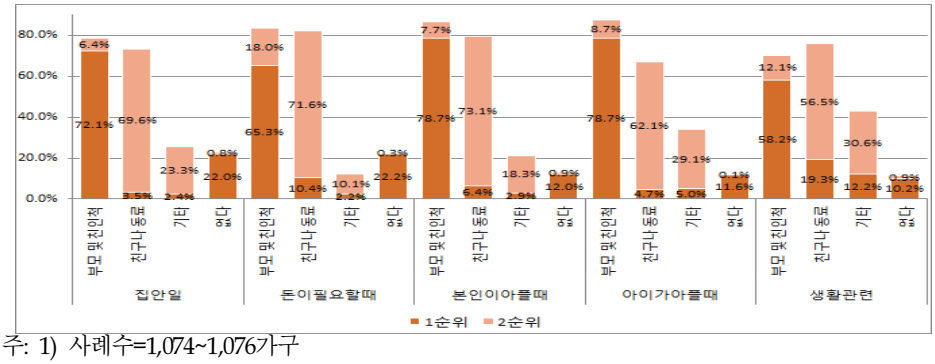

주: 1) 사례수=1,074~1,076가구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3-1〕 사회적 지지망

다. 주거환경

한부모가족의 현재의 주거환경은 어떠한지 재분석한 결과, 약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각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방음상태 좋음,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음 항목에서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이러한 주거환경 각 항목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부표 Ⅲ-3-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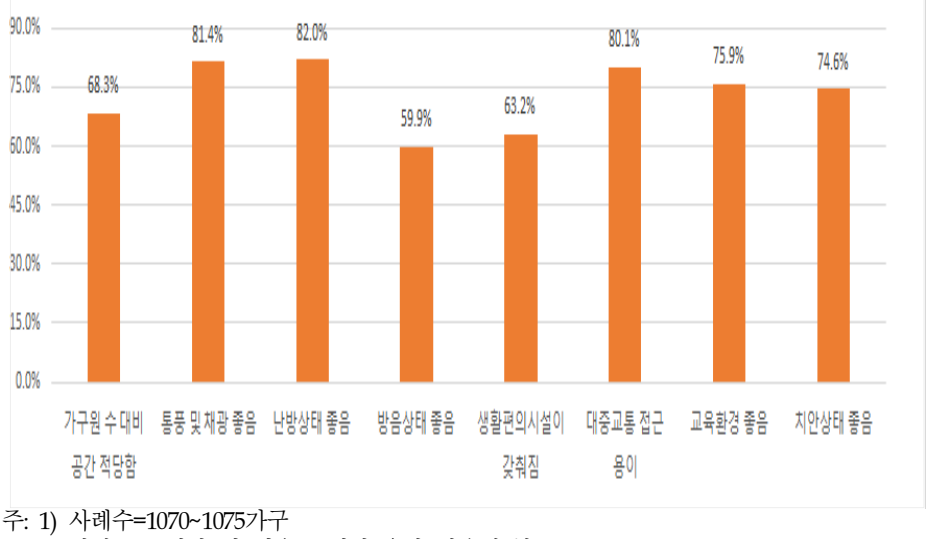

주: 1) 사례수=1070~1075가구
2) 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의 합
3)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3-2〕 주거환경

4. 전배우자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에 해당한다. 자녀가 이혼과정을 인지하는지 여부, 전배우자와 자녀의 연락 방식, 본인과 전배우자와의 연락 방식,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자녀의 수 및 양육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가 이혼과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약 65% 이상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21.0%만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자가구에서

혹은 기타 구성원이 있는 가구에서 자녀가 이혼과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자녀연령이 어린 가구일수록 그리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4-1 참조).

〈표 Ⅲ-4-1〉 자녀의 이혼과정 인지 여부

단위: %(가구)

	전혀 모르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계(수)
전 체	14.9	19.7	44.4	21.0	100.0(936)
가구구성					
모자	13.9	15.7	46.0	24.5	100.0(396)
모자+기타	15.2	22.0	41.3	21.5	100.0(223)
부자	11.4	22.8	45.6	20.3	100.0(158)
부자+기타	20.3	24.1	43.7	12.0	100.0(158)
$x^2(df)$		20.00(9)*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2.4	30.9	32.4	4.3	100.0(256)
초등학생	8.2	15.6	48.8	27.4	100.0(680)
$x^2(df)$		153.47(3)***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1.4	21.7	39.2	17.7	100.0(429)
5~10년 미만	7.7	20.7	48.5	23.2	100.0(392)
10년 이상	15.7	9.3	47.2	27.8	100.0(108)
$x^2(df)$		42.79(6)***			

주: 1) 4점 척도 응답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경험 정도가 높음.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5$, *** $p < .001$

자녀 혹은 본인이 전배우자와의 만남 혹은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재분석한 결과, 자녀가 전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4.9%이나 한부모 본인의 경우는 3.4%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녀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난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본인은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다(그림 Ⅲ-4-1참조).

한편 부자 가구인 경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그리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전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부표 Ⅲ-4-1 참조).

본인의 경우에도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이거나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전배우자와 연락이나 만남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나타났다(부표 Ⅲ-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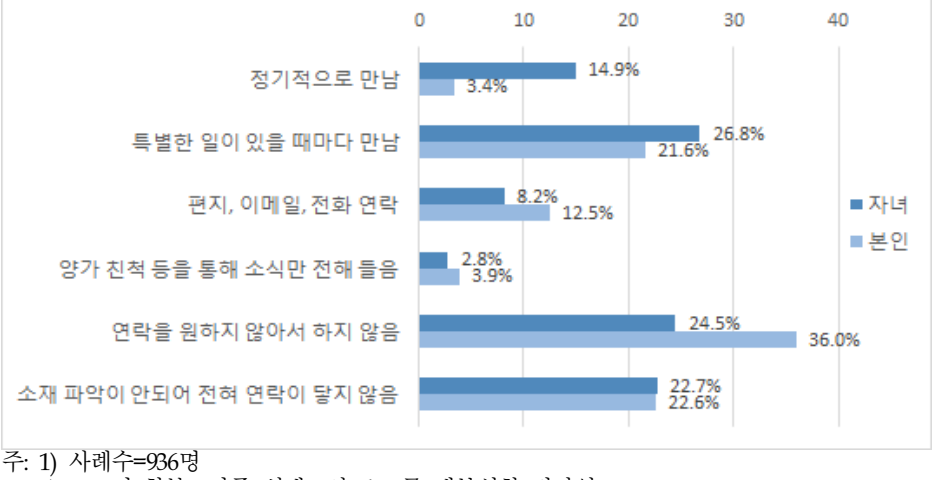

주: 1) 사례수=936명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4-1〕 전배우자와의 연락 방식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9%에 해당하며,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는 1명이 82.9%로 가장 많고, 평균 1.2명이다

〈표 Ⅲ-4-2〉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 수

단위: 가구, %, 명

전배우자 양육 자녀 여부		자녀 수				
사례수	있다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
932	3.9	82.9	15.5	1.6	100.0	1.2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전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는 형태에 대해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응답이 47.9%, 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응답은 25.2%로 나타나 다수가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가구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즉, 최근에 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Ⅲ-4-3 참조).

〈표 Ⅲ-4-3〉 양육비를 받기로 한 형태

단위: %(가구)

	정기 지급	일시 + 정기지급	일시 지급	주고받지 않기로 함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계(수)
전체	24.8	0.5	1.6	47.9	25.2	100.0(936)
가구구성						
모자	32.3	0.8	2.3	39.6	25.0	100.0(396)
모자+기타	35.0	0.4	2.2	42.2	20.2	100.0(223)
부자	11.3	0.0	0.6	53.8	34.4	100.0(160)
부자+기타	5.7	0.0	0.0	70.9	23.4	100.0(158)
$x^2(df)$			n/a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1.8	0.7	1.9	44.4	21.3	100.0(428)
5~10년 미만	18.6	0.3	1.8	51.5	27.8	100.0(392)
10년 이상	20.4	0.0	0.0	48.1	31.5	100.0(108)
$x^2(df)$			n/a			

주: 1)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2)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5. 지원 요구

이 절에서는 한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한부모가 자녀 돌봄에 있어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현재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지원 정보 획득 경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얻는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인터넷/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있었다. 소수의 기타 응답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있었다(그림 Ⅲ-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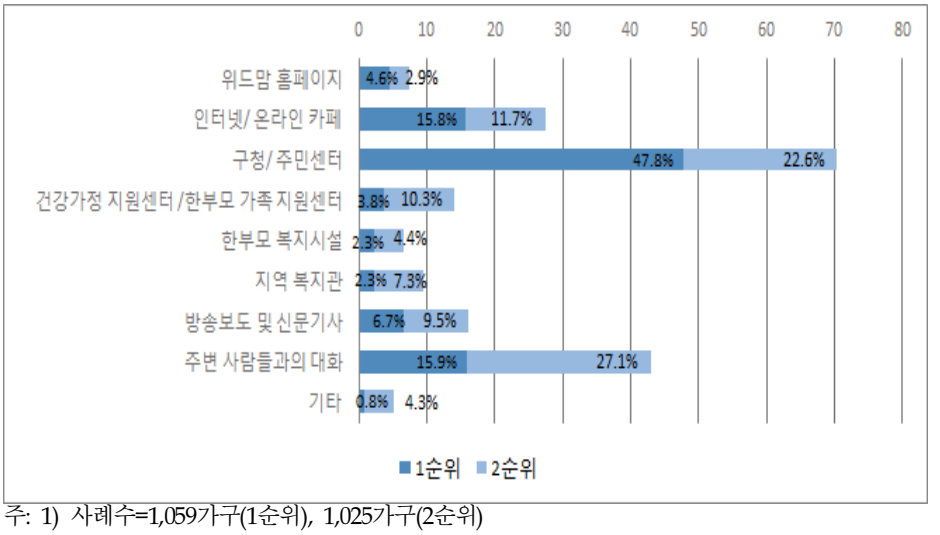

주: 1) 사례수=1,059가구(1순위), 1,025가구(2순위)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5-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획득 경로

나. 지원 요구

자녀 돌봄 시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및 현재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취학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는 야간보육 활성화(44.2%)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22.3%, 무료 식사 제공 13.3% 자녀 배웅 서비스 7.9% 등의 순이었다(그림 Ⅲ-5-2 참조).

초등학령기 자녀의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31.8%),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25.3%), 지역아동센터(21.5%) 등의 활성화를 바란다를 응답이 많았다(그림 Ⅲ-5-3 참조).

다음으로 현재 생활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를 재분석한 결과, 생계비나 양육비 등의 현금지원을 다수가 응답하였으며, 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조모임 등이 있었다(그림 Ⅲ-5-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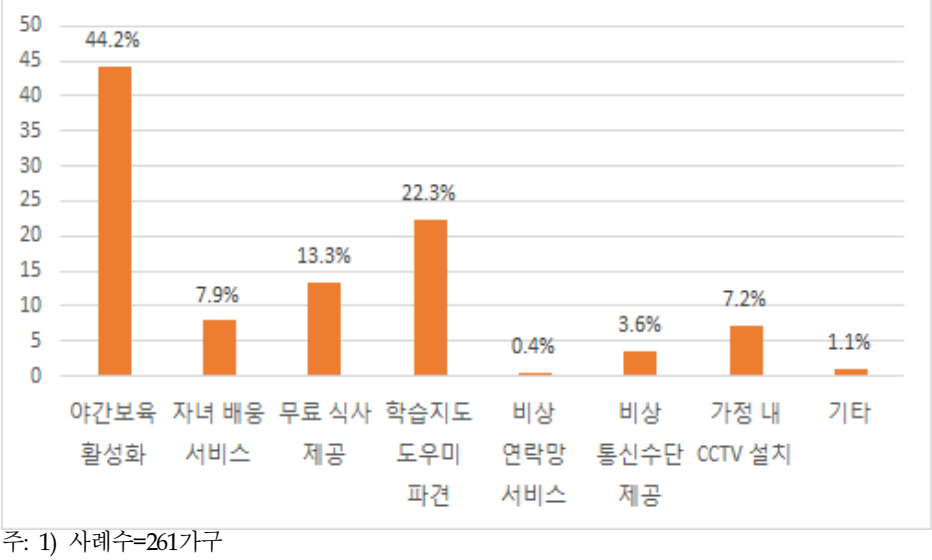

주: 1) 사례수=261가구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5-2〕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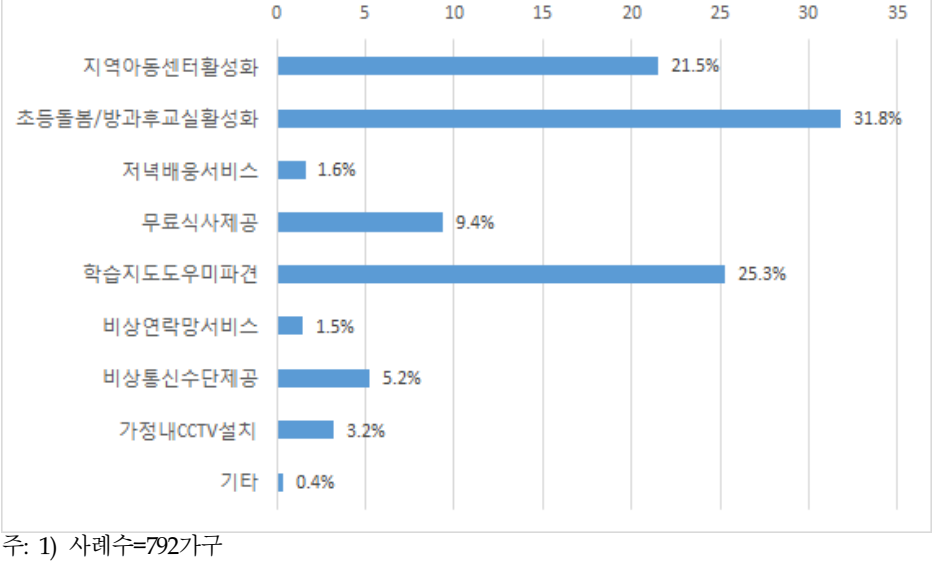

주: 1) 사례수=792가구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5-3〕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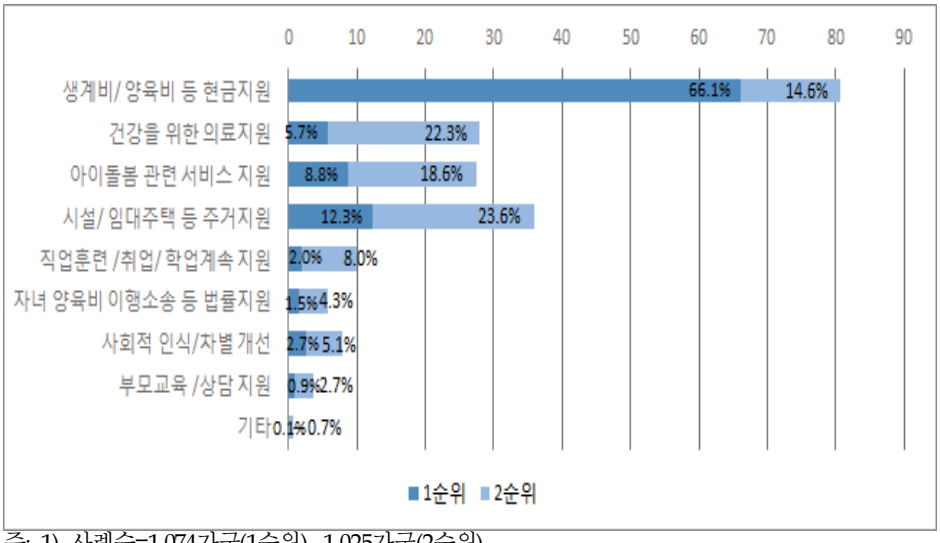

주: 1) 사례수=1,074가구(1순위), 1,025가구(2순위)
2)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그림 Ⅲ-5-4〕 현재 필요한 지원

또한 선행연구인 문무경 외(2016)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등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원하였으며, 자조모임에 대한 요구는 여성 한부모에 비해 남성 한부모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6. 소결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재분석하고 한부모가족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전배우자와의 관계, 지원 요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자녀 돌봄에 있어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초등학생 자녀는 방과후 교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자가구, 기타구성원이 없는 가구(부

자 혹은 모자로만 이루어진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미취학 자녀는 14.2%, 초등학생 자녀는 54.3%이었으며, 부모가 평소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부모는 자녀양육 시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모자가구보다는 부자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았다. 자녀 돌봄 시간의 선택은 노동시간과 연결되어 있어 자녀양육에서의 이슈만으로 그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 연령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훈육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자녀가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에 있어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한 정도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즉,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미취학 자녀인 경우보다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차별을 경험한다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자녀의 사회적 경험이 많아지거나 생활 영역이 넓어질수록 주변인에게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정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에서 차별을 경험한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한부모가 된 후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어려움, 집안일의 부담 증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한부모는 부와 모가 함께 수행하는 부모역할이나 가사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큼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한부모의 한부모로서의 경험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다.

셋째, 한부모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부모는 평일과 토요일에 가족을 돌보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더 길다. 다수의 한부모들은 도움

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도 약 10~23% 정도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한편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이혼 가구의 경우 전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자녀가 이혼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1.0%, 자녀가 전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4.9%, 한부모 본인의 경우는 3.4%에 불과하였다. 또한 다수가 전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가구에서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한부모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얻고 있었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는 야간보육(미취학 자녀)이나 초등돌봄·방과후 교실(초등학생 자녀)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현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계비나 양육비 등의 현금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탄력근무제 등의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이나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Ⅳ.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및 지원 요구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족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현황과 한부모 지원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17사례의 한부모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특성 즉, 자녀연령, 가구구성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응답자 특성

가. 설문조사 응답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한부모의 연령은 30~40대가 대부분이며,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및 4년제 대졸이 각각 약 30% 정도이었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78.8%이었으며, 주당 41~50시간 근무하거나(32.4%), 1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24.1%)가 많았다. 미취업의 주된 이유는 가사·육아(42.6%), 구직활동(29.5%)의 영향 이었다(표 Ⅳ-1-3 참조).

〈표 Ⅳ-1-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비율	(수)
전체		100.0	(400)
연령	20대	3.3	(13)
	30대	40.5	(162)
	40대	50.8	(203)
	50대 이상	5.5	(22)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8	(127)
	2,3년제 대졸	30.3	(121)
	4년제 대졸	30.5	(122)
	대학원 이상	7.5	(30)
취업상태	취업	78.8	(315)
	휴직	6.0	(24)
	미취업	15.3	(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응답자 중 이혼 가구는 88.3%, 사별 가구는 11.8%이었다. 가구원 수는 2명인 경우가 64.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부자가구는 8.0%, 모자가구는 56.5%, 그 외에는 조부모 혹은 기타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소득 집단은 20% 내외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체 가구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이 80%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6.8%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54.8%이며, 동거 중인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영아기는 11.8%, 유아기는 24.5%, 초등 저학년은 30.5%, 초등 고학년은 33.3%이었다.

〈표 Ⅳ-1-2〉 가구 특성

단위: %(명)

구 분		비율	(수)	구 분		비율	(수)
전체		100.0	(400)	전체		100.0	(400)
한부모 유형	이혼	88.3	(353)	가구 구성원	(한)조부모+부+자녀	11.3	(45)
	사별	11.8	(47)		(한)조부모+모+자녀	17.8	(71)
한부모 기간	0~2년	30.0	(120)		부+자녀	8.0	(32)
	3~5년	32.0	(128)		모+자녀	56.5	(226)
	6~8년	27.0	(108)		부+자녀+기타	2.0	(8)
	9년 이상	11.0	(44)		모+자녀+기타	4.5	(18)
가구원 수	2명	64.5	(258)	최연소 동거자녀 연령	초등 고학년	33.3	(133)
	3명	9.0	(36)		초등 저학년	30.5	(122)
	4명	17.0	(68)		유아기	24.5	(98)
	4명 이상	9.5	(38)		영아기	11.8	(47)
자녀수	1명	54.8	(219)	최연소 동거자녀 성별	남아	52.0	(208)
	2명	33.8	(135)		여아	48.0	(192)
	3명 이상	11.5	(4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9.5	(78)	전체 가구소득 대비 본인소득	20% 미만	7.5	(30)
	100~200만원	39.8	(159)		20%~40%미만	8.0	(32)
	200~300만원	20.3	(81)		40%~60%미만	11.5	(46)
	300만원 이상	20.5	(82)		60%~80%미만	6.3	(25)
					80% 이상	66.8	(267)

주: 가구구성원의 '기타'에는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Ⅳ-1-3〉 근로시간 및 미취업 이유

단위: %(명)

(취업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 중) 미취업 이유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315)	전체	100.0	(61)
10시간 이하	24.1	(76)	구직활동 중	29.5	(18)
11~20시간	9.2	(29)	가사·육아	42.6	(26)
21~30시간	3.5	(11)	학업	1.6	(1)
31~40시간	19.4	(61)	심신장애	19.7	(12)
41~50시간	32.4	(102)	구직을 위한 교육 중	6.6	(4)
51시간 이상	11.4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면담참여자

면담참여자들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이혼 가구 82.4%, 사별 가구 11.8%이었으며, 가구원수는 2~3명인 사례가 약 76.5%, 자녀수는 2명인 사례가 58.8%이었다. 비교적 가구소득이 낮은 한부모가구가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한부모 자신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100%를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4〉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7)	전체		100.0	(17)
결혼상태	이혼	82.4	(14)	가구 구성원	(한)조부모+부+자녀	5.9	(1)
	사별	11.8	(2)		(한)조부모+모+자녀	5.9	(1)
	기타	5.9	(1)		부+자녀	17.6	(3)
총 자녀수	1명	35.3	(6)		모+자녀	64.7	(11)
	2명	58.8	(10)		기타	5.9	(1)
	3명	5.9	(1)	본인 소득 비율	0%	17.6	(3)
가구원수	2명	29.4	(5)		1~50%	11.8	(2)
	3명	47.1	(8)		51~99%	5.9	(1)
	4명	17.6	(3)		100%	58.8	(10)
	5명	5.9	(1)		무응답	5.9	(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3.5	(4)				
	100~200만원 미만	64.7	(11)				
	200~300만원 미만	11.8	(2)				

주: 가구구성원의 '기타'에는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포함됨.

면담에는 남성 한부모 5명, 여성 한부모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다수가 학력은 고졸 이하이며, 현재 취업 중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모든 자녀와 동거 중이었으며(이혼의 경우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 없음), 그 외의 자녀 특성은 <표 Ⅳ-1-6>과 같다.

〈표 Ⅳ-1-5〉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부모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100.0	(5)	100.0	(12)
연령	20대	-	-	8.3	(1)
	30대	-	-	25.0	(3)
	40대	60.0	(3)	66.7	(8)
	50대 이상	40.0	(2)	-	-
교육수준	고졸이하	80.0	(4)	66.7	(8)
	2-3년제 대졸	20.0	(1)	25.0	(3)
	4년제 대졸	-	-	8.3	(1)
취업상태	취업 중	80.0	(4)	75.0	(9)
	미취업	20.0	(1)	25.0	(3)

〈표 Ⅳ-1-6〉 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자녀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29)	전체		100.0	(29)
성별	남	41.4	(12)	형제순위	첫째	58.6	(17)
	여	58.6	(17)		둘째	37.9	(11)
연령	영유아기	20.7	(6)		셋째	3.4	(1)
	초등	58.6	(17)	교육기관	유치원	6.9	(2)
	중고등	13.8	(4)		어린이집	13.8	(4)
	성인	6.9	(2)		초등학교	58.6	(17)
동거여부	같이 살고 있음	100.0	(29)		중학교	13.8	(4)
	같이 살지 않음	-	-		기타	3.4	(1)
건강이상 여부	건강이상 있음	-	-		안다님	3.4	(1)
	건강이상 없음	100.0	(29)				

주: 면담참여자(양육중인 최연소 자녀가 영유아기 혹은 초등학령기인 한부모)가 응답한 모든 자녀 특성을 포함함.

면담 사례 중 이혼가구의 경우,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는 배우자의 소비 성향

이나 경제적 무능력, 과도한 빚 발생 등의 경제적인 상황, 가정폭력, 외도 등으로 사례마다 다양하였다. 그 중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가계 경제의 악화는 실제 가정생활의 영위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것이 반복되거나 연속되다보니 이혼을 결정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또 역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게 하려고 이혼을 선택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였다.

2. 자녀양육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의 기관 이용,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모의 양육특성, 이혼가구의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기관 이용

자녀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본교육·보육과정 외에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추가로 이용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22.5%이며, 50.3%의 절반가량은 학원 등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초등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약 46.3%), 지역아동센터(9.5%),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8.3%) 등의 순으로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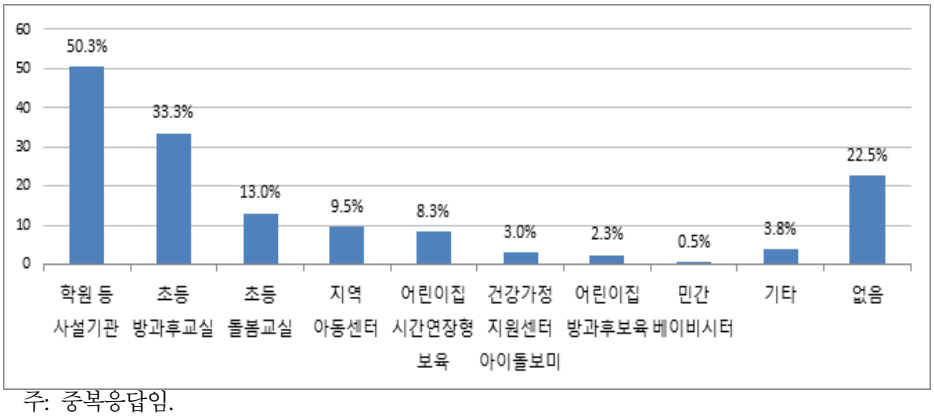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 기본교육·보육과정 외 이용기관

한편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인 90.9%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야간 보육 6.1%, 24시간 보육 3.0%, 휴일 보육을 9.1%가 이용하고 있었다(부표 Ⅳ-2-1 참조).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시설별로 이용 이유가 상이하였으나 대부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거나 아이의 학습이나 특기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81.8%), 초등돌봄교실(76.9%), 지역아동센터(65.8%),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58.3%),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55.6%), 민간베이비시터(50.0%)는 아이 돌봄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초등방과후교실(56.4%) 또는 학원과 같은 사설 기관(55.7%)은 아이 학습과 특기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이용하는 편이었다. 초등 방과후교실의 경우 기타 응답으로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이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Ⅳ-2-1〉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 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의 학습이나 특기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아이의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계(수)
1)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81.8	9.1	6.1	3.0	0.0	100.0(33)
2)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55.6	0.0	44.4	0.0	0.0	100.0(9)
3)초등방과후교실	21.1	8.3	56.4	12.0	2.3	100.0(133)
4)초등돌봄교실	76.9	5.8	5.8	11.5	0.0	100.0(52)
5)지역아동센터	65.8	2.6	7.9	21.1	2.6	100.0(38)
6)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58.3	16.7	8.3	16.7	0.0	100.0(12)
7)민간베이비시터	50.0	0.0	0.0	50.0	0.0	100.0(2)
8)학원 등 사설기관	18.9	1.0	55.7	23.9	0.5	100.0(201)
9)기타	26.7	0.0	13.3	46.7	13.3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이용기관 만족도를 4점 만점 기준 평정점수로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2.9점), 민간베이비시터(2.5점)을 제외하고 모두 3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Ⅳ-2-2 참조).

특히 어린이집 방과후보육에 대해서는 비록 그 응답 수가 소수이기는 하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M=3.7) 그 만족도가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M=3.0)에 비해 더 높았다(t=3.2, p<.05).

초등방과후교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와 기타 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 등의 프로그램이 3.2점으로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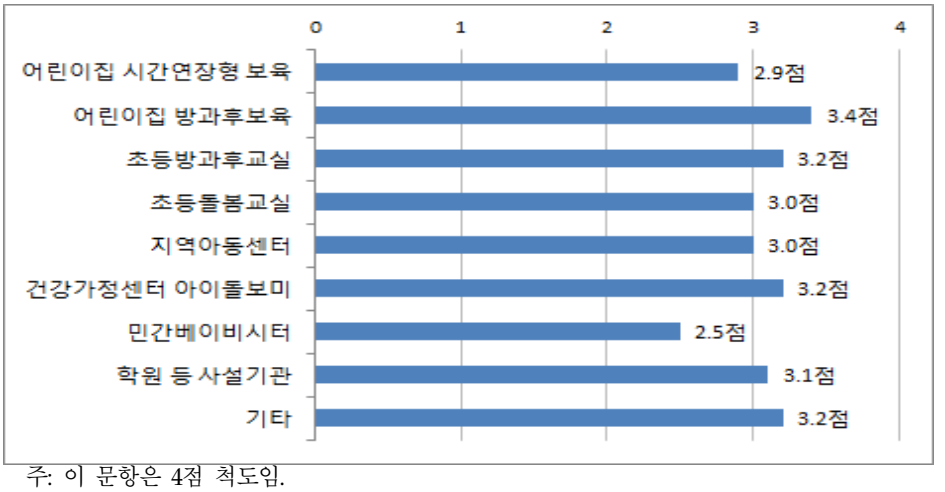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2〕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일 하루 평균 기관 이용 시간은 전체 7.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취업 상태,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따라 기관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가 취업한 경우(8.2시간)에 휴직한 경우(7.3시간)나 미취업한 경우(6.3시간)에 비해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었다. 가구소득이 100~200만원인 가구의 자녀 기관이용시간이 가장 길었으며(8.3시간), 기관이용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7.0시간)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8.1시간)부터 초등학생 자녀와 유사한 시간 동안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Ⅳ-2-2〉 자녀 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 분	4시간 미만	4~6 시간	6~8 시간	8~ 10 시간	10~12 시간	12~15 시간	계(수)	평균
전체	3.3	6.0	28.3	41.8	18.0	2.8	100.0(400)	7.9

(표 Ⅳ-2-2 계속)

구 분	4시간 미만	4~6 시간	6~8 시간	8~ 10 시간	10~12 시간	12~15 시간	계(수)	평균
취업상태								
취업	0.3	5.7	26.0	45.1	20.0	2.9	100.0(315)	8.2
휴직	4.2	12.5	29.2	41.7	12.5	0.0	100.0(24)	7.3
미취업	18.0	4.9	39.3	24.6	9.8	3.3	100.0(61)	6.3
$x^2(df)/F$				n/a				22.1***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0	7.7	32.1	39.7	10.3	1.3	100.0(78)	7.0
100~200만원	2.5	5.7	22.0	40.9	24.5	4.4	100.0(159)	8.3
200~300만원	1.2	4.9	32.1	43.2	18.5	0.0	100.0(81)	7.8
300만원이상	1.2	6.1	32.9	43.9	12.2	3.7	100.0(82)	7.8
$x^2(df)/F$				n/a				6.0***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0.0	2.3	33.1	46.6	17.3	0.8	100.0(133)	8.1
초등 저학년	0.0	11.5	28.7	39.3	18.9	1.6	100.0(122)	7.9
유아기	3.1	5.1	23.5	44.9	19.4	4.1	100.0(98)	8.1
영아기	21.3	4.3	23.4	27.7	14.9	8.5	100.0(47)	6.6
$x^2(df)/F$				n/a				6.8***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자녀 돌봄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평일 4.1시간, 주말 10.5시간으로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2배 이상으로 길었다.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하는 주중과 주말 시간은 부모의 취업상태, 가구소득, 자녀연령, 가족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평일에는 부모가 취업한 경우,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 또한 평일에 자녀와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유형은 부자+기타구성원 가구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평일보다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평일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Ⅳ-2-3〉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단위: 시간, (명)

구 분	평일	*F*	주말	*F*	(수)
전체	4.1		10.5		(400)

(표 Ⅳ-2-3 계속)

구 분	평일	*F*	주말	*F*	(수)
취업상태					
취업	3.6		10.1		(315)
휴직	5.0	38.8***	11.0	7.4***	(24)
미취업	6.3		12.2		(6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6		11.7		(78)
100~200만원	4.0	15.9***	10.7	5.9***	(159)
200~300만원	3.8		9.3		(81)
300만원 이상	3.1		9.8		(82)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5		9.3		(133)
초등 저학년	3.6	22.8***	9.9	12.6***	(122)
유아기	4.4		11.7		(98)
영아기	6.4		12.5		(47)
가구구성					
모자	4.5		11.0		(226)
모자+기타	4.0	9.1***	10.5	7.2***	(89)
부자	3.5		9.7		(32)
부자+기타	2.7		8.3		(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가 일주일동안 어른 없이 지내는 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0.8일로 나타났으며 혼자 지내는 날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76.3%로 가장 많았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른 없이 지내는 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초등 고학년이 일주일에 1.4일 동안 어른 없이 지내고 있는 반면, 유아는 일주일에 0.3일정도 어른 없는 날을 보내고 있어서 그 격차가 컸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른 없이 지내는 날이 길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일주일에 1.5일을 어른 없이 지내고 있었고, 반면 자녀수가 한명인 경우에 일주일에 0.5일 어른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돌보는 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Ⅳ-2-4〉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날

단위: %(명), 일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없음	계(수)	평균 (0일 포함)
전체	6.5	3.5	2.5	1.0	6.3	1.5	2.5	76.3	100.0(400)	0.8

(표 Ⅳ-2-4 계속)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없음	계(수)	평균 (0일 포함)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8.3	5.3	2.3	3.0	15.0	1.5	2.3	62.4	100.0(133)	1.4
초등 저학년	8.2	4.9	4.9	0.0	3.3	1.6	2.5	74.6	100.0(122)	0.8
유아기	4.1	1.0	1.0	0.0	1.0	2.0	1.0	89.8	100.0(98)	0.3
영아기	2.1	0.0	0.0	0.0	0.0	0.0	6.4	91.5	100.0(47)	0.5
$x^2(df)/F$					n/a					7.6***
자녀수										
1명	5.0	1.4	2.3	0.0	2.7	0.9	1.8	85.8	100.0(219)	0.5
2명	6.7	5.9	3.0	0.7	11.9	1.5	3.0	67.4	100.0(135)	1.2
3명 이상	13.0	6.5	2.2	6.5	6.5	4.3	4.3	56.5	100.0(46)	1.5
$x^2(df)/F$					n/a					10.7***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가 하루 평균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하루에 3~4시간 정도 어른 없이 지낸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1~2시간 정도가 26.3%로 뒤를 이었으며, 5시간 이상과 1시간 미만의 경우가 각각 10.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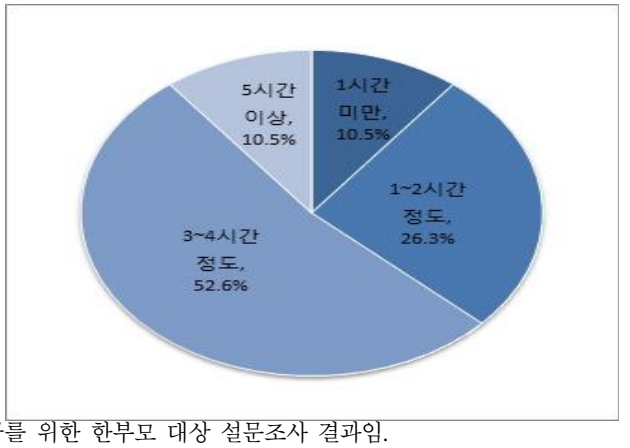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3〕 자녀가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에 주로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살펴본 결과(그림 Ⅳ-2-4), 혼자 있는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형제자매와 지낸다는 경우가 41.1%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어른 대신 서로 돌보는

자가 되어주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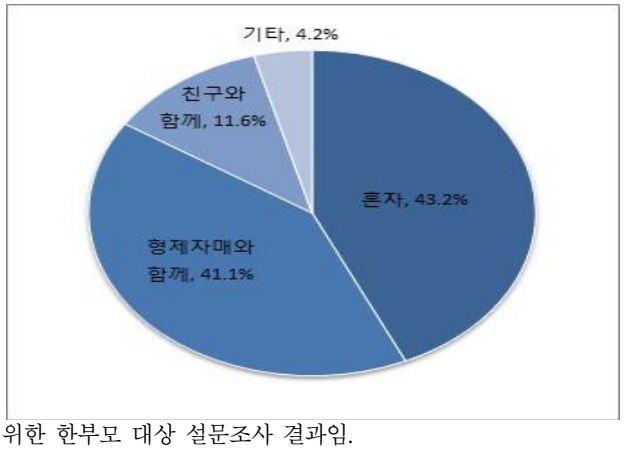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4〕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한 결과, TV를 시청하거나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6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바깥놀이와 실내놀이를 하는 경우는 15.8%, 숙제 등 학습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어른의 모니터링 없이 자녀들이 TV와 미디어에 손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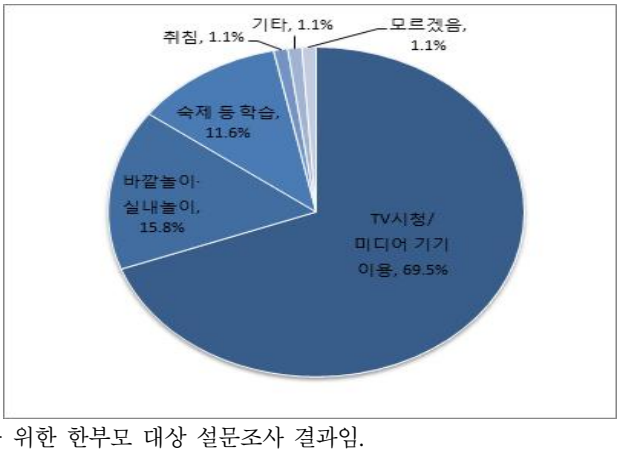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5〕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동안 주로 하는 일

이러한 돌봄 공백의 상황은 심층면담에서도 드러났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니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극히 제한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맡길 기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방치해두기도 하였다. 특히 방학이 되면 돌봄 공백의 문제는 커져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 "빨간 날 우리는 무조건 쉬어야 되고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참여자03)

> "애들이 그 때 초1, 초4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직장을 구하려니까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애들끼리. 그 때가 막 방학할 때쯤이었는데 애들끼리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었죠."(참여자05)

> "근데 지금 방학기간이거든요. 방학인데 지금은 유치원을 가고 31일부터 4일까지 아예 안 가는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7월 20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참여자15)

다. 양육 특성

1) 양육태도 및 효능감

한부모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온정적 양육태도는 3.8점, 통제적 양육태도는 3.5점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또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는 학력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부표 Ⅳ-2-2 참조).

초등학령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은 4점 만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하위영역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교육 참여가 각각 3.2점, 2.7점으로 보고되었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 비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두 하위영역의 점수가 더 높았다(부표 Ⅳ-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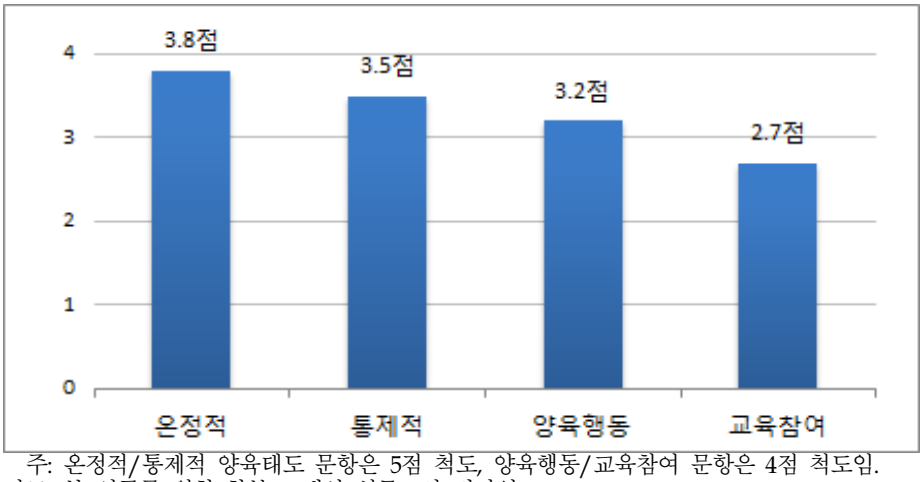

주: 온정적/통제적 양육태도 문항은 5점 척도, 양육행동/교육참여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6〕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태도

한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유능감이 3.1점, 불안감이 3.2점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상의 유능감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양가적 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불안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부표 Ⅳ-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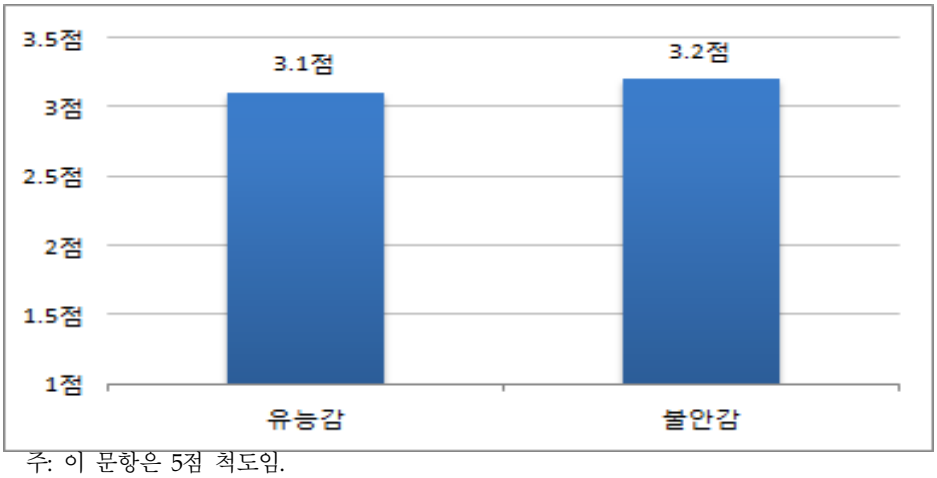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5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7〕 양육 효능감

심층면담에서 한부모들은 살아가는 이유나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자녀에게서 찾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저는 감정이 막 외로운 감정이든지 우는 감정이든지 없어요. 그냥 애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빠 사랑도 못 받았는데 엄마 사랑도 못 받으면 더 불쌍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더라도 엄마 사랑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05)

"애가 먼저지 돈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센터도 다니고 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아이와 같이 하고 여행도 가고 주말마다 같이 돌아다니고…"(참여자 10)

"엄마들 있는 집안보다 내가 뭐 아이들 못 먹이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키운 것도 아니고 못 입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더라도 빚이 쌓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1)

또한 양육에 있어 한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잘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애정적이면서도 아주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자녀 존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이제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비이성적으로 아이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그러거든요. 아빠 없는데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닌가 해서…"(참여자 5)

"나는 계속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확 돌 때가 있어요. 괜히 억울하고. (중략)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엄마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미안해서 막 이렇게 하고…"(참여자 3)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왜 이렇게 힘든 부모 밑에 태어났냐, 이렇게 미안한 감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버릇이 없어지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 버릇을 잡아줘야지 하다가도 한쪽에서 아이들한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했는데 애들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참여자 12)

"처음에 마음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내가 애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왜 애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참여자 3)

즉,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아이가 만약 잘못을 했을 때 한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비난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첫째 자녀들이 어린 연령의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처럼 한부모들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첫째 자녀에게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냥 쌀만 씻어서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거 가르쳐 놓고 (중략) 나 있을 때는 맨날 어리광 피우고 그러던데 둘이 있으면 또 잘하더라고요, 든든해요. (중략) 큰 애한테 많이 의지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보면 좀 속상하죠. 아직 자기도 어린데, 부모한테 의지해야 할 나이인데."(참여자 9)

> "큰 애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도 고맙고, 그래서 큰 애하고는 될 수 있으면 친구처럼 지내려고."(참여자 12)

> "막내가 어리다보니까 제가 큰 애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니가 돌봐야 된다. 그 어린 나이에 10살 때 그걸로 애가 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이 커요."(참여자 11)

2) 양육 부담

한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4점 만점), 경제적 부담이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 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순으로 부담이 낮아졌다.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의 신체적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적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다른 유형의 가족 구성보다 모자가정에서 신체적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 혹은 사별한 부모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속상함, 양육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서적 부담도 높았다. 참고로 정서적 부담은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4.2, p<.01).

친척이나 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한부모만의 고민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고민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모자가정에서 더 많

은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녀 교육비나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정도가 높았고, 취업하였거나 휴직 중인 부모보다 미취업인 경우 더 높았다(F=9.2, p<.001). 또한 모자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어려움은 다른 종류의 부담에 비해 점수가 낮은 편이었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Ⅳ-2-5〉 자녀양육 부담

단위: 점(명)

구 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전체	2.9	3.0	2.8	3.4	2.5	(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3.2	3.0	3.8	2.7	(78)
100~200만원	3.0	3.0	2.9	3.6	2.5	(159)
200~300만원	2.8	2.8	2.7	3.3	2.3	(81)
300만원 이상	2.7	3.0	2.7	2.6	2.3	(82)
F	3.5*	2.6*	2.3	41.7***	2.8*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8	2.7	2.6	3.2	2.4	(133)
초등 저학년	2.8	3.0	2.7	3.3	2.5	(122)
유아기	3.0	3.2	3.1	3.5	2.5	(98)
영아기	3.2	3.3	3.1	3.7	2.5	(47)
F	3.3*	7.3***	6.5***	3.6*	0.9	
가구구성						
모자	3.1	3.1	2.9	3.6	2.5	(226)
모자+기타	2.8	3.0	2.7	3.4	2.4	(89)
부자	2.6	2.8	2.8	3.1	2.4	(32)
부자+기타	2.5	2.8	2.6	2.6	2.3	(53)
F	9.4***	1.7	2.7*	21.3***	0.9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이러한 양육부담은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역할과다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부양의 책임,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 가사노동 등 다중 역할로 인해 심신의 피로감을 느꼈다. 특히 한부모 본인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었다.

"이제 정말 오로지 혼자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내가 일을 쉬면 생계의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중략)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진짜 일의 질이 낮으니까 몸도 많이 망가지고."(참여자01)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이나 아이들 보는 것도 제가 다 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해요."(참여자11)

이러한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자가구나 모자가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었다. 다만, 한부모와 자녀 이외에 다른 가구구성원이 있을 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였는데, 부자가구의 경우 가장 윗세대인 노모를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도 있지만 아이들 음식 챙겨주거나 이런 일상의 가사노동에서는 조금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교육과 관련한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부자가구에서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남성 한부모의 경우 자녀 교육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보통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엄마이므로 엄마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에서 소외되어 정보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단은 양부모 가정은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고 엄마가 집안활동을 하고 교육적인 부분, 학교 수업이라든가 교과서적인 내용 부분들을 지도할 수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못 써줘요."(참여자11)

"근데 교육도 엄마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텐데, 저는 정보들이 좀,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부족하고 여유가 없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참여자08)

3) 자녀양육 정보

자녀양육 시 정보나 도움을 얻는 사람이나 기관을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시 도와주는 사람은 1, 2순위 모두 집안어른이나 형제자매가 가장 높고, 친구나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와 서적, 육아관련 전문가, 각종 센터의 순이었다. 1+2순위 응답을 합하면 집안어른 및 형제자매가 76.0%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녀양육 시 필요한 정보는 1, 2순위 모두 연령별 자녀양육방법, 자녀학습 지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아동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연령별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정보가 55.3%로 높고, 자녀학

습지원 정보(38.8%),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30.6%),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26.1%) 순이다(그림 Ⅳ-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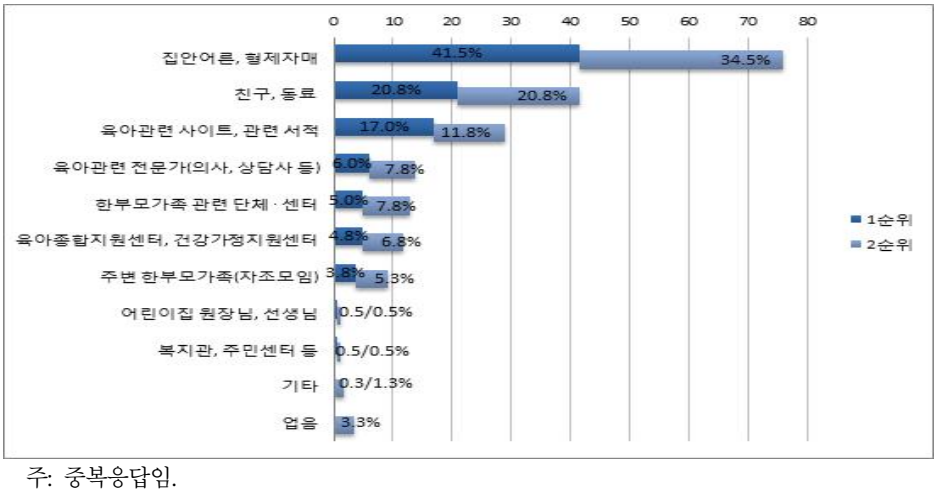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8〕 자녀양육 시 도와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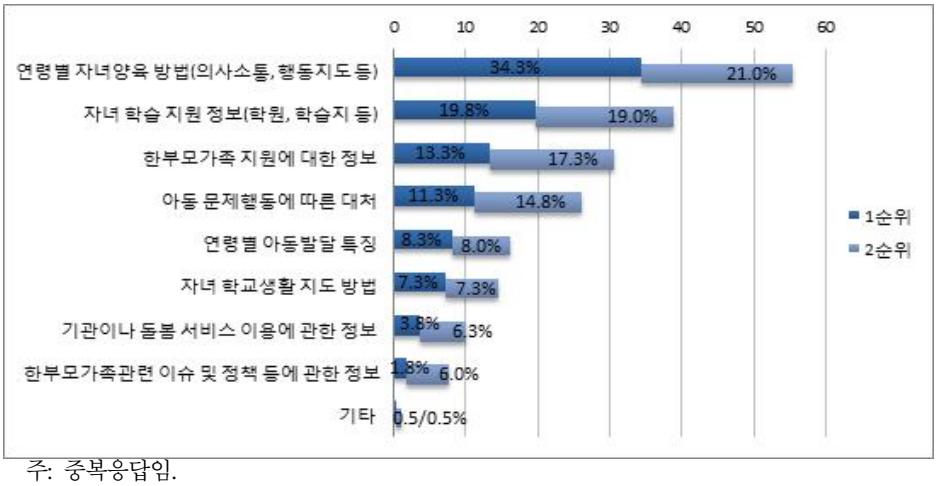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9〕 자녀양육 시 필요한 정보

라.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의 관계

1) 전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최근 1년 간 본인과 전배우자와의 연락 및 만남 여부에 대해서 54.4%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6.8%는 연락 주고받음, 18.7%은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전배우자와 만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Ⅳ-2-6〉 전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여부: 본인

단위: %(명)

구 분	연락을 주고받음	만난 적이 있음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음	(수)
전체	36.8	18.7	54.4	(3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9.8	12.3	64.0	(114)
초등 저학년	43.1	19.3	47.7	(109)
유아기	32.9	22.4	56.5	(85)
영아기	46.7	26.7	42.2	(45)
가구구성				
모자	40.4	19.2	53.0	(198)
모자+기타	34.1	15.9	57.3	(82)
부자	25.9	25.9	51.9	(27)
부자+기타	32.6	17.4	56.5	(46)
한부모 기간				
0~2년	49.1	30.2	37.7	(106)
3~5년	39.0	16.1	53.4	(118)
6~8년	28.9	13.3	63.3	(90)
9년 이상	15.4	7.7	82.1	(39)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가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 연락 및 만남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51.3%가 연락 및 만남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37.1%는 만난 적이 있음, 28.6%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자주 전배우자와 자녀가 만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7〉 전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여부: 자녀

단위: %(명)

구 분	연락을 주고받음	만난 적이 있음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음	(수)
전체	28.6	37.1	51.3	(3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3.3	34.2	50.9	(114)
초등 저학년	26.6	45.0	47.7	(109)
유아기	23.5	28.2	58.8	(85)
영아기	31.1	42.2	46.7	(45)
가구구성				
모자	28.8	38.4	52.0	(198)
모자+기타	24.4	29.3	57.3	(82)
부자	33.3	40.7	40.7	(27)
부자+기타	32.6	43.5	43.5	(46)
한부모 기간				
0~2년	38.7	48.1	35.8	(106)
3~5년	29.7	40.7	50.0	(118)
6~8년	18.9	28.9	62.2	(90)
9년 이상	20.5	15.4	71.8	(39)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최근 1년간 본인 및 자녀와 전배우자 간 연락 형태를 살펴보면(표 Ⅳ-2-8 참조), 본인과 전배우자는 부정기적으로 연락한다는 응답이 74.6%로 많았다. 자녀와 전배우자의 연락 형태 역시 부정기적인 연락이 67.3%로 많았으나, 정기적으로 연락한다는 응답도 32.7%이었으며, 본인과 전배우자 간 정기적인 연락 비율보다 높았다.

본인과 전배우자 간의 연락 횟수는 년 3.9회 혹은 월 1.9회 혹은 주 2.3회 연락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는 전배우자 간의 연락 횟수는 년 4.6회, 월 2.3회 혹은 주 2.4회 연락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8〉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연락

단위: %(명)

구 분	본인-전배우자 연락			자녀-전배우자 연락		
	정기적	부정기적	계(수)	정기적	부정기적	계(수)
전체	25.4	74.6	100.0(130)	32.7	67.3	100.0(1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만남 형태 역시 본인과 자녀 모두 부정기적으로 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1.2%, 63.4% 이었다. 본인은 전배우자와 년 4.1회, 월 1.6회 혹은 주 1.2회 만난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는 전배우자와 년 4.3회, 월 1.7회 혹은 주 1.9회 만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9〉 최근 1년간 전배우자와의 만남

단위: %(명)

구 분	본인-전배우자 만남			자녀-전배우자 만남		
	정기적	부정기적	계(수)	정기적	부정기적	계(수)
전체	28.8	71.2	100.0(66)	36.6	63.4	100.0(1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와 전배우자가 만나서 하는 일은 1, 2순위 모두 밖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다, 전배우자의 집에서 지내다 온다,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 순으로 높았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밖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69.5%으로 가장 높았고, 전배우자의 집에서 지내다 옴(61.0%), 여가활동을 함께 함(41.3%) 순이다(그림 Ⅳ-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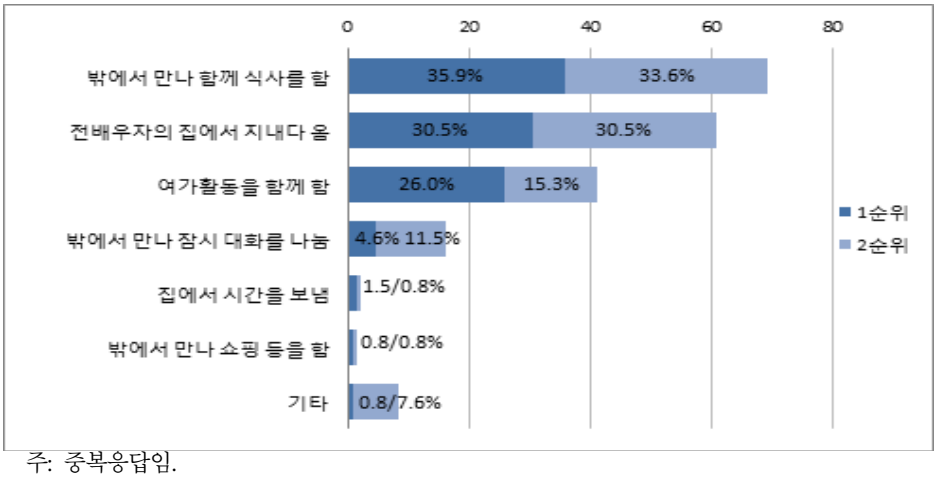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0〕 자녀와 전배우자 만남 시 하는 일

이상에서 살펴본 전배우자와 자녀 간의 연락과 만남에 대하여 심층면담에서

도 다루었다. 심층면담 사례에서는 한부모 자신은 전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경우 헤어진 부모와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녀 연령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비동거 부모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또 연락 수단이 간편화된 것도 영향을 받는 듯하였다.

> "한번 씩 통화할 때마다. 전에는 가끔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쩌다 한번씩.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을 주니까 자꾸 전화를 하더라고요."(참여자15)

2)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와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 및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 정도는 4점 척도에 2.8점으로, 자녀수가 2명 이상, 한부모 기간이 0~2년인 집단에서 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아이와 전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나와 전배우자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이 자녀의 성장 및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각각 2.2점의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자녀수 2명 이상, 한부모 된 기간이 0~2년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이가 전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2.3점 이었는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Ⅳ-2-10 참조).

〈표 Ⅳ-2-10〉 자녀와 전배우자의 관계

단위: 점(명)

구 분	아이는 전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와 전배우자의 만남은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	나와 전배우자의 관계는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나와 전배우자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	(수)
전체	2.3	2.2	2.8	2.2	(353)
자녀수					
1명	2.2	2.1	2.7	2.0	(202)
2명 이상	2.4	2.3	3.0	2.4	(151)
t	-1.6	-2.0*	-3.1**	-3.1**	

(표 Ⅳ-2-10 계속)

구 분	아이는 전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와 전배우자의 만남은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	나와 전배우자의 관계는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나와 전배우자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	(수)
한부모 기간					
0~2년	2.6	2.5	3.0	2.4	(106)
3~5년	2.3	2.1	2.8	2.1	(118)
6~8년	2.1	2.1	2.6	2.1	(90)
9년 이상	1.8	1.9	2.7	1.8	(39)
F	7.6***	3.8*	3.4*	4.1**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4점 만점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전배우자와 나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관한 의견이 같다.’, ‘전배우자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고마워한다.’, ‘전배우자는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을 지지해 준다.’, ‘전배우자는 시간이 날 때면 언제든지 양육을 도와준다.’와 같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4점에서 2.0점 사이로 응답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표 Ⅳ-2-11 참조).

반면, ‘전배우자는 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배우자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전배우자는 부모로서 내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부모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본다.’, ‘전배우자는 아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양육을 함께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8점에서 3.1점으로 응답하여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Ⅳ-2-12 참조).

한부모인 아버지들이 한부모인 어머니들에 비해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예: ‘전배우자는 부모로서 내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부모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본다.’)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배우자와 더 다르다고 느꼈고, 배우자가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덜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표 Ⅳ-2-11〉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1)

단위: 점(명)

구 분	전배우자와 나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관한 의견이 같다	전배우자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고마워한다	전배우자는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을 지지해준다	전배우자는 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수)
전체	1.7	2.0	1.8	1.9	(353)
가구구성					
모자	1.7	1.9	1.8	1.8	(198)
모자+기타	1.6	2.0	1.8	1.7	(82)
부자	1.7	1.7	1.9	2.2	(27)
부자+기타	1.8	2.2	2.1	2.0	(46)
F	0.2	2.1	1.4	3.0*	
자녀수					
1명	1.6	1.9	1.7	1.8	(202)
2명 이상	1.8	2.1	2.0	1.9	(151)
t	-2.1*	-1.7	-3.1**	-1.1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Ⅳ-2-12〉 자녀양육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관계(2)

단위: 점(명)

구 분	나는 전배우자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전배우자는 부모로서의 내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부모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본다	전배우자는 시간이 날 때면 언제든지 양육을 도와준다	전배우자는 아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양육을 함께하지 않는다	(수)
전체	2.7	1.8	1.4	3.1	(353)
가구구성					
모자	2.7	1.8	1.3	3.1	(198)
모자+기타	2.8	1.6	1.3	3.2	(82)
부자	2.6	2.1	1.5	3.0	(27)
부자+기타	2.8	2.1	1.5	2.8	(46)
F	0.3	3.2*	0.9	1.3	
자녀수					
1명	2.7	1.8	1.3	3.1	(202)
2명 이상	2.7	1.9	1.5	3.0	(151)
t	-0.1	-0.8	-1.9	1.0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인 9.1, 전배우자 0.9로 보고하였다(그림 Ⅳ-2-11 참조). 즉, 본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본인이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모자가구에서는 본인의 자녀양육 비중을 9.4로 높게 응답하였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과 기타구성원이 없는 모자 및 부자가구에서 본인의 자녀양육 비중을 높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부표 Ⅳ-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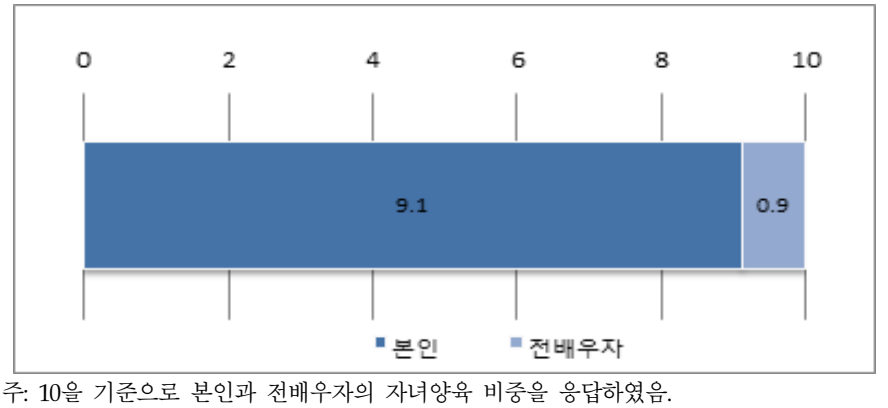

주: 10을 기준으로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을 응답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1〕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층면담에서도 깊이 다루었다.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 자신은 전배우자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자녀들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전배우자와 자녀가 연락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나 복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그리고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지 애한테는 가끔 연락이 와. 나는 그래도 애와 아빠의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애의 정서에 좋다 그러더라고. 애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다고.”(참여자04)

> “아이 정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아이가 4살 때인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직접 할 용기는 없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니까 엄마를 보는 거고,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가.”(참여자08)

한편,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입장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나 모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만남을 좋아하고 반기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즉, 어린 연령의 자녀가 비동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지 그를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좀 더 나이든 사춘기의 자녀는 비동거 부모가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 "내가 자꾸 아빠 전화 오면 받아 막 이랬더니 '엄마, 딸한테 용돈 한 번 안 주는 아빠가 사람이야?' 이러는 거야. 이제까지 아빠한테 보살핌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야."(참여자04)

> "만약에 아빠가 자주 찾아오고 보살핌을 해줬다면, 아빠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내편이지. 그리고 이제 아빠는 자기 인생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참여자05)

3)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급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로 높았고,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8.0%,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9.3% 이었다(그림 Ⅳ-2-12 참조).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모자와 모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에서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수령한다는 응답이 각각 29.3%, 36.6%로 높았고, 한부모 기간이 짧을수록 즉, 최근에 이혼한 경우 자녀양육비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부표 Ⅳ-2-6 참조).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월 평균 수령 금액은 40~80만원이 55.6%로 가장 높았고, 40만원 미만(29.3%), 80~120만원 미만(11.1%) 순이었다(그림 Ⅳ-2-12 참조). 이를 가족유형별로 보았을 때, 모자가구에서 월 평균 57만5천원, 모자+기타구성원 47만3천원을 수령하는 반면 부자가구 31만원, 부자+기타구성원 33만원을 수령한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표 Ⅳ-2-7 참조).

심층면담 참여자 중에서도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는 전배우자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여서 실제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배우자와 확실한 단절을 원하는 경우 아예 양육비 받기를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지금 양육비 이행관련 소송을 해 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이겨서 판결문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양육비 뭐 하나 받은 거 없고…”(참여자11)

이처럼 이혼한 경우 전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지급은 면담참여자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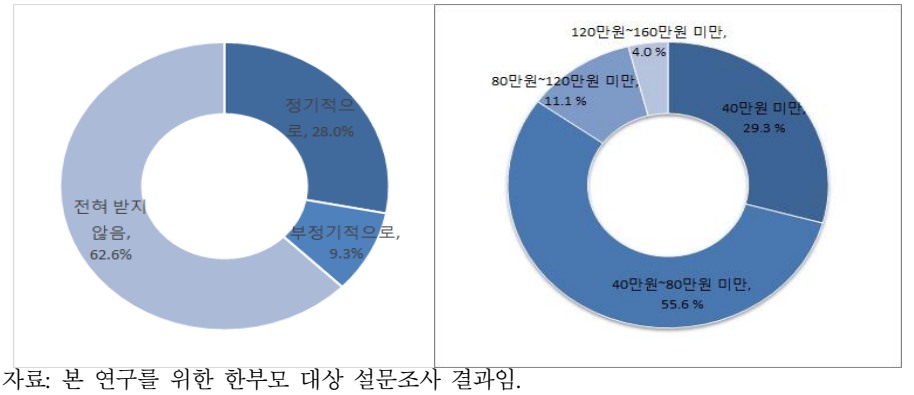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2〕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및 금액

4) 친권자

현재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자녀(설문조사 시 기준이 된 해당 자녀)의 친권자는 응답자 본인인 경우가 86.1%이었고, 공동 친권인 경우가 11.9%, 전배우자가 친권을 가진 경우 2.0% 이었다(그림 Ⅳ-2-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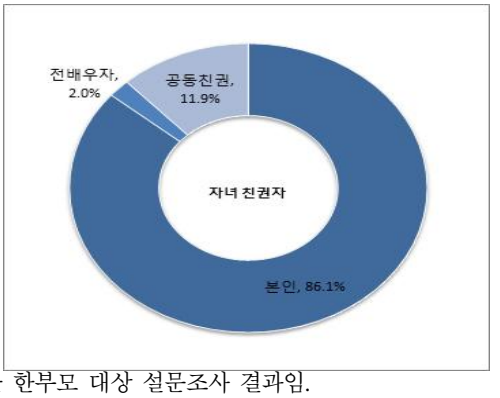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2-13〕 자녀의 친권자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대부분 폭력, 외도,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한부모가족을 구성한 사례이므로 자녀 양육권은 선택의 사안이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본인이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고, 실제 양육도 본인이 하고 있었다. 부자가구 한 사례만이 자녀들의 엄마가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지고 있으나 양육비 소송과 여러 갈등이 있었고, 현재는 본인(아버지)이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3. 개인 및 생활 특성

한부모가족의 개인 및 생활 특성으로 자녀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부모와 자녀의 여가활동, 그리고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알아보고, 자녀양육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및 사회적 지지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자녀 건강상태 및 생활

1)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먼저 자녀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약물 복용 혹은 치료 여부와 기관(학교) 병결 일수를 조사하였다. 자녀가 최근 3개월 이상 약을 먹었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7.8%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렇다는 응답도 12.3%이었다(표 Ⅳ-3-1 참조).

〈표 Ⅳ-3-1〉 자녀 건강상태: 약물 복용 혹은 치료 여부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요	계(수)	$x^2(df)$
전체	12.3	87.8	100.0(400)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9.8	90.2	100.0(133)	6.6(3)
초등 저학년	12.3	87.7	100.0(122)	
유아기	10.2	89.8	100.0(98)	
영아기	23.4	76.6	100.0(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최근 1개월 간 아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빠진 일수는 80.5%가 없

다고 응답하였고, 1~2일(11.0%), 3~5일(4.0%)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결석한 적이 있는 응답 수가 더 많은 편이었다.

〈표 Ⅳ-3-2〉 자녀 건강상태: 병결 일수

단위: %(명)

구 분	전혀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해당사항 없음 (안다님)	계(수)	$x^2(df)$
전체	80.5	11.0	4.0	1.5	0.3	2.8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6.7	17.9	7.7	0.0	0.0	7.7	100.0(78)	n/a
100~200만원	79.9	10.1	4.4	2.5	0.6	2.5	100.0(159)	
200~300만원	91.4	7.4	0.0	0.0	0.0	1.2	100.0(81)	
300만원 이상	84.1	9.8	3.7	2.4	0.0	0.0	100.0(82)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86.5	10.5	1.5	1.5	0.0	0.0	100.0(133)	n/a
초등 저학년	89.3	7.4	3.3	0.0	0.0	0.0	100.0(122)	
유아기	74.5	15.3	5.1	2.0	0.0	3.1	100.0(98)	
영아기	53.2	12.8	10.6	4.3	2.1	17.0	100.0(47)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유아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식습관과 놀이 습관 등 생활습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Ⅳ-3-3〉 자녀 생활습관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1) 하루 세끼 식사	2.8	10.8	15.3	70.3	0.8	100.0(353)
2) 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	2.3	22.9	36.0	38.0	0.8	100.0(353)
3) 신선한 과일과 야채 섭취	5.1	26.6	35.4	32.0	0.8	100.0(353)
4) 인스턴트 섭취	7.9	74.2	13.6	3.7	0.6	100.0(353)
5) 방과 후 30분 이상 신체활동	7.4	31.4	24.6	34.3	2.3	100.0(353)
6)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	18.1	34.8	24.9	20.1	2.0	100.0(353)
7) 재미를 위한 책 읽기	12.2	38.2	27.8	20.4	1.4	100.0(35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가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먹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5일 이상 세 끼 식사를 먹는다는 응답이 70.3%로 월등히 높게 나

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전혀 안하거나 주 1~2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부표 Ⅳ-3-1 참조).

둘째, 고기, 생선 또는 상응하는 채식주의자용 식단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74.0%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고기, 생선 등을 먹는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부표 Ⅳ-3-2 참조).

셋째,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대해 주 3~4일 먹는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고, 주 5일 이상 32.0%, 주 1~2일 26.6% 순이었다. 주 3일 이상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는 응답은 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좀 더 많았다(부표 Ⅳ-3-3 참조).

넷째, 라면과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빈도는 주 1~2회가 74.2%로 월등하게 높았고, 주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7% 있었다. 또한 자녀연령이 초등 고학년일 때 인스턴트식품 섭취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부표 Ⅳ-3-4 참조).

다섯째, 전체의 90.3%가 방과(하원) 후 3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체활동 빈도가 주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주 1~2일 31.4%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자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부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유형에서 신체활동의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부표 Ⅳ-3-5 참조).

여섯째,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빈도는 주 1~2일이 34.8%로 가장 높았고, 전혀 안한다는 응답도 18.1%로 높은 편이었다. 집단별 경향성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2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더 자주 방과 후 친구들과 놀이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연령이 많고, 또 부자가구인 경우 더 자주 친구들과 놀이하는 경향을 보였다(부표 Ⅳ-3-6 참조).

마지막으로 재미를 위한 책 읽기 빈도는 주 1~2일이 38.2%로 가장 많았고, 전혀 안함 응답도 12.2%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연령이 초등 고학년인 집단에서 전혀 안한다는 응답이 20.3%, 주 1~2일이 4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책 읽기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다(부표 Ⅳ-3-7 참조).

2) 자녀와의 여가활동

유아 혹은 초등학생 자녀와의 여가활동을 일곱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전체적으로 자녀와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극장, 콘서트, 공연장 가기로 나타났으며, 가장 참여 비율이 낮은 여가활동은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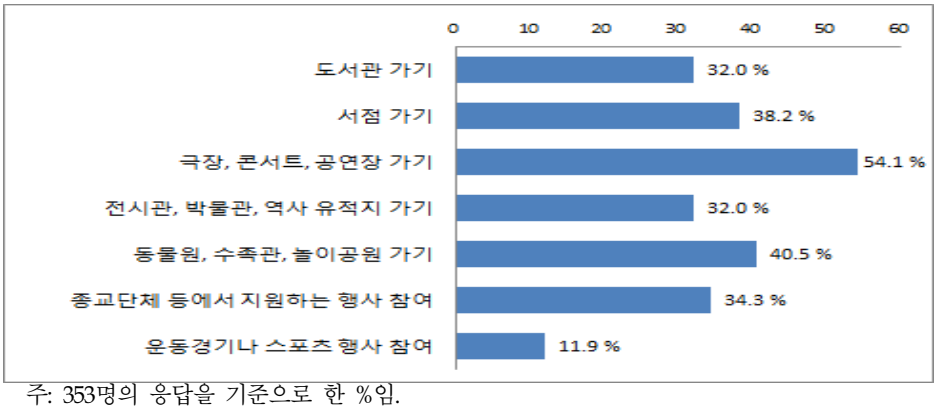

주: 353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1〕 자녀와의 여가활동: 활동별 이용 비율

먼저 <표 Ⅳ-3-4>에 따르면, 자녀와 도서관에 가는지 여부에 대해 68.0%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녀 연령이 초등 저학년인 집단은 42.6%가 자녀와 도서관에 간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주 도서관에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4〉 자녀와의 여가활동: 도서관 가기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32.0	68.0	100.0(3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4.8	75.2	100.0(133)	
초등 저학년	42.6	57.4	100.0(122)	10.0(2)**
유아기	28.6	71.4	100.0(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자녀와 서점에 간다고 응답한 경우는 38.2%이며, 한부모가 휴직 상태인 경우 서점에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Ⅳ-3-5〉 자녀와의 여가활동: 서점 가기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38.2	61.8	100.0(353)	
취업상태				
취업	38.0	62.0	100.0(292)	
휴직	63.2	36.8	100.0(19)	6.7(2)*
미취업	28.6	71.4	100.0(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자녀와 극장, 콘서트, 공연장에 가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인 5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한부모가 휴직 상태인 응답자 중 78.9%가 극장, 공연장에 간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Ⅳ-3-6〉 자녀와의 여가활동: 극장, 콘서트, 공연장 가기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54.1	45.9	100.0(353)	
취업상태				
취업	54.1	45.9	100.0(292)	
휴직	78.9	21.1	100.0(19)	6.9(2)*
미취업	42.9	57.1	100.0(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에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8.0%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응답자 중 24.1%만 전시관, 박물관에 간다고 응답하였고, 모자가구에서 전시관, 박물관의 방문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표 Ⅳ-3-7〉 자녀와의 여가활동: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 가기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32.0	68.0	100.0(3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4.1	75.9	100.0(133)	6.3(2)*
초등 저학년	37.7	62.3	100.0(122)	
유아기	35.7	64.3	100.0(98)	

(표 Ⅳ-3-7 계속)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가구구성				
모자	24.7	75.3	100.0(198)	11.2(3)*
모자+기타	41.9	58.1	100.0(74)	
부자	37.5	62.5	100.0(32)	
부자+기타	42.9	57.1	100.0(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자녀와 동물원, 수족관, 놀이 공원에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0.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녀 연령이 유아기일 때는 57.1%가 간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한부모는 76.7%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3-8〉 자녀와의 여가활동: 동물원, 수족관, 놀이 공원 가기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40.5	59.5	100.0(3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3.3	76.7	100.0(133)	29.1(2)***
초등 저학년	45.9	54.1	100.0(122)	
유아기	57.1	42.9	100.0(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와 지역사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7%로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족유형 중 부자가구의 경우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표 Ⅳ-3-9 참조).

〈표 Ⅳ-3-9〉 자녀와의 여가활동: 지역사회 등에서 지원하는 행사 참여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34.3	65.7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2.4	57.6	100.0(59)	3.9(3)
100~200만원	35.2	64.8	100.0(142)	

(표 Ⅳ-3-9 계속)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200~300만원	34.2	65.8	100.0(76)	3.9(3)
300만원 이상	26.3	73.7	100.0(76)	
가구구성				
모자	37.4	62.6	100.0(198)	6.0(3)
모자+기타	37.8	62.2	100.0(74)	
부자	18.8	81.3	100.0(32)	
부자+기타	26.5	73.5	100.0(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와 자녀가 출전하지 않는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 관람하는지 여부에 대해 11.9%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가구에서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더 자주 스포츠 행사를 관람, 참여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Ⅳ-3-10〉 자녀와의 여가활동: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 참여(관람)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전체	11.9	88.1	100.0(3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12.8	87.2	100.0(133)	1.0(2)
초등 저학년	13.1	86.9	100.0(122)	
유아기	9.2	90.8	100.0(98)	
가구구성				
모자	10.1	89.9	100.0(198)	5.0(3)
모자+기타	9.5	90.5	100.0(74)	
부자	21.9	78.1	100.0(32)	
부자+기타	16.3	83.7	100.0(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자녀 발달적 특성

자녀의 발달적 특성으로는 자아탄력성, 애착, 각 영역별 발달 정도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의 적응 기간을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조절능력은 2.8점, 개방성은 2.7점으로 부모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조절능력은 가구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F=2/9, p<.05), 가구소

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는 자녀의 조절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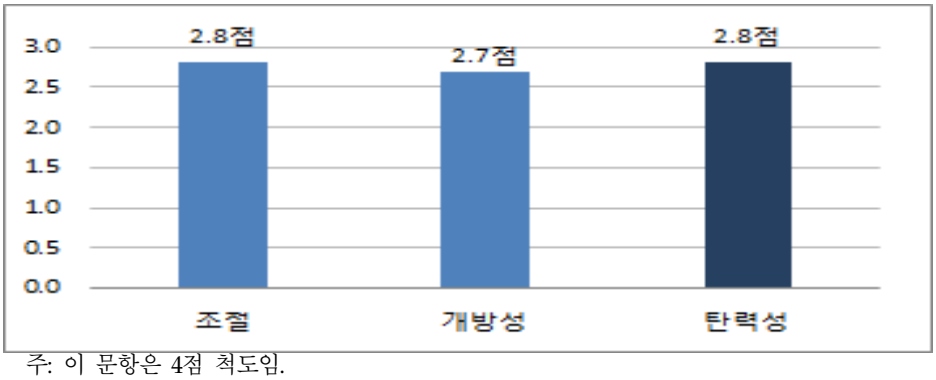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2〕 자녀 자아탄력성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7점이었다. 특히 영아기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3.8점으로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3.7점)보다 유의하게 애착 정도가 높았다.

〈표 Ⅳ-3-11〉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

단위: 점(명)

구 분	애착	(수)	*t/F*
전체	3.7	(145)	
자녀연령			
유아기	3.7	(98)	-2.6**
영아기	3.8	(47)	
가구구성			
모자	3.7	(84)	
모자+기타	3.8	(40)	0.4
부자	3.7	(6)	
부자+기타	3.7	(15)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영역별 자녀 발달 정도에 대해서는 신체발달 및 성장 영역에서 성장이 느린

편이라는 응답이 14.8%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았지만 빠른 편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즉, 한부모 응답자는 다른 영역 발달에 비해 신체발달 및 성장이 느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이 빠른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5%, 49.3%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의 적응 기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의 적응 기간은 현재 적응 중이라는 응답이 46.5%이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13.0%이었다. 그 외에는 자녀가 적응하는 데 평균 20.0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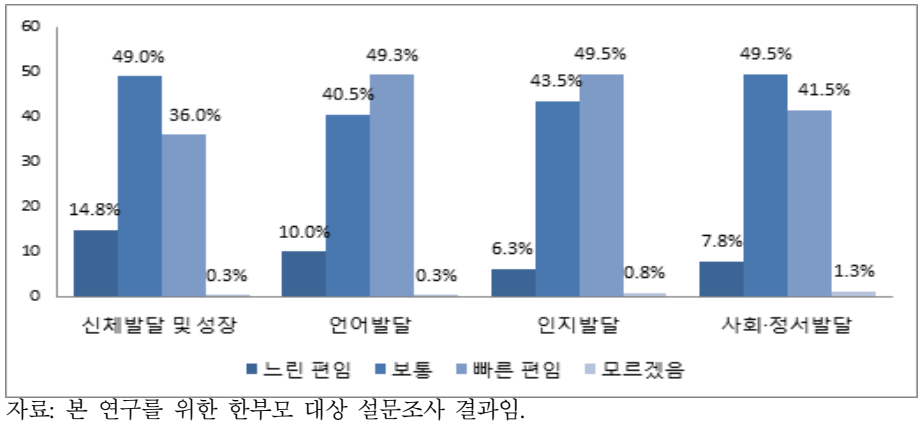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3〕 자녀 발달 정도

다. 부모 심리사회적 특성

1) 개인 특성

한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4점 척도에 평균 2.0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삶의 만족도는 취업 상태인 응답자 보다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가 유의하게 낮았고, 자녀연령이 영아기일 때 1.7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부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경우 2.3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반면 모자가구은 1.8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표 Ⅳ-3-12 참조).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 평균 2.7점으로 삶의 만족도보다는 높은 편이다. 자아존중감 역시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행복감은 7점 척도에 평균 4.0점으로, 미취업 부모,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자가구에서의 행복감이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표 Ⅳ-3-12〉 부모의 심리적 특성

단위: 점(명)

구 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수)
전체	2.0	2.7	4.0	(400)
취업상태				
취업	2.0	2.7	4.1	(315)
휴직	1.8	2.5	3.9	(24)
미취업	1.7	2.4	3.6	(61)
F	7.8***	10.9***	8.2***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0	2.7	4.1	(133)
초등 저학년	2.1	2.8	4.1	(122)
유아기	1.9	2.6	3.9	(98)
영아기	1.7	2.4	3.7	(47)
F	3.1*	4.0**	3.8*	
가구구성				
모자	1.8	2.6	3.8	(226)
모자+기타	2.1	2.7	4.2	(89)
부자	2.0	2.7	4.0	(32)
부자+기타	2.3	2.8	4.2	(53)
F	9.4***	2.7*	5.0**	

주: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문항은 4점 척도, 행복감 문항은 7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자신의 자아탄력성의 경우 조절능력 2.7점, 개방성 2.6점으로 4점 만점인 척도에서 대략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그림 Ⅳ-3-4 참조). 한편 부모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조절능력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소 높게 나타나서 (F=3.1, p<.05) 자녀의 조절능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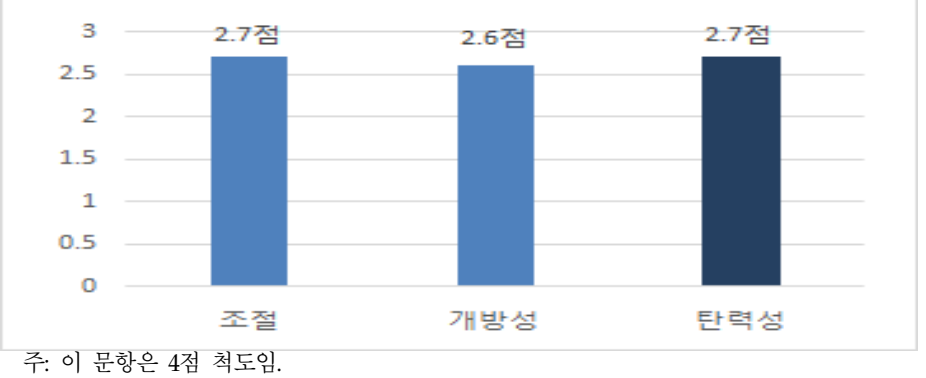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3-4〕 부모 자아탄력성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조사한 결과, 한부모는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지지 모두 3.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구소득이나 가족구성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적지지가 다소 달라지는데, 도구적지지와 사교적지지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3.0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교적지지의 경우 기타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보다는 부자 혹은 모자만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에게서 더 낮게 보고되었다.

〈표 Ⅳ-3-13〉 사회적 지지

단위: 점(명)

구 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전체	3.2	3.3	3.3	3.3	(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	3.0	3.0	3.1	(78)
100~200만원	3.2	3.3	3.2	3.3	(159)
200~300만원	3.4	3.5	3.4	3.5	(81)
300만원 이상	3.4	3.4	3.5	3.5	(82)
F	1.4	4.0**	3.7*	2.4	

(표 Ⅳ-3-13 계속)

구 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가구구성					
모자	3.2	3.2	3.2	3.3	(226)
모자+기타	3.5	3.5	3.5	3.5	(89)
부자	3.0	3.0	3.0	3.1	(32)
부자+기타	3.3	3.4	3.3	3.3	(53)
F	2.0	2.6	3.0*	1.5	

주: 이 문항은 5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심층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거주지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내지는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유지, 자녀 돌봄, 그리고 집안일 등의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회적 관계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뭐든 하다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없어지면 다 단절되는 것 같아요. (중략) 저도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08)

>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인맥이 끊겨요. 인간관계가 정리가 싹 되죠. (중략)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피하게 되요."(참여자03)

원가족과의 관계는 각 사례마다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이혼 사례인 경우 그 전부터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왔거나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원가족과도 갈등을 경험하여 단절이 된 경우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어 왕래가 빈번하지 않기도 하였다.

> "한부모들은 친가 쪽에서도 단절이지만 자기 친정 쪽에서도 형제들이랑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줄까 싶어가지고 거의 연락, 그냥 겉으로는 가족이고 형제니까 왕래는 하되 서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는 없다고…"(참여자02)

한편 모자가구의 경우 자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먼 거리에 살더라도 도움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사례가 있었다.

4. 한부모가족 지원

이 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먼저 부모교육 참여 및 육아휴직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인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양육비이행관리원, 드림스타트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지원을 받는지 여부, 만족도 및 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자조모임 참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부모교육

한부모가 된 후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5.8%로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한부모가 된 이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은 가구소득 및 자녀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24.4%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인 집단은 50%이상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중 70.2%가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하여 유의하게 낮았다(부표 Ⅳ-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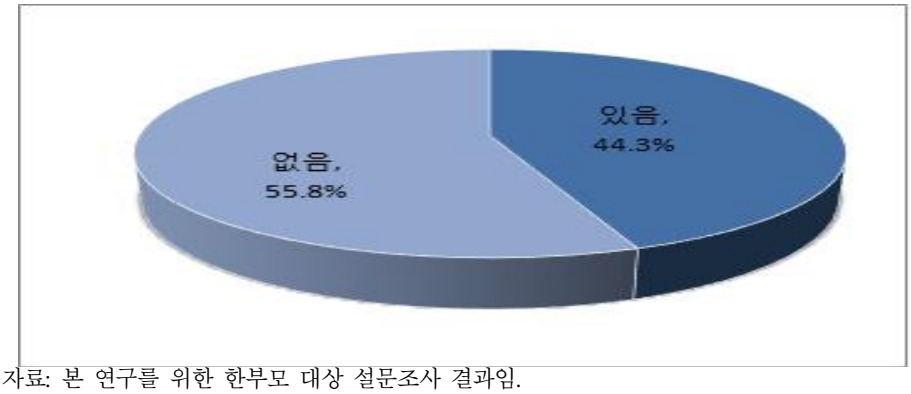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1〕 부모교육 참여 경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교육 참여 유형을 중복 응답하도록 질문한 결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교육이 각각 4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도 33.9%로 높았다. 복지관, 주민센터 등 공적기관에서의 교육 및 그 외 기관의 교육은 10% 미만 수준이었다(그림 Ⅳ-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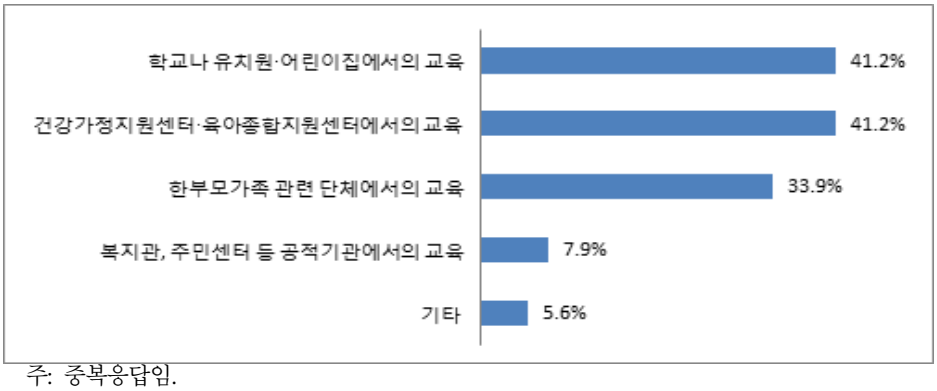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2〕 부모교육 참여 유형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부모 중 82.5%는 매우 도움 되거나 대체로 도움 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체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15.8%, 전혀 안된다는 의견도 1.7%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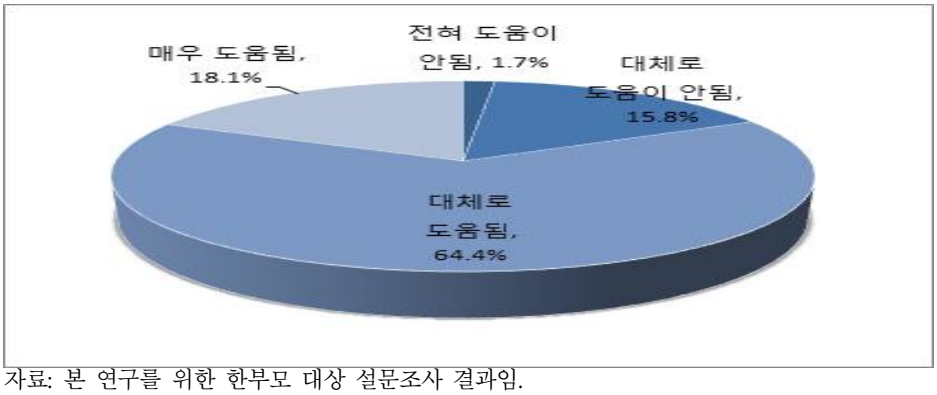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3〕 부모교육 도움 정도

부모교육 시 필요한 내용으로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연령별 자녀양육방법이 5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34.3%), 자녀 적응 지원(33.5%),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29.1%) 순이었다. 2순위 응답도 1, 2순위 합산 순서와 동일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Ⅳ-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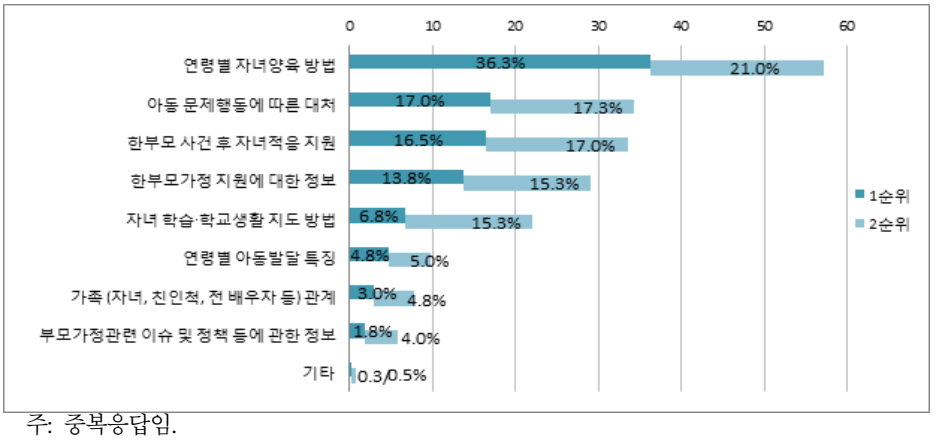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4〕 부모교육 시 필요한 내용

한편 심층면담에서는 부모교육에서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주길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아이들 연령 발달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좀 잘 알고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고 했으면…. 참다운 부모가 되고 싶은데…."(참여자05)

또한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이나 이성 부모의 부재로 인한 걱정이 대표적이었다.

>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 입장들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거든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참여자11)

> "부모교육은, 제가 아빠, 엄마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자아이다보니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욱할 때가 있거든요. (중략) 그럼 쟤가 사춘기인가 싶고, 그럴 때 좀…"(참여자07)

나. 육아휴직

한부모가 된 후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52.5%로 높고, 해당 없다는 응답 40.0%, 있다는 응답이 7.5%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해당 없음의 응답이 반수 이상이었다(표 Ⅳ-4-1 참조).

자녀가 영아기인 경우, 해당 없음 비율이 70.2%로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기타구성원 없는 부자가구와 모자가구에서 해당 없음 비율이 높았으며, 기타구성원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부보다는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Ⅳ-4-1〉 육아휴직 사용 여부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요	해당 없음	계(수)	$x^2(df)$
전체	7.5	52.5	40.0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0	25.6	65.4	100.0(78)	36.9(6)***
100~200만원	6.9	52.8	40.3	100.0(159)	
200~300만원	8.6	59.3	32.1	100.0(81)	
300만원 이상	6.1	70.7	23.2	100.0(82)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8	59.4	36.8	100.0(133)	30.7(6)***
초등 저학년	11.5	59.0	29.5	100.0(122)	
유아기	10.2	46.9	42.9	100.0(98)	
영아기	2.1	27.7	70.2	100.0(47)	
가구구성					
모자	7.5	45.6	46.9	100.0(226)	18.2(6)**
모자+기타	11.2	56.2	32.6	100.0(89)	
부자	3.1	56.3	40.6	100.0(32)	
부자+기타	3.8	73.6	22.6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한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휴직 횟수를 물어본 결과, 육아휴직을 평균 1.3회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아휴직 사용 기간은 1년~2년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고, 6개월 미만(26.7%), 6개월~1년 미만(23.3%), 2년 이상(13.3%) 순이었다(그림 Ⅳ-4-5 참조).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 경제적 이유가 33.8%로 가장 높았고, 원하지 않거나 필요 없어서(29.0%),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18.1%), 한부모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11.9%) 순이었다. 육아휴직 제도가 없거나 계약직이여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5% 미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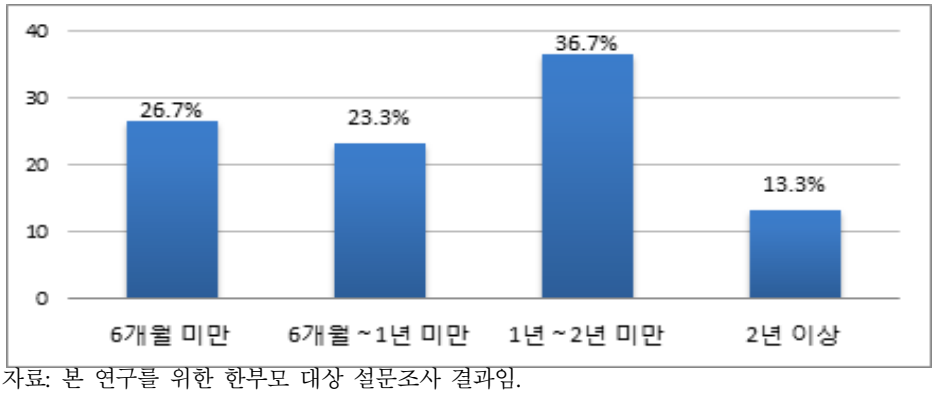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5〕 육아휴직 사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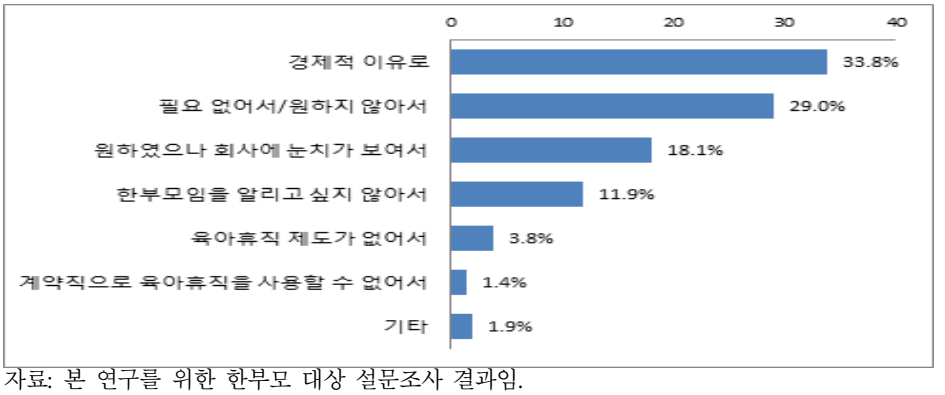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6〕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지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방과후보육료, 드림스타트, 임대주택 우선순위에 대하여 인지 및 수혜 여부, 그리고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전체적 결과는 <표 Ⅳ-4-2>에 정리하였다.

한부모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제도는 아동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순위, 학용품비 지원, 방과후보육료 제도 순이었다. 각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한부모 중 수혜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아동양육비, 드림스타트, 방과후보육료 제도, 입소 우선순위, 학용품비 지원 등이 있었다. 만족도가 3점 이상으로 높은 지원제도는 입소우선순위, 방과후보육료 제도, 임대주택 우선순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드림스타트, 무료법률구조로 나타났다. 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다.

〈표 Ⅳ-4-2〉 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 만족도, 필요성

단위: %, 점

지원 제도	인지(%)	수혜(%)	만족도(점)	필요성(점)
아동양육비 지원	79.0	54.1	2.7	3.8
학용품비 지원	69.3	36.1	2.5	3.7
생활보조금 지원	54.5	16.5	2.8	3.7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45.8	3.3	2.3	3.7
양육비 이행 관리원	55.3	12.2	2.5	3.7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52.3	12.9	3.0	3.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9.0	6.6	3.2	3.7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59.5	36.6	3.4	3.8
방과후보육료 지원	63.8	43.9	3.3	3.8
드림스타트	54.8	49.3	3.2	3.7
임대주택 우선순위	75.5	25.5	3.3	3.8

주: 인지는 100%가 400명 기준이며, 수혜는 각 지원 제도를 인지한다고 응답한 사례를 100%로 놓고 계산하여 총 사례수가 지원별로 다름. 이어지는 표에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음. 만족도와 필요성은 4점 척도임.

1)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79.0%가 안다고 응답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지원을 받은 경험에도 54.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인지 및 수혜 여부 응답 비율이 높았고, 부자가구의 제도 인지 및 수혜 경험이 모자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Ⅳ-4-3참조).

〈표 Ⅳ-4-3〉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아동양육비 지원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79.0	21.0	100.0(400)		54.1	7.0	38.9	100.0(316)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2.3	7.7	100.0(78)	42.9(3)***	72.2	4.2	23.6	100.0(72)	59.1(6)***
100~200만원	87.4	12.6	100.0(159)		66.2	4.3	29.5	100.0(139)	
200~300만원	72.8	27.2	100.0(81)		35.6	13.6	50.8	100.0(59)	
300만원이상	56.1	43.9	100.0(82)		13.0	10.9	76.1	100.0(4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76.7	23.3	100.0(133)	2.4(3)	50.0	5.9	44.1	100.0(102)	4.2(6)
초등 저학년	78.7	21.3	100.0(122)		55.2	9.4	35.4	100.0(96)	
유아기	78.6	21.4	100.0(98)		57.1	3.9	39.0	100.0(77)	
영아기	87.2	12.8	100.0(47)		56.1	9.8	34.1	100.0(41)	
가구구성									
모자	85.0	15.0	100.0(226)	26.2(3)***	64.6	4.2	31.3	100.0(192)	26.3(6)***
모자+기타	82.0	18.0	100.0(89)		41.1	8.2	50.7	100.0(73)	
부자	68.8	31.3	100.0(32)		36.4	18.2	45.5	100.0(22)	
부자+기타	54.7	45.3	100.0(53)		31.0	13.8	55.2	100.0(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학용품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69.3%가 안다고 응답하였고, 지원을 받은 경우는 36.1%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모자 혹은 모자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유형에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Ⅳ-4-4〉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학용품비 지원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69.3	30.8	100.0(400)		36.1	5.4	58.5	100.0(277)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84.6	15.4	100.0(78)	43.9(3)***	43.9	3.0	53.0	100.0(66)	n/a
100~200만원	78.6	21.4	100.0(159)		47.2	3.2	49.6	100.0(125)	
200~300만원	63.0	37.0	100.0(81)		23.5	9.8	66.7	100.0(51)	
300만원이상	42.7	57.3	100.0(82)		0.0	11.4	88.6	100.0(35)	

(표 Ⅳ-4-4 계속)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자녀연령									
초등고학년	69.2	30.8	100.0(133)	0.4(3)	48.9	4.3	46.7	100.0(92)	n/a
초등저학년	69.7	30.3	100.0(122)		44.7	5.9	49.4	100.0(85)	
유아기	67.3	32.7	100.0(98)		19.7	6.1	74.2	100.0(66)	
영아기	72.3	27.7	100.0(47)		11.8	5.9	82.4	100.0(34)	
가구구성									
모자	77.9	22.1	100.0(226)	27.2(3)***	44.9	3.4	51.7	100.0(176)	n/a
모자+기타	67.4	32.6	100.0(89)		15.0	11.7	73.3	100.0(60)	
부자	56.3	43.8	100.0(32)		38.9	5.6	55.6	100.0(18)	
부자+기타	43.4	56.6	100.0(53)		21.7	4.3	73.9	100.0(23)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생활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45.5%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해당 대상이 아님 응답이 68.3%로 높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제도를 모르는 경우로 유추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낮고, 지원받는 비율도 낮다.

〈표 Ⅳ-4-5〉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생활보조금 지원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54.5	45.5	100.0(400)		16.5	15.1	68.3	100.0(218)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64.1	35.9	100.0(78)	8.2(3)*	30.0	8.0	62.0	100.0(50)	12.9(6)*
100~200만원	57.9	42.1	100.0(159)		13.0	19.6	67.4	100.0(92)	
200~300만원	49.4	50.6	100.0(81)		12.5	20.0	67.5	100.0(40)	
300만원이상	43.9	56.1	100.0(82)		11.1	8.3	80.6	100.0(3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52.6	47.4	100.0(133)	1.3(3)	20.0	17.1	62.9	100.0(70)	6.9(6)
초등 저학년	56.6	43.4	100.0(122)		21.7	15.9	62.3	100.0(69)	
유아기	57.1	42.9	100.0(98)		8.9	12.5	78.6	100.0(56)	
영아기	48.9	51.1	100.0(47)		8.7	13.0	78.3	100.0(23)	

(표 Ⅳ-4-5 계속)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가구구성									
모자	56.2	43.8	100.0(226)	2.4(3)	18.9	15.0	66.1	100.0(127)	n/a
모자+기타	57.3	42.7	100.0(89)		7.8	19.6	72.5	100.0(51)	
부자	46.9	53.1	100.0(32)		13.3	20.0	66.7	100.0(15)	
부자+기타	47.2	52.8	100.0(53)		24.0	4.0	72.0	100.0(25)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4.3%로 안다는 응답(45.8%)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해당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Ⅳ-4-6〉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45.8	54.3	100.0(400)		3.3	13.7	83.1	100.0(183)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53.8	46.2	100.0(78)	9.1(3)*	4.8	14.3	81.0	100.0(42)	n/a
100~200만원	48.4	51.6	100.0(159)		2.6	10.4	87.0	100.0(77)	
200~300만원	46.9	53.1	100.0(81)		2.6	21.1	76.3	100.0(38)	
300만원이상	31.7	68.3	100.0(82)		3.8	11.5	84.6	100.0(2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9.1	60.9	100.0(133)	6.1(3)	1.9	17.3	80.8	100.0(52)	n/a
초등 저학년	47.5	52.5	100.0(122)		3.4	13.8	82.8	100.0(58)	
유아기	45.9	54.1	100.0(98)		4.4	11.1	84.4	100.0(45)	
영아기	59.6	40.4	100.0(47)		3.6	10.7	85.7	100.0(28)	
가구구성									
모자	49.1	50.9	100.0(226)	5.9(3)	3.6	12.6	83.8	100.0(111)	n/a
모자+기타	48.3	51.7	100.0(89)		4.7	14.0	81.4	100.0(43)	
부자	34.4	65.6	100.0(32)		0.0	27.3	72.7	100.0(11)	
부자+기타	34.0	66.0	100.0(53)		0.0	11.1	88.9	100.0(18)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3%로 절반 정도인 반면 지원을 받아본 경우는 12.2%로 낮았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 연령이 어리고, 부 혹은 모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Ⅳ-4-7〉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양육비 이행 관리원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55.3	44.8	100.0(400)		12.2	55.7	32.1	100.0(221)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67.9	32.1	100.0(78)	31.5(3)***	13.2	60.4	26.4	100.0(53)	6.3(6)
100~200만원	66.0	34.0	100.0(159)		11.4	60.0	28.6	100.0(105)	
200~300만원	42.0	58.0	100.0(81)		11.8	50.0	38.2	100.0(34)	
300만원이상	35.4	64.6	100.0(82)		13.8	37.9	48.3	100.0(29)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43.6	56.4	100.0(133)	11.3(3)*	15.5	53.4	31.0	100.0(58)	4.6(6)
초등 저학년	59.0	41.0	100.0(122)		11.1	54.2	34.7	100.0(72)	
유아기	62.2	37.8	100.0(98)		14.8	52.5	32.8	100.0(61)	
영아기	63.8	36.2	100.0(47)		3.3	70.0	26.7	100.0(30)	
가구구성									
모자	62.4	37.6	100.0(226)	30.5(3)***	12.8	53.9	33.3	100.0(141)	n/a
모자+기타	61.8	38.2	100.0(89)		7.3	67.3	25.5	100.0(55)	
부자	37.5	62.5	100.0(32)		16.7	66.7	16.7	100.0(12)	
부자+기타	24.5	75.5	100.0(53)		23.1	15.4	61.5	100.0(13)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3%로 절반 정도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모자 혹은 모자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유형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Ⅳ-4-8 참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는 49.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과 자녀 연령이 초등 저학년 이하인 집단, 모자와 모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인지 여부가 높았다(표 Ⅳ-4-9 참조).

〈표 Ⅳ-4-8〉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52.3	47.8	100.0(400)		12.9	56.9	30.1	100.0(209)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73.1	26.9	100.0(78)	32.9(3)***	19.3	57.9	22.8	100.0(57)	12.8(6)*
100~200만원	57.9	42.1	100.0(159)		14.1	60.9	25.0	100.0(92)	
200~300만원	42.0	58.0	100.0(81)		8.8	47.1	44.1	100.0(34)	
300만원 이상	31.7	68.3	100.0(82)		0.0	53.8	46.2	100.0(2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46.6	53.4	100.0(133)	4.9(3)	12.9	54.8	32.3	100.0(62)	11.0(6)
초등 저학년	50.8	49.2	100.0(122)		11.3	58.1	30.6	100.0(62)	
유아기	56.1	43.9	100.0(98)		21.8	47.3	30.9	100.0(55)	
영아기	63.8	36.2	100.0(47)		0.0	76.7	23.3	100.0(30)	
가구구성									
모자	57.5	42.5	100.0(226)	25.6(3)***	14.6	53.8	31.5	100.0(130)	n/a
모자+기타	61.8	38.2	100.0(89)		10.9	65.5	23.6	100.0(55)	
부자	25.0	75.0	100.0(32)		12.5	75.0	12.5	100.0(8)	
부자+기타	30.2	69.8	100.0(53)		6.3	43.8	50.0	100.0(16)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Ⅳ-4-9〉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49.0	51.0	100.0(400)		6.6	48.5	44.9	100.0(19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6.7	33.3	100.0(78)	27.8(3)***	13.5	55.8	30.8	100.0(52)	n/a
100~200만원	54.7	45.3	100.0(159)		5.7	52.9	41.4	100.0(87)	
200~300만원	42.0	58.0	100.0(81)		2.9	44.1	52.9	100.0(34)	
300만원 이상	28.0	72.0	100.0(82)		0.0	21.7	78.3	100.0(2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9.1	60.9	100.0(133)	8.2(3)*	7.7	46.2	46.2	100.0(52)	n/a
초등 저학년	52.5	47.5	100.0(122)		7.8	42.2	50.0	100.0(64)	
유아기	54.1	45.9	100.0(98)		7.5	47.2	45.3	100.0(53)	
영아기	57.4	42.6	100.0(47)		0.0	70.4	29.6	100.0(27)	

(표 Ⅳ-4-9 계속)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가구구성									
모자	59.3	40.7	100.0(226)	44.1(3)***	6.7	50.7	42.5	100.0(134)	n/a
모자+기타	51.7	48.3	100.0(89)		8.7	52.2	39.1	100.0(46)	
부자	6.3	93.8	100.0(32)		0.0	50.0	50.0	100.0(2)	
부자+기타	26.4	73.6	100.0(53)		0.0	14.3	85.7	100.0(14)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제도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59.5% 정도 이었고, 지원 대상일 경우에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모자와 모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Ⅳ-4-10 참조).

방과후 보육료 제도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63.8%로 높았다. 자녀 연령이 초등 저학년인 집단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보다 낮았다. 모자가구에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지원 여부가 각각 69.9%, 54.4%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Ⅳ-4-11참조).

〈표 Ⅳ-4-10〉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59.5	40.5	100.0(400)		36.6	17.6	45.8	100.0(23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8	28.2	100.0(78)	15.3(3)**	51.8	19.6	28.6	100.0(56)	12.4(6)
100~200만원	64.8	35.2	100.0(159)		35.9	17.5	46.6	100.0(103)	
200~300만원	50.6	49.4	100.0(81)		26.8	19.5	53.7	100.0(41)	
300만원 이상	46.3	53.7	100.0(82)		26.3	13.2	60.5	100.0(38)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45.9	54.1	100.0(133)	22.8(3)***	19.7	16.4	63.9	100.0(61)	27.1(6)***
초등 저학년	57.4	42.6	100.0(122)		25.7	20.0	54.3	100.0(70)	
유아기	74.5	25.5	100.0(98)		52.1	16.4	31.5	100.0(73)	
영아기	72.3	27.7	100.0(47)		55.9	17.6	26.5	100.0(34)	

(표 Ⅳ-4-10 계속)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가구구성									
모자	65.5	34.5	100.0(226)	21.6(3)***	37.2	16.9	45.9	100.0(148)	n/a
모자+기타	65.2	34.8	100.0(89)		44.8	22.4	32.8	100.0(58)	
부자	40.6	59.4	100.0(32)		15.4	23.1	61.5	100.0(13)	
부자+기타	35.8	64.2	100.0(53)		21.1	5.3	73.7	100.0(1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Ⅳ-4-11〉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방과후 보육료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63.8	36.3	100.0(400)		43.9	15.7	40.4	100.0(255)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67.9	32.1	100.0(78)	4.7(3)	52.8	11.3	35.8	100.0(53)	58.1(6)***
100~200만원	65.4	34.6	100.0(159)		64.4	15.4	20.2	100.0(104)	
200~300만원	66.7	33.3	100.0(81)		25.9	20.4	53.7	100.0(54)	
300만원이상	53.7	46.3	100.0(82)		6.8	15.9	77.3	100.0(44)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68.4	31.6	100.0(133)	11.5(3)**	49.5	12.1	38.5	100.0(91)	6.7(6)
초등 저학년	71.3	28.7	100.0(122)		48.3	14.9	36.8	100.0(87)	
유아기	52.0	48.0	100.0(98)		33.3	19.6	47.1	100.0(51)	
영아기	55.3	44.7	100.0(47)		30.8	23.1	46.2	100.0(26)	
가구구성									
모자	69.9	30.1	100.0(226)	10.8(3)*	54.4	12.7	32.9	100.0(158)	21.6(6)**
모자+기타	60.7	39.3	100.0(89)		31.5	20.4	48.1	100.0(54)	
부자	46.9	53.1	100.0(32)		33.3	13.3	53.3	100.0(15)	
부자+기타	52.8	47.2	100.0(53)		14.3	25.0	60.7	100.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드림스타트 제도에 대해서는 54.8% 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49.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인지 및 수혜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모자로 구성된 가족유형에 비해 부

자와 부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대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Ⅳ-4-12〉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드림스타트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df)$
전체	54.8	45.3	100.0(400)		49.3	29.2	21.5	100.0(21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8.2	21.8	100.0(78)	70.3(3)***	57.4	29.5	13.1	100.0(61)	37.9(6)***
100~200만원	67.9	32.1	100.0(159)		53.7	31.5	14.8	100.0(108)	
200~300만원	38.3	61.7	100.0(81)		41.9	29.0	29.0	100.0(31)	
300만원 이상	23.2	76.8	100.0(82)		10.5	15.8	73.7	100.0(19)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48.1	51.9	100.0(133)	5.2(3)	56.3	23.4	20.3	100.0(64)	3.9(6)
초등 저학년	54.9	45.1	100.0(122)		49.3	26.9	23.9	100.0(67)	
유아기	58.2	41.8	100.0(98)		43.9	33.3	22.8	100.0(57)	
영아기	66.0	34.0	100.0(47)		45.2	38.7	16.1	100.0(31)	
가구구성									
모자	65.9	34.1	100.0(226)	40.1(3)***	51.7	28.9	19.5	100.0(149)	n/a
모자+기타	53.9	46.1	100.0(89)		41.7	35.4	22.9	100.0(48)	
부자	28.1	71.9	100.0(32)		77.8	22.2	0.0	100.0(9)	
부자+기타	24.5	75.5	100.0(53)		30.8	15.4	53.8	100.0(13)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임대주택 우선순위 제도에 대해서는 7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낮고, 모자와 모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유형에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임대주택 우선순위 지원 수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5% 이었는데,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기타구성원 없이 모자 혹은 부자가구인 집단에서 지원 수혜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Ⅳ-4-13참조).

〈표 Ⅳ-4-13〉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임대주택 우선순위

단위: %(명)

구 분	인지 여부				수혜여부				
	예	아니요	계(수)	x^2 (*df*)	예	아니요	해당 대상 아님	계(수)	x^2 (*df*)
전체	75.5	24.5	100.0(400)		25.5	47.0	27.5	100.0(30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5.9	14.1	100.0(78)	38.9(3)***	40.3	46.3	13.4	100.0(67)	52.4(6)***
100~200만원	86.2	13.8	100.0(159)		29.9	51.1	19.0	100.0(137)	
200~300만원	66.7	33.3	100.0(81)		16.7	46.3	37.0	100.0(54)	
300만원 이상	53.7	46.3	100.0(82)		0.0	36.4	63.6	100.0(44)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73.7	26.3	100.0(133)	1.4(3)	25.5	41.8	32.7	100.0(98)	9.7(6)
초등 저학년	75.4	24.6	100.0(122)		27.2	46.7	26.1	100.0(92)	
유아기	79.6	20.4	100.0(98)		28.2	43.6	28.2	100.0(78)	
영아기	72.3	27.7	100.0(47)		14.7	70.6	14.7	100.0(34)	
가구구성									
모자	85.0	15.0	100.0(226)	33.0(3)***	32.3	45.3	22.4	100.0(192)	27.3(6)***
모자+기타	71.9	28.1	100.0(89)		10.9	60.9	28.1	100.0(64)	
부자	50.0	50.0	100.0(32)		31.3	37.5	31.3	100.0(16)	
부자+기타	56.6	43.4	100.0(53)		10.0	33.3	56.7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2) 만족도

한부모 지원사업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가 3.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방과후 보육료와 임대주택 우선순위가 3.3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드림스타트가 3.2점,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3.0점 순이었다. 반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이 2.3점으로 가장 낮고, 학용품 지원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2.5점, 아동양육비 지원 2.7점, 생활보조금 지원 2.8점으로 3점 미만이었다(그림 Ⅳ-4-7, Ⅳ-4-8 참조).

이상의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에 대해 구체적인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용품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49.0%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집단이 4점 척도에 평균 2.0점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초등 고학년 자녀의 경우에도 2.3점으로 낮은 편이었다(부표 Ⅳ-4-2 참조).

둘째,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에 대해서는 48.1%가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모자 가구에서는 평균 2.1점의 만족도를 보여 다른 가족유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부표 Ⅳ-4-3 참조).

셋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제도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 3.4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300만원 이상 가구소득인 집단에 비해 100~200만원 소득 집단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자녀 연령이 유아기인 집단에서는 평균 3.2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부표 Ⅳ-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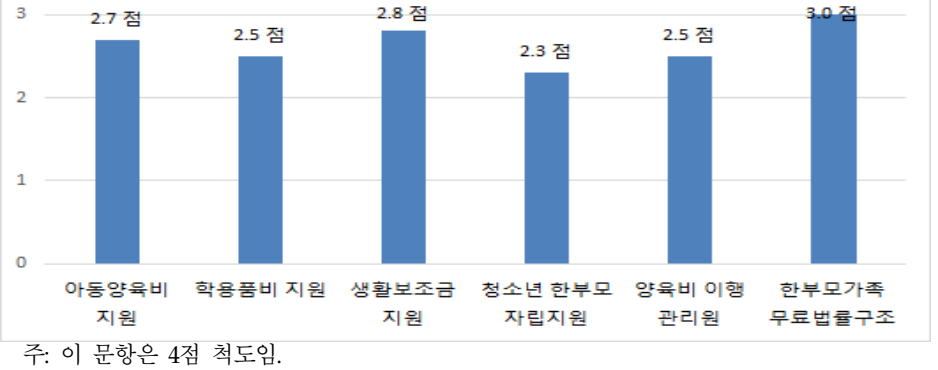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7〕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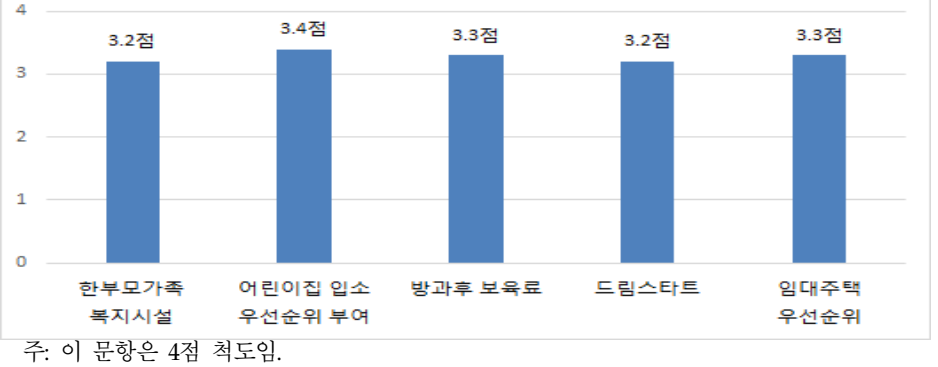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8〕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2)

3) 필요성

한부모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제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부여, 방과후 보육료, 임대주택 우선순위 제도는 3.8점으로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그림 Ⅳ-4-9, Ⅳ-4-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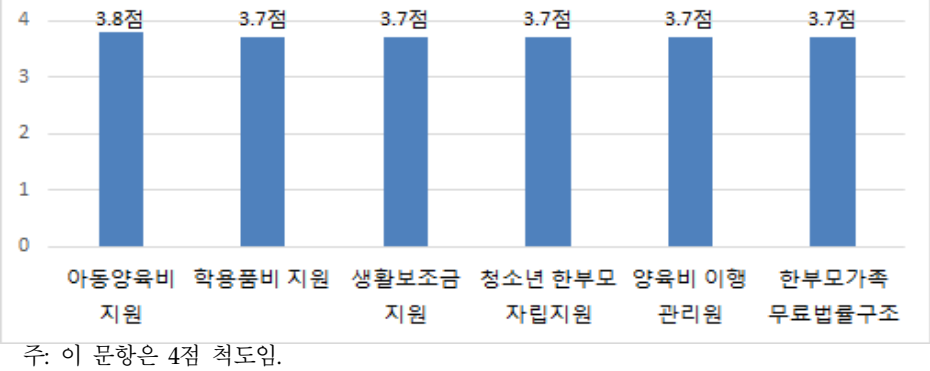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9〕 지원제도 필요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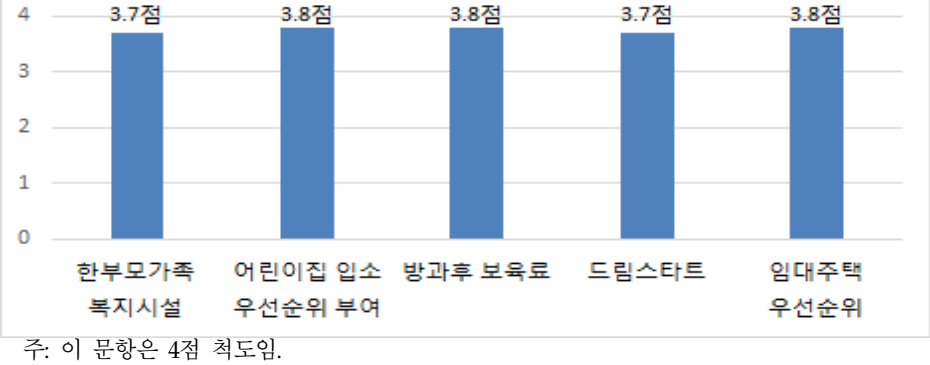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10〕 지원제도 필요성(2)

한부모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제도는 모자가구에서 유의하게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하였다(표 Ⅳ-4-14 참조).

〈표 Ⅳ-4-14〉 한부모 지원제도 필요성(1)

단위: 점(명)

구 분	아동 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	한부모 가족 무료 법률 구조
전체	3.8(316)	3.7(277)	3.7(218)	3.7(183)	3.7(221)	3.7(20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9(72)	3.8(66)	3.8(50)	3.9(42)	3.8(53)	3.8(57)
100~200만원	3.8(139)	3.8(125)	3.8(92)	3.8(77)	3.8(105)	3.7(92)
200~300만원	3.6(59)	3.6(51)	3.6(40)	3.5(38)	3.6(34)	3.7(34)
300만원 이상	3.6(46)	3.5(35)	3.6(36)	3.3(26)	3.5(29)	3.5(26)
F	3.9**	3.3*	1.9	5.3**	2.5	1.8
가구구성						
모자	3.9(192)	3.8(176)	3.8(127)	3.8(111)	3.8(141)	3.8(130)
모자+기타	3.6(73)	3.6(60)	3.6(51)	3.5(43)	3.7(55)	3.6(55)
부자	3.5(22)	3.6(18)	3.6(15)	3.6(11)	3.5(12)	3.3(8)
부자+기타	3.7(29)	3.6(23)	3.6(25)	3.4(18)	3.3(13)	3.5(16)
F	4.2**	1.7	1.2	3.2*	3.0*	3.2*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부여, 드림스타트 역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부여와 드림스타트는 모자가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기타구성원이 없는 가족유형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부자가구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임대주택 우선순위는 부자가구에서 낮게 평가한 반면 모자가구에서는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4-15〉 한부모 지원제도 필요성(2)

단위:점(명)

구 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방과후 보육료	드림 스타트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체	3.7(196)	3.8(238)	3.8(255)	3.7(219)	3.8(30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9(52)	4.0(56)	3.8(53)	3.8(61)	3.9(67)
100~200만원	3.8(87)	3.8(103)	3.8(104)	3.8(108)	3.8(137)
200~300만원	3.5(34)	3.6(41)	3.7(54)	3.5(31)	3.6(54)
300만원 이상	3.5(23)	3.7(38)	3.6(44)	3.3(19)	3.6(44)
F	5.2**	4.1**	1.7	5.2**	2.5
가구구성					
모자	3.8(134)	3.9(148)	3.8(158)	3.8(149)	3.8(192)
모자+기타	3.6(46)	3.7(58)	3.6(54)	3.6(48)	3.7(64)
부자	4.0(2)	3.6(13)	3.6(15)	3.4(9)	3.4(16)
부자+기타	3.3(14)	3.7(19)	3.6(28)	3.3(13)	3.7(30)
F	4.4**	2.8*	2.5	3.9**	3.1*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한부모 지원제도 지원의 미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경우 신청(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가까이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과 방과후 보육료는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높은 편이다. 드림스타트와 임대주택 우선순위는 기타가 30%대로 높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첨에서 탈락의 문제, 알지 못해서, 경제적 문제 등의 사유이다. 또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알지 못해서, 전배우자와 연관되고 싶지 않아서 등의 기타 사유가 있었다.

〈표 Ⅳ-4-16〉 한부모 지원제도 지원 미신청 이유

단위: %(명)

구 분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신청(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타	계(수)
1) 아동양육비 지원	4.5	31.8	50.0	13.6	100.0(22)

(표 Ⅳ-4-16 계속)

구 분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신청(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타	계(수)
2) 학용품비 지원	13.3	6.7	73.3	6.7	100.0(15)
3) 생활보조금 지원	27.3	15.2	48.5	9.1	100.0(33)
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0.0	8.0	48.0	4.0	100.0(25)
5) 양육비 이행 관리원	29.3	6.5	36.6	27.8	100.0(123)
6)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52.1	4.2	34.5	9.2	100.0(119)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0.5	8.4	25.3	15.8	100.0(95)
8)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52.4	16.7	19.0	11.9	100.0(42)
9) 방과후 보육료	30.0	20.0	32.5	17.5	100.0(40)
10) 드림스타트	21.9	12.5	26.6	39.0	100.0(69)
11) 임대주택우선순위	25.4	3.5	33.1	38.1	100.0(1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면담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 비용 지원에 해당하였으며, 자녀들은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 초등 방과후 과정이나 돌봄 교실, 스포츠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지원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들은 공공기관이나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들을 통해 제공되기도 하지만 자생적으로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면담참여자마다 달랐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저희가 오히려 다 알아서 ‘이거 해 주세요’라고 가야되는데, 저희도 만약 정보를 모르면 아이가 지원을 받는 게 하늘에 별 따기에요.”(참여자01)

> “항의도 많이 했어요. 왜 동사무소에서는 안 된다는 말만하고 되는 방향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받는 거죠.”(참여자09)

"한부모가 되면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잘 모르겠고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혼할 때 한부모가 되는 쪽한테 한부모는 애를 키우면서 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힘들 때는 여기다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면 좋겠어요."(참여자04)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면담참여자들은 자신의 소득 확충이 생계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고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한부모가족 대상의 다양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모순을 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초 수급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세 식구니까 한 달에 백 얼마를 넘으면 안되요. 근데 이제 가차 없이 수급비 탈락이 되어버리면 한 달에 내가 버는 백만원, 백이십만원, 백오십만원으로 해서는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솔직히 힘들거든요."(참여자12)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10만원 더 받는 게 나으니까 내가 그 쪽 회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본 4만원이 초과되었대요, 그래서 12만원인가 받던 거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부모인 사람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최저소득을 유지해야한다는 거잖아요."(참여자04)

"이혼해서 양육비 받으면 돈 십만원 못 받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닌가요? (중략) 또 웃긴 건 내가 그 돈 받자고 월급 센 데를 못가요. 십 만원, 이십 만원 받자고. 저소득 한부모는 계속 저소득 한부모여야 한다는 거죠"(참여자02)

"내가 한 달 간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도 바로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정말 내가 에이 일하면 뭐하냐,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이 돈을 받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정말 대대손손이 제 생각엔 거지 근성을 만드는 건데, 복지가 잘못하면 정말 평생 대대손손 거지 근성을 만들어주는 건데…"(참여자12)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좀 더 많은 일자리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상한선과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가 악순환 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일정한 소득수준을 계속 유지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급대상에서 바로 탈락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탈락이 되어도 어느 정도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은 수급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은 이로 인해 종종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셋째, 면담참여자들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였다.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부모에 대한 편견을 느끼기도 하였다.

> "나랏돈을 받아야 하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고 어렵고,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한부모 된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선이 그게 아니야."(참여자01)

이처럼 한부모는 자신에 대한 주위의 편견어린 시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들이 한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왜곡된 인식을 경험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면담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래 관계에서도 따돌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 "우유급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우유를 집으로 보내와요. 근데 그거 신청할 때 보면, 아이가 안내문을 갖고 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나눠줄 때에는 우리 아이한테만 나눠주는 거잖아요. (중략) 아이들이 있는 데서 줬구나. 아이가 조금 크면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참여자08)

> "학교에서 오는 가정방문을 꼭 그런 가정을 고르는 거예요. 꼭 그런 가정이 불편하진 않잖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게 차별인 것 같아요. 왜 부모가 다 있어도 애가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한쪽이 없다고 해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왜 얘네 집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자체가 저는 차별인거에요. (중략) 아이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지만 약간 느끼는 것 같긴 해요."(참여자10)

넷째, 자녀양육과 관련된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 중에서 자녀가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돌봄이나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나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학습, 그리고 학습적인 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연령과 상관없이 체험학습이나 문화적인 여가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학령기 자녀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드림스타트에서 담당자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 때 2박 3일로 동해 쪽에 청소년수련관가서 애들 수상레저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참여자05)

"기본적인 학원을 보내는데 돈이 부담이 되니까. 솔직히 내가 이걸 보내야 되는데 이걸 부담스러워서 (중략) 어차피 지원해서 줄거면 그냥 동네 보습학원 수강권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참여자 04)

"애들 교육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증익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금액 안에서 좀 더 할인을 받아서…"(참여자 10)

라. 자조모임 참여

한부모가족 모임이나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65.0%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조모임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응답자의 11.0%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여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고,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와 부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Ⅳ-4-17〉 한부모가족 모임·행사 참여 여부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요	계(수)	$x^2(df)$
전체	35.0	65.0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0	50.0	100.0(78)	37.0(3)***
100~200만원	44.7	55.3	100.0(159)	
200~300만원	25.9	74.1	100.0(81)	
300만원 이상	11.0	89.0	100.0(82)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2.3	67.7	100.0(133)	1.6(3)
초등 저학년	39.3	60.7	100.0(122)	
유아기	34.7	65.3	100.0(98)	
영아기	31.9	68.1	100.0(47)	
가구구성				
모자	42.5	57.5	100.0(226)	16.7(3)***
모자+기타	31.5	68.5	100.0(89)	
부자	25.0	75.0	100.0(32)	
부자+기타	15.1	84.9	100.0(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 활동이 47.9%로 가장 높고, 행사(39.3%), 친목 모임(28.6%), 자녀양육정보 교류(23.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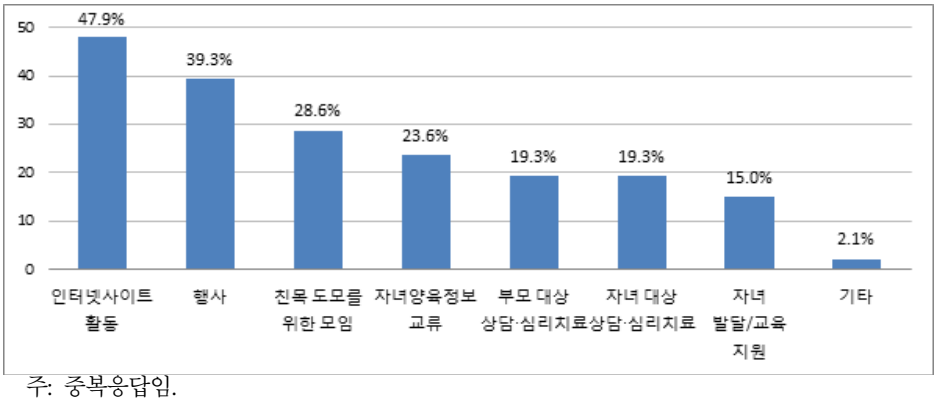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11〕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참여 유형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3점인 부모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자녀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자녀 발달 및 교육지원이 가장 높았고,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도 3.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행사와 자녀양육 정보 교류(3.0점), 인터넷 사이트 활동(2.9점)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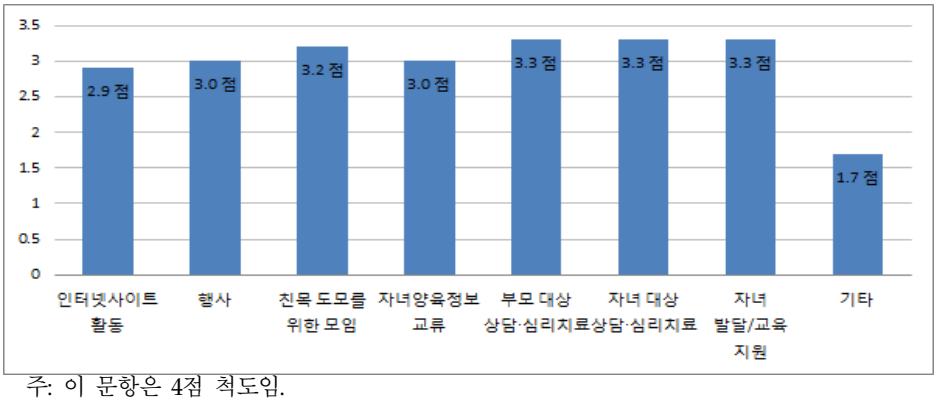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4-12〕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 정도

한부모가구 특성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사이트(카페 등)에서의 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는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7점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 수 1명인 집단은 2.8점이고, 2명은 3.0점이다(부표 Ⅳ-4-5 참조).

둘째, 부모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움정도는 평균 3.3점이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집단에서 3.5점으로 1명인 집단(3.1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부표 Ⅳ-4-6 참조).

셋째, 자녀 대상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도움 정도는 평균 3.3점이었고, 사별로 인한 한부모의 경우 4.0점, 이혼 3.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표 Ⅳ-4-7 참조).

심층면담에서 드러난 자조모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많이 축소되거나 단절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자조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자조모임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동질성이 확보된 집단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매우 의미 있는 관계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 “저는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서로 많이 의지하는 느낌. 안 그랬으면 안 그래도 우울증 있는데 더 우울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참여자09)

> “자조모임 하니까 가서 얼굴도 보고 뭐 그러면서 서로 힘들었던 거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 나는 이런 점이 힘든데 저 분은 저런 점이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저렇게 됐을 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서로서로 공유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중략) 나는 그런 얘길 하다보면 굉장히 한부모들한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점, 좋은 점, 나쁜 점 다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12)

5. 소결

한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특성별(자녀연령, 가구구성원, 가구소득 등) 자녀양육 및 지원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 영유아기 자녀와 초등학령기 자녀

한부모가족 특성 중 자녀연령과 관련한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은 유아기가 되면 초등학령기 자녀와 비슷한 수준이다. 영아기에만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4시간 미만의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유아기부터는 자녀 돌봄을 기관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의 방학이 되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자신이 직접 돌보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자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는 한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어려움이 크다. 취업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는 어린이집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는 시간이 있고 주말에는 그 또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 형태가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초등학령기가 되어 상황이 조금 개선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반이나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면서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었으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하교시간 이후 방과후교실을 이용한다 해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에서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므로 한부모가족이 처음 되었을 때 그 부담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된다고는 설명할 수 없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좀 더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막막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부담은 커져서 이후 대학 진학 여부와 등록금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셋째,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스턴트식품 섭취 빈도는 높아지고 주5일 이상 신선한 과일과 야채, 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 고학년이 되면 두드러지는데 이 시기에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면담에서도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편의점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한부모는 자녀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나. 부자가구와 모자가구

한부모가족 특성 중 가구구성원과 관련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공통점은 한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이다.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 배우자가 집안일이나 자녀 돌봄에 기여를 크게 하지 않았다 해도 한부모가 되고 나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밀려오며, 실제 생활에서도 역할 수행 시 시간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부자가구보다 모자가구에서 자녀양육 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중 사교적지지의 경우 기타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보다는 부자 혹은 모자만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에게서 더 낮게 보고되었다.

이처럼 가구구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모자가구가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모자가구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수혜를 받는 비율이 높았는데, 모자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사회적지지망이 취약하므로 제도적인 지원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조모임에 참여한 한부모는 부나 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자조모임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며, 부자가구보다는 모자가구가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협소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느끼는 여성한부모들이 한부모가족을 위한 모임이나 행사에 좀 더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생계유지와 자녀 돌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심리적으로도 늘 분주하게 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친인척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거나 단절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부자가구와 모자가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었다.

셋째, 한부모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및 자아탄력성을 평가한 결과 보통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한부모는 남성한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의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모자가구에서 자녀양육 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더 높았다. 또한 모자 혹은 모자+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전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수령한다는 응답이 부자 혹은 부자+기타구성원 가구에 비해 높았고 수령금액 또한 더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어렵거나 경력단절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 이후 전배우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여성한부모가 남성한부모에 비해 많음을 보여준다. 양육비는 자녀양육에 있어 부와 모가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는 인식에서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으로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자가구보다는 모자가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성한부모가 남성한부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좀 더 관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가구소득

한부모가족 특성 중 가구소득과 관련한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불안감과 양육 시 정서적 부담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양육 불안감은 더 높게 나타나며, 양육 시 정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와 자녀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조절능력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한부모와 자녀 모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한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지지에 있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도구적지지와 사교적지지를 받는 정도가 낮았다. 즉,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또한 적었다.

셋째, 자녀의 생활에서도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가 신체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먹는 횟수가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으며, 실제 자녀들의 불균형적인 식생활

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넷째, 한부모가 된 후 부모교육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직장 근무로 인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낮은데, 육아휴직 미사용자들의 미사용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Ⅴ. 정책 제언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면담, 실무자와의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한부모가족이 가지는 동질성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이라는 외형적 동질성 내에서 각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개별성에도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지원 제도들이 한부모가족 혹은 저소득 계층이라는 외형적인 범주에 근거하였다면, 앞으로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과 차이점, 또는 보편성과 다양성의 균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즉, 한부모가족 전체를 지원해야 할 사항과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 공통: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한부모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들의 지원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지원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을 하므로 이러한 공공기관에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양육을 담당하는 부 혹은 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정보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 제언들에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나. 자녀연령을 고려한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육아지원 혹은 자립 지원 방안 마련 시 자녀의 연령대나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연령에 따라 가족생활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필요한 지원 요구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 돌봄을 선택하면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가 크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 없이 자녀양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시간이 발생할 때 자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아이돌보미서비스, 일시보육 서비스 등이 있지만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보제공 및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에 알맞은 공급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들은 저학년 시기부터 방과 후에는 혼자서 여러 기관을 다니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부모로부터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은 적어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자조모임이나 관련 단체에서 멘토-멘티 혹은 학습 지원 등의 이름으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령기의 한부모의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수요가 수시로 파악되고, 각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이 잘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

지 개인적인 이유 혹은 낙인을 두려워하여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 방안이 절실하다. 그리고 돌봄 지원의 한 형태로 방과후에 자녀의 학습이나 식사 등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정으로 직접 파견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유용하겠다. 지역별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한부모 관련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들이 식사를 위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메뉴는 인스턴트식품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급식카드 등 식생활 지원에 있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영양과 성장을 고려하여 이용 식당을 선정하는 등 정책에 있어 세밀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들은 학교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으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 가족구성을 고려한 지원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 부자가구 혹은 기타구성원이 있느냐에 따라 그 생활은 다르게 나타나며 요구하는 지원 또한 차이를 보인다.

1) 모자가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자가구는 부자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 취약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또한 모자가구는 여성이 곧 양육자라는 인식으로 양육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모자가구의 자립 혹은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으며, 여성 한부모를 양육자로서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고 이혼의 경우 모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혼 시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2) 부자가구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가구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부자가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아동이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부자가구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자녀의 생활에서 결식 비율은 높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전형적으로 어머니들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교 참여에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성 한부모에게는 자녀양육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성 한부모 자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요리교실, 학교 내 아버지회의 활성화 등이 있겠다.

3) 기타 가구구성원의 유무

부나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보다 기타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주거지를 제공하였거나 집안일이나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는 등 한부모에게 중요한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기타구성원의 존재에 따라 한부모가 혼자 가구소득을 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기도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모자가구 혹은 부자가구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할 때 조부모 등의 기타 가구구성원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역할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면 지원 내용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게 된다.

한편 자녀가 한 명일 때와 여러 명일 때 자녀의 생활에는 차이를 갖는다.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경우 부모가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가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익이지만 오히려 어린 연령부터 성인의 돌봄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손위형제자매들의 고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 따라 사업 내용을 세분화할 수는 없겠으나, 사례관리 등의 각 가정에 개별적인 지원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구구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그 가족구성원 각각에게 알맞은 지원이 연계·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라.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

1) 취업여부

본 연구에서 미취업 한부모인 경우 어린 연령의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자녀 돌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정책 대상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면서 한부모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취업 한부모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있어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방과후 보육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취업 한부모라면 맞벌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1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초등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은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보육 해당 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이나 그 공급에 있어 확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보육을 개선하거나, 만약 방과후 보육이 축소된다면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확대 시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경력을 유지하면서 직접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제도를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도 육아휴직 이용 시 급여수준이 낮아지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 소득수준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즉,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은 취업여부에 따른 지원과는 다른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거, 건강, 자녀양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가. 부모와 자녀를 함께 지원

부모와 자녀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과 부모-자녀 간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한부모가 부모로서 갖는 부담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서적 접근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녀들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나 지역사회의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 활동에 자녀가 혹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큰 만족감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 자녀까지만 이용 가능하지만 드림스타트를 통해 누리던 문화 활동 혹은 가족 참여 활동은 자녀가 중고등학생 시기가 되어도 필요하므로 또 다른 이용 경로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자녀들도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의 방과후교실이나 학원 등지에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학습 지원보다 문화적 혜택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제공할 때 좀 더 흥미로워하며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의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문화 자원이 좀 더 많아진다면 이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유용한 지원이 될 것이다.

나. 부모역할 지원

본 연구에서 한부모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상당히 가지고 있으

며,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모역할 지원에 대한 요구는 3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는 부모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므로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시간적 여유의 한계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이나 결핍 의식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여건 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취업 한부모의 경우 그리고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안에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 돌봄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할 것이다. 또한 평일보다는 주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서 취업 한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취업 중 부모에게 평일 근무시간 중에도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면 일정 시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한부모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역할 과부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모역할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중압감을 느끼고 역할과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 시 한부모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쉼을 얻는 동시에 양육기술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운 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착될 필요가 있다.

다. 심리·정서적 지원

현재 마련되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들은 저소득계층의 한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임에도 한부모가 아닌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들은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도 자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에 있어서도 자녀양육 측면에서도 그 필요와 욕구는 달라진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한부모라는 범주가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부나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부모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볼 수 있겠다.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가 그것을 극복하고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가는 데 겪는 고유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재정립

이혼가구의 경우 한부모와 전배우자 간에 부부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나 자녀에게는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전배우자) 모두 여전히 부모이다. 또한 비양육부모의 적절한 양육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혜숙, 2013).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친권을 가지고 양육을 전담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양육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에 개입해야 하며,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물론 비양육부모의 가정폭력 등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자녀와의 만남 등 여러 형태로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하겠다. 전문가들은 비록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이 자녀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화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며,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락과 만남을 통해 관계는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에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3. 경제적 지원책의 개선

가.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 상향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은 2017년 현재 그 대상은 자녀 연령 13세 미만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월 12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 연령인 18세에 미달하는 연령이며, 그 지원 수준 또한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까지 아동양육비의 수준을 상향해오고 연령 기준도 확대해오고 있는 만큼(예: 2016년에는 12세 미만, 월 10만원이었음) 향후 그 지원대상이 만 18세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은 현행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나 일반가정의 양육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지원될 수 있어야 하겠다.

나. 지원 기준 개선

현재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2%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직장에서의 급여 인상이 지원 대상에서의 탈락을 야기하였으나 오히려 그 가정의 총 수입은 줄어드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들도 단순히 월 소득 금액만으로 지원대상의 탈락 여부가 결정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원 기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유예기간을 가지거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소득이 아니라 지원 금액까지 포함한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도록 세밀하게 접근하여야 하겠다.

한편 저소득 중심의 지원 제도는 그들을 저소득 계층을 남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저소득에 머물러 계속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한부모가족의 주요 이슈인 돌봄 공백의 감소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때 양부모가 즉, 부와 모가 가정 내에서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도 중요하겠으나 한 개인에게서 일과 가정(개인)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자녀 돌봄의 문제는 단지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맞벌이가족에게도 해당되지만 특히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단절,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 열악한 주거 환경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돌봄의 공백과 그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혜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맞벌이 부모라는 정해진 틀에서의 정책 수립이 아닌 한부모와 같이 혼자서도 자녀 돌봄과 직업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의 실무자들은 한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진다면 맞벌이 부모의 그것은 이미 가능해져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자녀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양부모가정 또한 그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부모가 직접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아니므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취업 한부모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근로, 육아휴직 등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한부모가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부모가족에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부와 모 두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한부모는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한부모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한부모들의 자녀양육 시간 확보를 위해 가사일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에 앞서 한부모가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우선 고려하여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방안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 중에 자녀 돌봄이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훈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얻는 데 까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부모가 한부모가 아

닌 이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5.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한부모 자신이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은 주변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한부모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 사례도 있었지만 다수는 그것을 주변인에게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였다. 한부모가족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 역시 한부모들이 스스로 자신이 한부모임을 사회적 낙인으로 여기고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한부모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한다.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녀양육에 있어 너무 허용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엄격한 태도를 갖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한부모에게 갖는 편견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 수용적으로 바뀌어 졌다고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실제 느끼는 것은 달라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 집단 내 인식 제고와 함께 사회적으로 한부모가족에게 편견을 갖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먼저 한부모 스스로 인식을 변화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지만 한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잘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편견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간담회에 따르면, ‘부모참여’ 등 부와 모가 함께 있는 양부모 가정을 전제로 하는 용어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보육 혹은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부모들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가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을 담임교사나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학교 참여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교사들은 개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접근하고 싶어도 그 가정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 아동이 한부모가족임이 알려져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5, 50-59.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지·장혜경·최인희·김소영·선보영·최혜진·김재아·김나연(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숙(2013). 한국 이혼가정 아동의 성장: 위험과 자원. 서울: 집문당.

도남희·배윤진·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2009). 아동복지론. 고양: 공동체.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문성희·이대균(2011).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313-335.

박성연·김상희·김지신·박응임·전춘애·임희수(2009).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박진아(2010). 한부모 모자가정의 가정환경변인, 유아변인 및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3), 19-33.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Ⅱ):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보육사업안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서현석·진미정·도유록(2014). 한부모 가족의 '학부모참여'실태와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181-201.

손서희(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59-75.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2017a).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04.16.). 한부모가족,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한유진·최유경·권기남(2015).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이영호(2015)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 해결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7-168.

이정빈(2013).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499-532.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임성은(2010).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장명선(201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8(1), 1-35.

장명선·이영호(2016).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방안 모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41-163.

정옥분·정순화(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통계청 보도자료(2017.04.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Alessandri, G., Vecchio, G., Steca, P., Caprara, M. G., & Caprara, G. V. (2008). A revised version of Kremen and Block's Ego-Resiliency Scale in an Italian sample. 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14, 1–19.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Falk(2014).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Eligibility and benefit amounts in state TANF Cahs Assistance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amner, T. J., &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Allyn & Bacon.

Heatherington, E. M., Stanley-Hogan, M., & Anderson, E. R. (1989). Marital transitions: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OECD Family Database (2016). LMF1.1: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OECD Social Policy Division –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Family Database (2016). SF1.2: Children in Families. OECD Social Policy Division –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Family Database (2016). SF1.3: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 OECD Social Policy Division –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Rostgaard, T. (2014). Family policies in Scandinavia.

Tinsley, M. (2014). Parenting Alone, Work and Welfare in signel parent households. UK: Policy Exchange.

Tsushima, T. & Gecas, V. (2001). Role and Socialization in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2, 267-288.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 지원서비스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4_01.asp (인출일: 2017년 8월 22일)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개.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56C58/contents.do. (인출일: 2017년 8월 23일)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인출일: 2017년 8월 23일)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 지역별추가지원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인출일: 2017년 6월 23일)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2005~2015).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920&stts_cd=292002&freq=Y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한부모가구 비율(2010~20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인출일: 2017년 2월 17일)

FederalStudentAid, A Fen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is a grant for undergraduate students with exceptional financial need.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fseog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HealthCare.gov,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https://www.healthcare.gov/medicaid-chip/childrens-health-insurance-program/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HUD.GOV. HUD's Public Housing Program.
https://www.hud.gov/topics/rental_assistance/phprog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IRS.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earned-income-tax-credit-questions-and-answers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Medicaid.gov, Eligibility.
https://www.medicaid.gov/medicaid/eligibility/index.html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Medicaid.gov, List of Medicaid Benefits.
https://www.medicaid.gov/medicaid/benefits/list-of-benefits/index.html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LIHE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nsumers.

https://www.acf.hhs.gov/ocs/resource/consumer-frquently-asked-questions#Q11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Office of Family Assistance. About TANF. https://www.acf.hhs.gov/ofa/programs/tanf/about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Section 8 Housing. What is Section 8? https://section-8-housing.org/What-is-Section-8-Housing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Single Mother Guide. Grants for Single Mothers. https://singlemotherguide.com/grants-for-single-mother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Singlemothersgrants.org. Most helpfu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for Single moms. http://singlemothersgrants.org/most-helpful-government-assistance-programs-for-single-mom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Support to help lone Parents into work.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pport-to-help-lone-parents-into-work (인출일: 2017년 11월 27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6). Food and Nutrition Service Nutrition Program Fact Sheet. 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tefap/pfs-tefap.pdf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U. S. Census Bureau-Table FG10. Family Groups(2016)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mo/tables/families/2016/cps-2016/tabfg10-all.xls. (인출일: 2017년 10월 13일).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LIHE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onsumers. https://www.acf.hhs.gov/ocs/resource/consumer-frquently-asked-questions#Q11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ility.

https://www.fns.usda.gov/snap/eligibility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About WIC- WIC at a Glance. https://www.fns.usda.gov/wic/about-wic-wic-glance (인출일: 2017년 10월 16일)

U. 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Pell Grant Program. https://www2.ed.gov/programs/fpg/index.html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https://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uifactsheet.asp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Department of Education. Louisiana Believes.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http://www.louisianabelieves.com/early-childhood/child-care-assistance-program (인출일: 2017년 10월 19일)

Office of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https://energy.gov/eere/wipo/weatherization-assistance-program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Office of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Where to Apply for Weatherization Assistance. https://energy.gov/eere/wipo/where-apply-weatherization-assistance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Office of Head Start.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Head Start Programs.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인출일: 2017년 10월 18일)

Abstract

Customized child-rearing supporting measures (Ⅲ): Current status and supporting strateg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Yun-Jin Bae Sook In Cho Moonyoung Ja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current situations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ir needs that are based on the families' characteristics (e.g., child age, family composition, income etc.)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ies to promote single-parent families' overall quality of lif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divorced or widowed single-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aged between 0 and 11 years old (preschoolers and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Fir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s and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ere described so as to help the reader understand the current trend and directions of supporting systems. Second, data of 'A Study on the Status of Sole-Parent Families (Kim et al., 2015)' was reanalyzed with selected samples which only contained single-parent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ged 0-11 years old. Third, 400 single mothers and single fathers reported characteristics of child-rearing (e.g., ways that parents care for children, social support for childcare, etc.), parents' and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e.g., self-esteem of parents; children's health condition and developmental level) and parental perceptions of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addition, 17 single parents were interviewed in order to figure out their unique experiences, difficulties in child rearing, and needs for social support in-depth.

Single-parent families with younger children tended more to face difficulties in supporting their children. They particularly suffered from lack of time for caring for children and also from financial burdens. Single-parent families which only consist of a parent and children (without any other

members under the same roof, such as grandparents or other relatives) showed a higher level of stress due to their multiple responsibilities and social isolation. Single-mother families were more vulnerable than any other types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y were more likely to know policies in detail and receive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Family income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were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single parents' anxiety and a low level of social suppor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es need to consider diversity as well as individuality of characteristics and needs in different single-parent families. Ages of children, family composition, employment status of single parents and family income should all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create customized child-rearing support system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single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have positive and supportive perceptions toward single parents who are solely in charge of child-rearing.

부록

부록1. 부표

부록 2.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부록 3. 한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1. 부표

〈부표 Ⅱ-2-1〉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	한부모가족 통합상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맞춤형(야간, 주말) 상담, 다양한 매체(유선, 방문, 온라인) 상담, 조기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한부모자립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 생활코디네어터 1:1 연결을 통한 제도 지원 정보, 주거지원, 자녀양육 등 생활정보 제공, 정서 상담, 양육비 이행 정보제공 및 동행서비스
	한부모가족 특별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관계향상 지원사업: 희망꽃배달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백일·돌 사진촬영 지원, 리프레시 여행 지원
	좋은 부모를 위한 한부모 계속학습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학업 중단 고졸 이하 한부모	좋은부모 미래설계지도(교육 및 상담), 한부모 학업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지원(검정고시), EBS 온라인 및 모바일 강의 지원, 장학금 및 기타지원
부산	자녀양육 지원-학용품비	초등학생	-지원금액: 50,000원/인, 년 -지원시기: 25천원씩 반기별 지원(3, 9월)
	자녀양육 지원-교통비	중·고등생	-지원금액: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지원시기: 2, 3, 5, 9, 11월
	자녀양육 지원-입학준비금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액: 310명 -지원시기: 고교 입학자녀 입학준비금 1인 100천원 지원
	부자가족 주거지원	가구원수 3인 이상 부자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	-주택규모: 전용면적 49.5㎡(15평) 이하 -지원세대: 56세대 170여명 -지원기간: 2년 원칙, 2년 단위로 1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4년) -지원내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시비 100%),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자격상실(최저생계비 130% 초과)시 잔여 임대기간까지 거주 가능하나, 월임대료는 입주자 부담
	질병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기초생활, 시설수급제외)	-지원기준: 실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며, 의료비 본인 선납하고 의료지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건 500천원 이상인 경우 1,000천원 한도내에서 후지원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가구당 연 1,000천원 이내 -신청기한: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가 한부모가족 자립프로그램 지원	한부모가족 사업 하고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내용: 상담·교육·문화체험 등 가족기능·응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선정기관: 4개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프로그램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개소	가족 기능 강화,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관련, 가계 경제관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기타 (지역구별 사업)		-저소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해운대구)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금정구) -생활안정자금 지원(수영구) -한부모가족 자녀 문화체험 행사(수영구) -부자가족 위생용품 지원(수영구)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기장군)
대구	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 자녀	부교재비 1인 4만원/연 1회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비 가구당 5만원/연 1회
	건강검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270명, 1인당 10만원(구·군별 선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비용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직업훈련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연 40명, 직업훈련비(25천원/일), 교통비(5천원/일), 재료비(30천원/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저소득 한부모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 입학자	1인 10만원 정도(예산 범위 내)
세종	활동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내용: 가구당 연 30만원 -시기: 동절기 이전(10월) 일시 지급
	학습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초·중·고생)	-내용: 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40만원 -지원액을 연 2회로 분할 지급(3, 7월) -신청일이 3~4분기에 속하는 경우 연 1회(지원액의 1/2) 지급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중·고등 신입생)	-내용: 연 30만원 지원 -시기: 3월에 지급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통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중·고생)	내용: 연 10만원 지원 방법: 지원액을 연 2회로 분할지급(1, 3분기)
	명절지원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내용: 연 20만원 지원 -시기: 설, 추석(10만원씩 지급)
	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자녀	-기준: 1인 1백만원 이내(예산 내 균등 지원) -방법: 세대주 또는 지원학생 명의 계좌 입금
광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자녀양육비 지원 받지 않는 세대	가구당 월 5만원
대전	자녀생활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계획인원 445명 -사업비 53,400천원(시비 50%, 구비 50%) -1인당 120,000원 지원, 구별 자체교육계획 수립하여 부모·자녀 함께 참여, 인성교육과 가족에 대한 이해, 자기 성장에 긍정적 가치관 성립
	초·중·고 입학생 교재교구비 지원	순수 한부모가정 자녀 초·중·고 입학생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교재교구비 지원(연 1회) -계획인원 1,256명 -사업비 62,800천원(시비 50%, 구비 50%) -2월 신학기 입학 전, 1인당 50,000원, 세대주에 계좌입금
	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계획인원 4,610세대 -사업비 1,014,200천원(시비 50%, 구비 50%)
	한부모가정 자녀 입학축하금 (동구청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교 신입생	-계획인원 71명 -사업비: 1,000천원(구비 100%) -대상자 1인당 140천원 지원 및 입학축하 메시지 발송
	한부모가족 지원후원단체 관리·발굴 (동구청 사업)		후원기관 및 단체 지속적 관리 및 신규 발굴로 협력체계 구축
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세대당 2,000천원 -초등학생 교육교재비: 1인 월 50천원 -중학생 교육교재비: 1인 월 50천원 -고등학생 교육교재비: 1인 월 70천원 -가계지원비: 세대당 월 50천원
	한부모가족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캠프 운영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50세대 시기: 여름 및 겨울, 1박 2일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내용: 가족단위 체험위주 행사 -한부모가족 치료회복사업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40세대 시기: 4월 ~ 12월 내용: 요리, 음악교실, 상담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희망자	-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대상, 기간 6개월이내 - 모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중 아동을 양육 하는 미혼모, 기간 3년이내 - 모자보호시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기간 1년이내 - 모자공동생활가정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기간 2년이내
	모자·미혼모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모자보호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자	세대당 2,000천원
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매월 15,000원/ 12개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대상, 연 30만원/ 동복 및 하복구입비 -생필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가정 1세대 1회당 50,000원 (연2회)
강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세대주 및 가구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연 7만원 -중·고등학생 학습지원비: 연 5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인당 25만원 -난방연료비: 연 30만원(세대당)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 1인당 150만원
	한부모가족 하계수련회 및 견학(춘천)	춘천시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테마파크, 물놀이 체험 등
	삼척시 한부모가족 시책지원사업(삼척)	삼척시 저소득 및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월 3만원 -중·고등학생 참고도서 구입비: 1인 연 12만원 (상·하반기 각6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하복비 1인 8만원 지급 국민기초수급 한부모가족 동복 및 하복비 1인 33만원(동복 25만원 하복 8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평창)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및 자녀	-고등학생 자녀 교과서비 :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난방연료비 : 세대당 3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인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충북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4,793세대)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사업비 958,600천원 -지원금액 세대당 연 200천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2,726명)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학비지원을 통하여 자녀의 학습중단 예방 및 생활안정 도모(80% 시도교육청, 20% 시군 부담) -입학금 지원 1인당 16천원 -수업료 지원 1인당 1,295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에 2년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모자보호시설 입소 후 자립을 준비하여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므로써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 20,000천원 -지원금액 세대당 2,000천원(10세대)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가구	-월동비 가구당 연간 30만원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자녀학습 지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재학생 및 동등 인정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감에 의해 고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통합관리운영, 항목별 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세대별 년 2,000천원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모자가족·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	-모자가족(일시지원)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1인/ 연 600천원 내외(예산범위 내에서 월별 균등배분), 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조손가족 희망키움]	65세 이상 가구주 및 배우자,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거주하는 조손가족(소득불문)	-추진 기관: 15개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 위탁·대행 가능) -조손가족이 어울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15학년도 대학입학자	-졸업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등 수료시 교육부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학교 입학생 지원가능(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 불인정) -납부금 중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지원(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잡비용 지원불가)
전북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①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지원단가 2,000천원/세대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중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제외: 타 시・군에서 기 지원자, 기 지원자 5년이내 지원불가 ② 세대 월동비 지원 -지원단가 200천원/년, 세대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방법: 년 2회(동절기 1월, 10월) 지급 ③ 세대 피복비 지원 -지원단가 50천원/년, 세대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년 1회(3월) 지급 ④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지원단가 1,500천원/인 (최초 1회, 정액지원)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대학입학 자녀 -지원방법: 년 1회(2월말, 대학입학시 일괄지급 원칙) ⑤ 자녀 참고서대 지원 -지원단가 50천원/인, 년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초·중·고생 자녀 -지원방법: 년 2회(학기초 3월, 9월) 지급 ⑥ 자녀 교통비 지원 -지원단가 193천원/인, 년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중·고생 자녀 -지원방법: 년 2회(학기초 3월, 9월) 지급 ⑦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단가 ~300천원 이내/인, 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중 교육청 지원액을 포함한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자녀 중 수학여행을 가는 자녀에게 지급 -지원방법: 학교로 참가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후 학교 or 개인 계좌로 지급 -지원제외(중복 지원 금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전남	저소득한부모가족 자체지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등 지원
경북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한부모가족자립학교 참가 세대 중 수료자	세대당 2,000천원 지급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100천원(총400천원/4개월)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대학입학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당 2,000천원 이내(실 납부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연간 초등학생 1인당 100천원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실비기준)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	하복비 1인당 연 100천원, 동복비 연 200천원
	한부모가족 건강검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 지원
	초등학생 급식비	순수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월3만원 분기 지급
	자녀기능 교육비	기초수급자한부모 및 순수한부모 자녀 고등학교 3학년생	기능교육비 30만원 일시지급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순수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	2월 동복비 200천원 지급, 5월 하복비 100천원 지급
	수학여행비 지급	순수 한부모가족 초·중·고 수학여행대상자	-4월(상반기), 9월(하반기) 대상 학교에 지급 -초등학생 70천원, 중학생 10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구입비 2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자립금(창업자금 등): 세대당 300만원 -직업훈련비: 1인 50만원 -난방연료비: 1가구 40만원(연) -건강관리비: 1가구 10만원(연)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과후자녀학습비: 1인 48만원(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사천)	저소득 한부모세대	-고등학생(신입생) 자녀교복비 지원(동·하복비) 1인 연 250,000원 -중학생 자녀 부교재비 지원 1인 연 60,000원 -고등학생 자녀 교과서비 지원 1인 연 50,000원
	모자보호시설 희망모자원(김해)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대상: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정원: 30세대 입소 기간: 3년 운영 법인: (사)희망모자원 지원 내용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신나는 컴퓨터 정보교실 사업 -내 고장 역사 문물기행 -어머니 생신 찾아드리기 사업 -한부모가정 희망찾기 프로그램 -여름가족캠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지원(밀양)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생 자녀	-교과서대→ 고등학생 1인당 129,500원(연 1회) -부교재비→ 중학생 1인당 38,500원(연 1회)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밀양)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교 입학생	1인당 250,000원(상반기 170,000원, 하반기 80,000원)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활동 지원(밀양)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20여명)	문화유적지 및 학습체험 활동지 견학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함안)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200,000원/하복 100,000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비(창녕)	저소득한부모 가정	-설·추석제수비 7만원 -교과서대(고등학생) 103,000원 -부교재비(중학생) 3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 합동(산청)	산청군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부·모 및	한부모가족의 자녀와의 관계향상과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름 체험캠프 지원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녀 40여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거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분기별 1인당 교통비 40,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김장비 지원(거창)	저소득 모자가정	년 1회 김장비 1가구당 70,000원
제주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1인당/월300천원/6개월 이내(1인·연1과정·6개월 이내) ① 훈련기간이 월 15일 이상 100%, 15일미만 50% 월 훈련시간의 80%이상 수료시 지급 ②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지급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 지원(이중지원 불가)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1순위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 2순위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①자녀수가 많은 가정

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극히 어려운 가정	②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③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지원 내용: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급여신청일이 '15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대학교 신입생자녀(2015년 기준)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중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한부모가족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급여신청일이 '15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2015년 기준)	중·고등학생 1인/교복비 350천원(동·하복비 포함)

자료: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인출일: 2017년 6월 23일)

〈부표 Ⅲ-3-1〉 주거환경

단위: %(가구)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가구원 수 대비 공간 적당함					
전체	7.8	23.9	59.1	9.2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1	31.3	55.6	7.1	100.0(99)
100~200만원 미만	8.9	27.3	55.1	8.7	100.0(572)
200만원 이상	6.7	17.3	65.6	10.4	100.0(404)
$x^2(df)$		20.15(6)**			
통풍 및 채광 좋음					
전체	2.9	15.7	63.7	17.7	100.0(107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1	18.4	70.4	5.1	100.0(98)
100~200만원 미만	3.7	17.3	65.2	13.8	100.0(572)
200만원 이상	1.0	12.5	60.2	26.3	100.0(399)
$x^2(df)$		45.71(6)***			
난방상태 좋음					
전체	3.0	15.1	66.2	15.8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0	24.2	68.7	6.1	100.0(99)
100~200만원 미만	3.7	17.5	66.2	12.6	100.0(571)
200만원 이상	2.5	9.4	65.4	22.7	100.0(405)
$x^2(df)$		41.05(6)***			
방음상태 좋음					
전체	6.4	33.7	48.2	11.8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1.1	27.3	59.6	2.0	100.0(99)
100~200만원 미만	7.2	35.1	48.1	9.6	100.0(572)
200만원 이상	4.2	33.0	45.6	17.2	100.0(406)
$x^2(df)$		32.48(6)***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짐					
전체	10.0	26.9	54.4	8.8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3.1	20.2	63.6	3.0	100.0(99)
100~200만원 미만	12.2	28.8	50.0	8.9	100.0(572)
200만원 이상	5.7	25.9	58.3	10.1	100.0(405)
$x^2(df)$		23.39(6)**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대중교통 접근 용이					
전체	2.9	17.0	64.5	15.6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0	20.0	63.0	11.0	100.0(100)
100~200만원 미만	3.7	16.8	64.6	14.9	100.0(571)
200만원 이상	1.2	16.3	64.6	17.8	100.0(404)
$x^2(df)$		11.62(6)			
교육환경 좋음					
전체	2.5	21.7	64.7	11.1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0	26.5	68.4	3.1	100.0(98)
100~200만원 미만	3.5	21.2	65.4	10.0	100.0(572)
200만원 이상	1.0	21.3	63.1	14.6	100.0(404)
$x^2(df)$		18.63(6)**			
치안상태 좋음					
전체	3.9	21.4	66.5	8.2	100.0(1,0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1	27.6	62.2	3.1	100.0(98)
100~200만원 미만	5.1	22.6	64.9	7.5	100.0(572)
200만원 이상	1.5	18.3	69.9	10.4	100.0(405)
$x^2(df)$		21.66(6)**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Ⅲ-4-1〉 전배우자와 자녀의 연락 방식

단위: %(가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계(수)
전 체	14.9	26.8	8.2	2.8	24.5	22.7	100.0(936)
가구 구성							
모자	15.4	24.7	8.1	3.5	27.0	21.4	100.0(397)
모자+기타	8.1	35.9	6.7	2.2	25.6	21.5	100.0(223)
부자	19.0	26.6	7.6	1.9	24.1	20.9	100.0(158)
부자+기타	19.1	19.1	11.5	2.5	17.8	29.9	100.0(157)
$x^2(df)$			34.08(1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8.8	20.7	7.4	3.5	25.4	24.2	100.0(256)
초등학생	13.5	29.1	8.5	2.5	24.1	22.2	100.0(680)
$x^2(df)$			9.72(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8	14.1	10.9	2.2	26.1	37.0	100.0(92)
100~200만원 미만	13.0	28.6	7.7	2.5	26.5	21.7	100.0(483)
200만원 이상	18.8	27.7	8.0	3.3	21.3	20.8	100.0(361)
$x^2(df)$			25.60(1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8.9	26.4	9.3	2.8	24.5	18.0	100.0(428)
5~10년 미만	12.5	30.3	7.1	3.1	24.7	22.4	100.0(393)
10년 이상	7.5	14.0	7.5	2.8	23.4	44.9	100.0(107)
$x^2(df)$			47.00(10)***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Ⅲ-4-2〉 전배우자와 한부모 본인의 연락 방식

단위: %(가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계(수)
전 체	3.4	21.6	12.5	3.9	36.0	22.6	100.0(936)
가구 구성							
모자	6.3	19.9	11.4	3.3	37.9	21.2	100.0(396)
모자+기타	0.0	22.4	14.8	6.3	35.0	21.5	100.0(223)
부자	5.0	22.6	11.9	3.8	36.5	20.1	100.0(159)
부자+기타	0.0	24.1	12.0	1.9	32.3	29.7	100.0(158)
$x^2(df)$			36.54(1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1	20.8	17.3	3.9	28.6	24.3	100.0(255)
초등학생	2.8	21.9	10.6	4.0	38.7	22.1	100.0(680)
$x^2(df)$			15.26(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2	14.0	11.8	2.2	32.3	36.6	100.0(93)
100~200만원 미만	2.9	20.5	11.2	3.1	40.9	21.4	100.0(482)
200만원 이상	4.4	24.9	14.1	5.3	30.5	20.8	100.0(361)
$x^2(df)$			26.17(1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0	24.4	16.4	3.0	34.4	17.8	100.0(427)
5~10년 미만	2.8	20.4	9.2	5.9	39.3	22.4	100.0(392)
10년 이상	4.7	12.1	8.4	0.0	30.8	43.9	100.0(107)
$x^2(df)$			54.37(10)***				

주: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Ⅳ-2-1〉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

단위: %(명)

구 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수)
전체	90.9	6.1	3.0	9.1	(33)

주: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2-2〉 영유아 자녀 양육태도

단위: 점(명)

구 분	온정적	*F*	통제적	*F*	(수)
전체	3.8		3.5		(145)
최종학력					
고졸 이하	3.5	4.1**	3.4	1.8	(48)
2,3년제 대졸	3.7		3.7		(36)
4년제 대졸	3.9		3.4		(50)
대학원이상	4.2		3.5		(1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8	3.4*	3.5	0.2	(41)
100~200만원	3.5		3.4		(57)
200~300만원	4.0		3.4		(24)
300만원 이상	4.1		3.5		(23)

주: 이 문항은 5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2-3〉 초등학령기 자녀 양육태도

단위: 점(명)

구 분	긍정적 양육행동	*t*	교육참여	*t*	(수)
전체	3.2		2.7		(255)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1	-3.7***	2.5	-3.7***	(133)
초등 저학년	3.3		2.8		(122)

주: 이 문항은 4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Ⅳ-2-4〉 양육 효능감

단위: 점(명)

구 분	유능감	*F*	불안감	*F*	(수)
전체	3.1		3.2		(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2	1.0	3.2	3.5*	(78)
100~200만원	3.1		3.3		(159)
200~300만원	3.2		2.9		(81)
300만원 이상	3.1		3.1		(82)

주: 이 문항은 5점 척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Ⅳ-2-5〉 본인과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비중

단위: 비중, (명)

구 분	본인	전배우자	(수)
전체	9.1	0.9	(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4	0.6	(70)
100~200만원	9.2	0.8	(143)
200~300만원	9.0	1.0	(69)
300만원 이상	8.5	1.5	(71)
F	4.9**	4.9**	
가구구성			
모자	9.4	0.6	(198)
모자+기타	8.8	1.2	(82)
부자	9.1	0.9	(27)
부자+기타	8.2	1.8	(46)
F	8.9***	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Ⅳ-2-6〉 자녀양육비 수령 여부

단위: %(명)

구 분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전혀 받지 않음	계(수)	$x^2(df)$
전체	28.0	9.3	62.6	100.0(353)	
가구구성					
모자	29.3	11.1	59.6	100.0(198)	
모자+기타	36.6	4.9	58.5	100.0(82)	12.8(6)*
부자	22.2	11.1	66.7	100.0(27)	
부자+기타	10.9	8.7	80.4	100.0(46)	
한부모 기간					
0~2년	34.9	12.3	52.8	100.0(106)	
3~5년	31.4	11.9	56.8	100.0(118)	18.7(6)**
6~8년	21.1	6.7	72.2	100.0(90)	
9년 이상	15.4	0.0	84.6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2-7〉 자녀양육비 수령 금액

단위: %(명), 원

구 분	40만원 미만	40~80만원 미만	80~20만원 미만	120~160만원 미만	계(수)	평균
전체	29.3	55.6	11.1	4.0	100.0(99)	515858.6
가구구성						
모자	19.0	60.3	15.5	5.2	100.0(58)	575172.4
모자+기타	33.3	56.7	6.7	3.3	100.0(30)	473333.3
부자	66.7	33.3	0.0	0.0	100.0(6)	310000.0
부자+기타	80.0	20.0	0.0	0.0	100.0(5)	330000.0
$x^2(df)/F$		n/a				3.1*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Ⅳ-3-1〉 자녀 생활습관: 하루 세 끼 식사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2.8	10.8	15.3	70.3	0.8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1	13.6	16.9	62.7	1.7	100.0(59)	n/a
100~200만원	2.1	17.6	18.3	61.3	0.7	100.0(142)	
200~300만원	1.3	2.6	11.8	82.9	1.3	100.0(76)	
300만원 이상	3.9	3.9	11.8	80.3	0.0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0	10.5	18.0	67.7	0.8	100.0(133)	n/a
초등 저학년	1.6	6.6	15.6	76.2	0.0	100.0(122)	
유아기	4.1	16.3	11.2	66.3	2.0	100.0(98)	
가구구성							
모자	2.5	12.6	16.7	67.2	1.0	100.0(198)	n/a
모자+기타	2.7	8.1	9.5	79.7	0.0	100.0(74)	
부자	0.0	15.6	18.8	65.6	0.0	100.0(32)	
부자+기타	6.1	4.1	16.3	71.4	2.0	100.0(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2〉 자녀 생활습관: 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2.3	22.9	36.0	38.0	0.8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1	27.1	42.4	25.4	0.0	100.0(59)	n/a
100~200만원	1.4	31.7	36.6	29.6	0.7	100.0(142)	
200~300만원	2.6	10.5	34.2	50.0	2.6	100.0(76)	
300만원 이상	1.3	15.8	31.6	51.3	0.0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0	23.3	42.9	30.1	0.8	100.0(133)	n/a
초등 저학년	2.5	23.8	30.3	43.4	0.0	100.0(122)	
유아기	1.0	21.4	33.7	41.8	2.0	100.0(98)	
가구구성							
모자	2.0	25.8	35.9	34.8	1.5	100.0(198)	n/a
모자+기타	2.7	20.3	32.4	44.6	0.0	100.0(74)	
부자	3.1	28.1	40.6	28.1	0.0	100.0(32)	
부자+기타	2.0	12.2	38.8	46.9	0.0	100.0(4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3〉 자녀 생활습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섭취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5.1	26.6	35.4	32.0	0.8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5	30.5	37.3	23.7	0.0	100.0(59)	n/a
100~200만원	3.5	31.0	36.6	27.5	1.4	100.0(142)	
200~300만원	6.6	17.1	36.8	38.2	1.3	100.0(76)	
300만원 이상	3.9	25.0	30.3	40.8	0.0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5.3	29.3	41.4	23.3	0.8	100.0(133)	n/a
초등 저학년	4.1	28.7	29.5	37.7	0.0	100.0(122)	
유아기	6.1	20.4	34.7	36.7	2.0	100.0(98)	
가구구성							
모자	5.1	24.7	40.4	28.3	1.5	100.0(198)	n/a
모자+기타	6.8	23.0	25.7	44.6	0.0	100.0(74)	
부자	3.1	43.8	34.4	18.8	0.0	100.0(32)	
부자+기타	4.1	28.6	30.6	36.7	0.0	100.0(4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4〉 자녀 생활습관: 인스턴트식품 섭취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7.9	74.2	13.6	3.7	0.6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8	72.9	13.6	5.1	1.7	100.0(59)	n/a
100~200만원	7.7	73.2	14.8	4.2	0.0	100.0(142)	
200~300만원	6.6	81.6	9.2	2.6	0.0	100.0(76)	
300만원 이상	10.5	69.7	15.8	2.6	1.3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8	66.2	21.8	8.3	0.0	100.0(133)	n/a
초등 저학년	4.1	84.4	9.8	0.8	0.8	100.0(122)	
유아기	18.4	72.4	7.1	1.0	1.0	100.0(98)	
가구구성							
모자	7.1	76.3	12.1	4.0	0.5	100.0(198)	n/a
모자+기타	14.9	73.0	10.8	1.4	0.0	100.0(74)	
부자	6.3	62.5	21.9	6.3	3.1	100.0(32)	
부자+기타	2.0	75.5	18.4	4.1	0.0	100.0(4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5〉 자녀 생활습관: 방과(하원) 후 30분 이상의 신체활동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7.4	31.4	24.6	34.3	2.3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2	32.2	18.6	35.6	3.4	100.0(59)	n/a
100~200만원	9.9	37.3	21.1	30.3	1.4	100.0(142)	
200~300만원	6.6	23.7	28.9	36.8	3.9	100.0(76)	
300만원 이상	1.3	27.6	31.6	38.2	1.3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7.5	27.1	21.1	42.1	2.3	100.0(133)	n/a
초등 저학년	5.7	30.3	23.8	37.7	2.5	100.0(122)	
유아기	9.2	38.8	30.6	19.4	2.0	100.0(98)	
가구구성							
모자	8.1	35.4	22.7	32.3	1.5	100.0(198)	n/a
모자+기타	8.1	31.1	25.7	32.4	2.7	100.0(74)	
부자	9.4	28.1	18.8	37.5	6.3	100.0(32)	
부자+기타	2.0	18.4	34.7	42.9	2.0	100.0(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6〉 자녀 생활습관: 방과(하원) 후 친구들과 놀기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 ~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18.1	34.8	24.9	20.1	2.0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0	39.0	15.3	22.0	1.7	100.0(59)	n/a
100~200만원	25.4	37.3	17.6	17.6	2.1	100.0(142)	
200~300만원	11.8	28.9	32.9	22.4	3.9	100.0(76)	
300만원 이상	7.9	32.9	38.2	21.1	0.0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6.0	33.1	29.3	28.6	3.0	100.0(133)	n/a
초등 저학년	10.7	40.2	27.9	19.7	1.6	100.0(122)	
유아기	43.9	30.6	15.3	9.2	1.0	100.0(98)	
가구구성							
모자	22.7	35.4	19.2	20.2	2.5	100.0(198)	n/a
모자+기타	14.9	39.2	25.7	18.9	1.4	100.0(74)	
부자	9.4	34.4	37.5	18.8	0.0	100.0(32)	
부자+기타	10.2	26.5	38.8	22.4	2.0	100.0(4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3-7〉 자녀 생활습관: 재미를 위한 책 읽기

단위: %(명)

구 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12.2	38.2	27.8	20.4	1.4	100.0(3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2	39.0	32.2	16.9	1.7	100.0(59)	n/a
100~200만원	10.6	40.8	26.8	19.7	2.1	100.0(142)	
200~300만원	14.5	35.5	30.3	18.4	1.3	100.0(76)	
300만원 이상	14.5	35.5	23.7	26.3	0.0	100.0(76)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0.3	41.4	22.6	12.8	3.0	100.0(133)	n/a
초등 저학년	8.2	36.9	30.3	24.6	0.0	100.0(122)	
유아기	6.1	35.7	31.6	25.5	1.0	100.0(98)	
가구구성							
모자	13.6	41.4	25.8	17.7	1.5	100.0(198)	n/a
모자+기타	6.8	33.8	29.7	29.7	0.0	100.0(74)	
부자	12.5	37.5	34.4	15.6	0.0	100.0(32)	
부자+기타	14.3	32.7	28.6	20.4	4.1	100.0(4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Ⅳ-4-1〉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구 분	예	아니요	계(수)	$x^2(df)$
전체	44.3	55.8	100.0(4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1.3	48.7	100.0(78)	19.8(3)***
100~200만원	52.8	47.2	100.0(159)	
200~300만원	40.7	59.3	100.0(81)	
300만원 이상	24.4	75.6	100.0(82)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39.8	60.2	100.0(133)	8.1(3)*
초등 저학년	50.8	49.2	100.0(122)	
유아기	49.0	51.0	100.0(98)	
영아기	29.8	70.2	100.0(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Ⅳ-4-2〉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학용품비 지원

단위: %(명), 점

구 분	1 매우 불만족	2	3	4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7.0	32.0	31.0	20.0	100.0(100)	2.5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22.2	35.6	31.1	11.1	100.0(45)	2.3
초등 저학년	13.2	31.6	31.6	23.7	100.0(38)	2.7
유아기	7.7	15.4	30.8	46.2	100.0(13)	3.2
영아기	25.0	50.0	25.0	0.0	100.0(4)	2.0
$x^2(df)/F$	n/a					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Ⅳ-4-3〉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

단위: %(명), 점

구 분	1 매우 불만족	2	3	4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25.9	22.2	25.9	25.9	100.0(27)	2.5
가구구성						
모자	38.9	22.2	27.8	11.1	100.0(18)	2.1
모자+기타	0.0	25.0	25.0	50.0	100.0(4)	3.3
부자	0.0	0.0	0.0	100.0	100.0(2)	4.0
부자+기타	0.0	33.3	33.3	33.3	100.0(3)	3.0
$x^2(df)/F$		n/a				3.2*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Ⅳ-4-4〉 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단위: %(명), 점

구 분	1 매우 불만족	2	3	4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4.6	5.7	29.9	59.8	100.0(87)	3.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	13.8	37.9	44.8	100.0(29)	3.2
100~200만원	2.7	0.0	10.8	86.5	100.0(37)	3.8
200~300만원	9.1	0.0	54.5	36.4	100.0(11)	3.2
300만원 이상	10.0	10.0	50.0	30.0	100.0(10)	3.0
$x^2(df)/F$		n/a				5.3**
자녀연령						
초등 고학년	0.0	8.3	33.3	58.3	100.0(12)	3.5
초등 저학년	0.0	0.0	22.2	77.8	100.0(18)	3.8
유아기	7.9	10.5	36.8	44.7	100.0(38)	3.2
영아기	5.3	0.0	21.1	73.7	100.0(19)	3.6
$x^2(df)/F$		n/a				2.9*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Ⅳ-4-5〉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인터넷사이트에서의 활동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전체	7.5	13.4	59.7	19.4	100.0(67)	2.9
자녀수						
1명	8.1	21.6	56.8	13.5	100.0(37)	2.8
2명	8.3	4.2	70.8	16.7	100.0(24)	3.0
3명 이상	0.0	0.0	33.3	66.7	100.0(6)	3.7
$x^2(df)/F$			n/a			3.8*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Ⅳ-4-6〉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부모 대상 상담·심리치료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전체	0.0	0.0	70.4	29.6	100.0(27)	3.3
자녀수						
1명	0.0	0.0	91.7	8.3	100.0(12)	3.1
2명 이상	0.0	0.0	53.3	46.7	100.0(15)	3.5
$x^2(df)/t$			n/a			-2.4*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Ⅳ-4-7〉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도움정도: 자녀 대상 상담·심리치료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전체	3.7	7.4	44.4	44.4	100.0(27)	3.3
유형						
이혼	4.2	8.3	50.0	37.5	100.0(24)	3.2
사별	0.0	0.0	0.0	100.0	100.0(3)	4.0
$x^2(df)/t$			n/a			-5.0***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χ^2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부록 2.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Ⅰ.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자녀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부 ▫모

■ 부모님과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구분	항목
1. 귀하의 출생년도	_____년
2. 결혼상태	① 이혼 ② 사별 ③ 기타:
	2-1. 결혼 년도는? _____년 2-2. 한부모가 된 시점은? _____년
3.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② 2~3년제 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취업상태 ※ 돈을 벌기 위해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함.	① 일하고 있음 ② 휴직 중 ③ 일하고 있지 않음
	4-1. **(①에 응답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① 10시간 이하 ② 11~20시간 ③ 21~30시간 ④ 31~40시간 ⑤ 41~50시간 ⑥ 51시간 이상 4-2. **(③에 응답한 경우)** 현재 미취업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구직활동 중 ② 가사·육아 ③ 학업 ④ 심신장애 ⑤ 기타:
5.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월 평균 _____만원
	본인의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약 _____%
6. 가구원 수 및 가족 유형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_____명
	① (한)조부모+부+자녀 ② (한)조부모+모+자녀 ③ 부+자녀 ④ 모+자녀 ⑤ 부+자녀+기타 ⑥ 모+자녀+기타 ⑦ 기타:

7.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 총 자녀 수: _____명 **(자녀 수 만큼 아래 칸 생성)**

형제자매 순위	성별	출생년도	동거 여부	건강이상 여부 (장애 포함)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첫째	▫남 ▫여	_____년	▫같이 살고 있음 ▫같이 살지 않음	▫건강이상 있음 ▫건강이상 없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안 다님 ▫기타:

Ⅱ.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에 응답하실 때 현재 양육중인 가장 어린 자녀 1명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십시오.

1. 현재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영유아)
②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초등)
③ 초등방과후교실
④ 초등돌봄교실
⑤ 지역아동센터
⑥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⑦ 민간 베이비시터
⑧ 학원 등 사설기관
⑨ 기타:
⑩ 없음(유치원·어린이집 기본과정/종일반만 이용, 학교만 다님, 기관 전혀 이용안함)

1-1. **(①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시간연장(평일 19:30~24:00, 토 15:30~24:00)
② 야간(19:30~익일 07:30)
③ 24 시간(07:30~익일 07:30)
④ 휴일

1-2. **(1번에서 선택한 문항만 생성)**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기관이나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	이용 이유	만족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예: 부모 취업 중) ②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③ 아이의 학습이나 특기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④ 아이의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⑤ 기타:	①	②	③	④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①	②	③	④
초등방과후교실		①	②	③	④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①	②	③	④
민간 베이비시터		①	②	③	④
학원 등 사설기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1-3. 주중 평일에 해당 자녀가 학교 및 기관을 이용한 총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 학교, 초등방과후교실/돌봄교실,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모든 기관 이용시간을 포함함.

최근 평일(하루)	_____시간

2. 주중 평일에,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해당 자녀와 함께 지낸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이었습니까? ※ 평범한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함.

최근 평일(하루)	_____시간
지난 주말(하루)	_____시간

3. 해당 자녀가 집에서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날이 있다면, 일주일(7일)에 평균 며칠이나 됩니까?

① 일주일에 평균 _____일
② 없음

3-1. **(①에 응답한 경우)** 하루에 평균 몇 시간정도 입니까?

① 1 시간미만
② 1~2 시간 정도
③ 3~4 시간 정도
④ 4 시간 이상(_____시간)

3-2. **(①에 응답한 경우)** 돌봐주는 어른이 없는 시간 동안 자녀는 주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① 형제자매와 함께 ② 친구와 함께 ③ 혼자 ④ 기타:

3-3. **(①에 응답한 경우)** 돌봐주는 어른이 없는 시간 동안 자녀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① 숙제 등 학습 ② TV 시청이나 미디어 기기 이용(게임, 동영상 등)
③ 바깥놀이·실내놀이 ④ 식사나 휴식 ⑤ 취침
⑥ 모르겠음 ⑦ 기타:

4. **(영유아인 경우)**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자녀에 대한 평소 자신의 행동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 해당 자녀의 연령이 0세인 경우,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현재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응답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등의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가르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정교육을 위해(훈육의 차원에서)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초등학생인 경우)**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자녀에 대한 평소 자신의 행동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아이가 집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집에 없을 때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아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5) 아이와 이야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아이와 이야기할 때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아이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준다.	①	②	③	④
8)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9) 아이의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다.	①	②	③	④
10)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11) 아이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12) 아이의 알림장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자녀를 키우면서 가진 평소 자신의 생각·느낌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나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각 문항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	-	매우 부담스러움
1)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①	②	③	④
2) 정서적 부담(이혼 혹은 사별한 부모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속상함, 양육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친척·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한부모가정만의 고민 등)	①	②	③	④
4) 경제적 부담(교육비, 치료비 등)	①	②	③	④
5) 가족관계의 어려움(가족구성원과의 의견 불일치, 자녀들 간 갈등 등)	①	②	③	④

8.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관련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습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집안어른, 형제자매
② 친구, 동료
③ 육아관련 사이트, 관련 서적
④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⑥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센터
⑦ 주변 한부모가족(자조모임)
⑧ 기타:

9. 현재 해당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연령별 아동발달 특징	②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③ 자녀 학교생활 지도 방법	④ 자녀 학습 지원 정보(학원, 학습지 등)
⑤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⑥ 기관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⑦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⑧ 한부모가족관련 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⑨ 기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Ⅰ-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그 외는 Ⅲ의 문항 제시)

※ 질문에 응답하실 때 현재 양육중인 가장 어린 자녀 1명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십시오.

10. 최근 1년간 당신은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연락을 주고받음 ② 만난 적이 있음 ③ 전혀 없음

↳ (①에 응답한 경우) ① 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② 비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 (②에 응답한 경우) ① 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② 비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11. 최근 1년간 해당 자녀는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연락을 주고받음 ② 만난 적이 있음 ③ 전혀 없음

↳ (①에 응답한 경우) ① 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② 비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 (②에 응답한 경우) ① 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② 비정기적으로 (월 / 주) _____회

11-1. (②에 응답한 경우) 자녀는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 만남 시 주로 무엇을 합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밖에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눔	② 비양육부모의 집에서 지내다 옴
③ 밖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함	④ 놀이공원에 가는 등 여가활동을 함께 함
⑤ 기타:	

12. 다음을 읽고 평소 해당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아이는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와 전배우자(비양육부모)의 만남은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3) 나와 전배우자(비양육부모)의 관계(감정상태)는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①	②	③	④
4) 나와 전배우자(비양육부모)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좋은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13. 다음을 읽고 현재 전배우자(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전배우자와 나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관한 의견이 같다.	①	②	③	④
2) 전배우자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고마워한다.	①	②	③	④
3) 전배우자는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을 지지해준다.	①	②	③	④
4) 전배우자는 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전배우자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전배우자는 부모로서의 내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부모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본다.	①	②	③	④
7) 전배우자는 시간이 날 때면 언제든지 양육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8) 전배우자는 아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양육을 함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현재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을 총 10으로 보았을 때,
나는 (1~10)만큼 전배우자(비양육부모)는 (1~10)만큼 담당하고 있다.

15. 현재 해당 자녀의 양육비를 전배우자(비양육부모)에게 받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 (월 평균 _____원) ② 비정기적으로 ③ 전혀 받지 않음

16. 현재 해당 자녀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① 나에게 ② 전배우자에게 ③ 공동친권 ④ 기타:

Ⅲ. 자녀생활 및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에 응답하실 때 현재 양육중인 가장 어린 자녀 1명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십시오.

1. 해당 자녀의 현재 몸무게(kg)와 키(cm)를 적어주십시오.

몸무게 _____kg 키 _____cm

2. 해당 자녀에게는 최근 3개월 이상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해당 자녀가 최근 한 달 동안 아파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나 학교를 빠진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1~2일 ③ 3~5일
④ 6~10일 ⑤ 11일 이상 ⑧⑧ 해당사항 없음(안 다님)

4. **(유아, 초등학생인 경우)** 해당 자녀가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 학교나 유치원·어린이

집을 다니는 경우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외

문항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잘 모르겠음
1) 방과(하원) 후 30분 이상의 신체활동(바깥놀이 포함)	①	②	③	④	⑨
2)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먹음	①	②	③	④	⑨
3) 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를 함(또는 상응하는 채식주의자용 식단)	①	②	③	④	⑨
4)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음	①	②	③	④	⑨
5) 인스턴트식품(라면, 햄버거 등)을 먹음	①	②	③	④	⑨
6) 방과(하원) 후 친구들과 놀기	①	②	③	④	⑨
7) 재미를 위한 책 읽기	①	②	③	④	⑨

5. **(유아, 초등학생인 경우)** 지난 한 달간 가족들은 해당 자녀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도서관 가기	①	②
2) 서점 가기	①	②
3) 극장, 콘서트, 공연장 가기	①	②
4)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 가기	①	②
5) 동물원, 수족관, 놀이 공원 가기	①	②
6)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행사 참여하기	①	②
7) (자녀가 출전하지 않는)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 참여하기	①	②

6. **(유아, 초등학생인 경우)**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해당 자녀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아이는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3) 아이는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아이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 아이는 익숙한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아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아이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아이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9) 아이는 자신의 일상이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빨리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영유아인 경우)**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해당 자녀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아이는 나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 아이는 나와의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아이와 나는 서로 눈 맞춤을 한다.	①	②	③	④
4) 아이와 나는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①	②	③	④

8. 현재 자녀의 발달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문항	느린 편임	보통	빠른 편임	모르겠음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⑨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⑨
3) 인지발달(지각, 기억, 학습, 지능발달 등)	①	②	③	⑨
4) 사회·정서발달(애착, 정서표현·조절, 대인관계 등)	①	②	③	⑨

9. 우리 가정이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가 잘 적응하였다고 느끼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_____년 _____개월 ② 아직 적응 중

Ⅳ.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내 인생은 대체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환경(상황, 조건)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④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③	④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러하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③	④보통 이다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익숙한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9)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빨리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 친구 혹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속상한 일이 있거나 상심에 빠졌을 때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큰 일(잔치, 제사,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9)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살림살이나 여가·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서로 집안 경조사에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14) 필요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Ⅴ. 육아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부모가 된 후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우 ①에 응답

① 예 ② 아니요

1-1. **(①에 응답한 경우)** 어떤 유형의 부모교육이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교육 ②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서의 교육
③ 건강가정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교육 ④ 기타:

1-2. **(①에 응답한 경우)** 부모교육은 실제 자녀양육 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대체로 도움이 안됨 ③ 대체로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2. 한부모가 된 후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어떠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연령별 아동발달 특징	②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의사소통, 행동지도 등)
③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④ 한부모 사건 후 자녀적응 지원
⑤ 가족(자녀, 친인척, 전배우자 등)관계	⑥ 자녀 학습·학교생활 지도 방법
⑦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⑧ 한부모가정관련 이슈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
⑨ 기타:	

3. 한부모가 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적이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해당 없음
↳ 휴직기간은 총 몇 회, 몇 개월입니까? 총 _____회, _____개월

3-1. **(②에 응답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 없어서/원하지 않아서 ② 원하였으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③ 한부모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④ 경제적 이유로(육아휴직 수당이 적어서)
⑤ 기타:

4. 다음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 알고 있습니까?	2)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3)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4) 제도의 필요성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매우 불필요	-	-	매우 필요
아동양육비 지원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학용품비 지원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생활보조금 지원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양육비 이행 관리원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사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 알고 있습니까?	2)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3)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4) 제도의 필요성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매우 불필요	-	-	매우 필요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방과후 보육료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드림스타트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임대주택 우선순위	① 예 ☞ 2)번 ② 아니요	① 예 ☞ 3), 4)번 ② 아니요 ☞ 2-1), 4)번 ▫ 해당 대상이 아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 알고 있습니까?	2)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3)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4) 제도의 필요성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매우 불필요	-	-	매우 필요
		↳ 2-1) 이유는? 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② 한부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④ 기타:								

※ 참고: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해당 문항 응답 시 아래에 제시)**

지원사업명	지원 내용 및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지원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월 17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관리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취학중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한한 22세미만+군 복무기간 자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한부모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는 1순위에 해당 / 기타 한부모가족은 2순위에 해당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우선 지원)
임대주택 우선순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 /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5.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체의 모임·행사나 자조모임(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우에도 ①에 응답

① 예 ② 아니요

5-1. **(①에 응답한 경우)** 어떤 유형의 모임이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① 인터넷사이트(카페 등)에서의 활동 ②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③ 부모교육 등 자녀양육정보 교류 ④ 자녀 발달/교육 지원 프로그램
⑤ 부모 대상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⑥ 자녀 대상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⑦ 캠프 등 한부모가정 대상 행사 ⑧ 기타:

5-2. **(5-1번에서 선택한 사항만 생성)** 모임 참석은 자녀양육이나 가족생활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전혀 도움이 안됨	-	-	매우 도움됨
1) 인터넷사이트(카페 등)에서의 활동	①	②	③	④
2)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①	②	③	④
3) 부모교육 등 자녀양육정보 교류	①	②	③	④
4) 자녀 발달/교육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5) 부모 대상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6) 자녀 대상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7) 캠프 등 한부모가정 대상 행사	①	②	③	④
8) 기타:	①	②	③	④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한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Ⅰ. 한부모가 된 후의 경험(변화)

1.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겪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긍정적, 부정적 변화나 새로운 경험 등 모두 포함)
1-1. 부모님 자신은 전반적인 생활, 자녀양육, 대인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1-2. 자녀들은 전반적인 생활, 행동특성이나 태도, 대인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까?

1-3. 특히 양육에서의 큰 변화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인 경우) 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3. 한부모가 된 후 자신이 혹은 자녀가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Ⅱ. 사회적 지지

1. 주변으로부터 받고 계신 도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척, 친구·이웃, 관련 단체 등)

2. 자녀양육을 위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1. 자녀양육을 위해 현재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2-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개선점 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응답자 일반 특성

구분	항목
1. 귀하의 출생년도	_____년
2. 결혼상태	① 이혼 ② 사별 ③ 기타:
	2-1. 결혼 년도는? _____년 2-2. 한부모가 된 시점은? _____년
3.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② 2~3년제 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취업상태 ※ 돈을 벌기 위해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함.	① 일하고 있음 ② 휴직 중 ③ 일하고 있지 않음
	4-1. **(①에 응답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① 10시간 이하 ② 11~20시간 ③ 21~30시간 ④ 31~40시간 ⑤ 41~50시간 ⑥ 51시간 이상 4-2. **(③에 응답한 경우)** 현재 미취업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구직활동 중 ② 가사·육아 ③ 학업 ④ 심신장애 ⑤ 기타:
5.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월 평균 _____만원
	본인의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약 _____%
6. 가구원 수 및 가족 유형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_____명
	① (한)조부모+부+자녀 ② (한)조부모+모+자녀 ③ 부+자녀 ④ 모+자녀 ⑤ 부+자녀+기타 ⑥ 모+자녀+기타 ⑦ 기타:

■ 자녀 특성

형제순위	성별	출생년도	동거 여부	건강이상 여부 (장애 포함)	현재 다니는 학교/기관
첫째	□ 남 □ 여	_____년	□ 같이 살고 있음 □ 같이 살지 않음	□ 건강이상 있음 □ 건강이상 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안 다님 □ 기타:
둘째	□ 남 □ 여	_____년	□ 같이 살고 있음 □ 같이 살지 않음	□ 건강이상 있음 □ 건강이상 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안 다님 □ 기타:
셋째	□ 남 □ 여	_____년	□ 같이 살고 있음 □ 같이 살지 않음	□ 건강이상 있음 □ 건강이상 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안학교 □ 홈스쿨링 □ 안 다님 □ 기타:

연구보고 2017-30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Ⅲ)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 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47-3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87 952473
ISBN 979-11-87952-47-3